

1996년 6월 1일 발행 · 제 7권 제 6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라-4859호 발행처/국민경제교육연구소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전화 (02) 561-1400 · 월간 ISSN 1227-8033 6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1996. 6



특집 /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청사진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경제정책해설 / 외환 · 자본 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저소득층 勤所稅 대폭 줄여

이달의 초점 / 「조기출퇴근제」 도입

정치산술학의 창시자

윌리엄 페티 (1623~1687)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는 1623년 5월 26일 영국 햄셔의 롬시라는 작은 도시에서 옷을 만드는 수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13세 되던 해에 상선의 사관실 사환으로 자리를 얻어 선원생활을 시작하였고, 14세 때 프랑스의 카옹에서 하선한 뒤 그곳의 제수이트 교파의 학교에 입학하여 공식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후 화란에 망명하여 유트렉트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하였고, 계속해서 암스테르담과 파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1646년 고향 롬시로 돌아온 페티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는 한편 의사자격도 땀다. 1650년에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해부학 교수로 강단에 섰다. 1651년에는 런던에 있는 그레삼 대학의 음악 교수직을 맡기도 하였다.

1649년 집권한 올리버 크롬웰의 아일랜드 정책에 따라 페티는 1651년 다시 아일랜드 파병 영국 육군의 군의관이 되었고 1655년부터 1658년 사이에 실시된 아일랜드 토지조사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1660년부터 1662년 사이에는 왕립학회를 창립하는 데에 참여하였고, 1667년에는 엘리자베스 월러와 혼인하여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다.

페티는 1687년 12월 26일 64세로 런던에서 사망할 때까지 왕성한 저술활동을 계속하였다. 페티의 저술은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출판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에 출판됨으로써 대부분 그의 사후에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저술은 1899년에 「정치산술학」, 「아일랜드의 정치적 해부」 등 모두 두 권의 전집으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윌리엄 페티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질적인 분석보다는 가능한 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을 전제로 하여 수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견지함으로써 '정치산술학(Political Arithmetic)'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의 잉태를 가능하게 하였다.

페티가 1662년 저술한 것으로 믿어지는 「사망률에 관한 자연적이며 정치적인 관찰」은 20여년 후인 1683년에 쓰여진 「더블린의 사망률에 관한 관찰」과 더불어 오늘날 동태인구학의 기초가 되는 저술로서 뿐 아니라 사회과학에 있어서 최초의 계량적 접근에 의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통계를 연구하면서 조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페티는 사회적인 '富'를 추정하는 문제에 학문적 열의를 쏟기 시작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國富 및 국민소득 통계를 처음으로 계측 시도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에는 극히 유치한 수준이었지만 사회현상의 본질을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창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국부통계추계 시도는 정치학을 산술학과 연계시키려 하였던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도된 국부의 추계는 이어서 어떻게 국부가 형성되며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경제학의 모태를 구축하는 데로 연결되었다. 이 점에서 약 1세기 뒤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출현을 예정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페티는 의사 출신답게 화폐의 개념을 인체의 지방질에 비유하여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화폐는 신체구조에 있어서 지방질과 같은 것으로, 너무 많으면 신체의 활동을 떨어뜨리게 되며, 너무

적으면 신체를 아프게 만든다. 지방질이 근육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영양분이 모자랄 때 이를 채워 주며, 고르지 못한 빈 자리를 고르게 메워 주어 신체를 아름답게 꾸며 주는 것처럼, 한 나라에 있어서 화폐는 나라의 활동을 신속하게 하여 주고, 나라 안에서 모자랄 때에는 나라 밖에서 채워 주며, 잘게 나누어 거래를 편리하게 해준다.”

페티는 화폐의 유통속도에 관하여서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정한 크기의 사회적 부와 소득이 거래되는 데 필요한 적정통화량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페티는 인구·조세·국부·통화 등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국민경제의 커다란 거시체계를 도식화하였던 것이다.

페티는 또한 산업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잉여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의식주의 모든 생필품을 농업에서 공급받았던 당시에 농업생산에서 창조된 생산물을 가지고 농업 외에 고용된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농업부문에서의 잉여생산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농업 외에서의

편의품이나 사치품의 생산은 농업에서 생산되는 잉여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종의 부수적 생산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약 2세기 뒤에 나타난 마르크스의 잉여노동·잉여가치의 개념과 직결된다.

페티는 오늘날 경제사상사에 있어서 노동가치학설의 창시자로서도 추앙되고 있으나 그의 학문적 기여를 개관하여 볼 때, 토지의 생산성 또한 함께 인정한 현실적 경제이론가였다. 결론적으로 페티는 정치산술학, 정치경제학 그리고 경제통계학에서의 선각자이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윌리엄 페티는
사회현상을 질적인 분석보다는
가능한 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을
전제로 하여 수량적으로 파악하려는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견지함으로써
‘정치산술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그는 國富 및 국민소득 통계를 처음으로
계측 시도한 선구자일 뿐 아니라
사망률에 관한 저술은 최초의 계량적 접근에
의한 연구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나라경제

역사 속의 경제사상가 42

정치산술학의 창시자 - 윌리엄 페티/윤석범 · 연세대 교수 2

권두칼럼

정보통신시장의 개방과 자유화/경상현 · 前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산원 연구위원 6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보전의 파수꾼/조홍섭 · 한겨레신문 기자 10

특 집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청사진 -「21세기 경제장기구상」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의 추진배경 16

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 19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충 22

국민의 복지문화수준 향상 25

적극적 대외전략의 추진 28

바람직한 국민의식의 함양 31

나라경제 초대석

세계 7위권 진입을 위하여 - KDI의 장기전망을 보고/문화화 · 경희대 교수 34

세계경제의 현장/OECD 정책이슈

OECD 시장경합성 논의와 多者間 무역의제/김동선 · OECD가입준비사무소 36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당뇨병/김광원 · 삼성의료원 40

이 달의 초점 - '조기출퇴근제' 도입

조기출퇴근제를 도입하자/이범일 · 삼성경제연구소 42

조기출퇴근이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권재철 ·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45

기업정보 부당한 환경관련 표시 · 광고 규제/김종웅 · 공정거래위원회 48

경제수상

· 재정경제원의 외신창구/심상달 · 재정경제원 50

· '중소기업시대' 가 오고 있다/임내규 · 통상산업부 51

규제완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과학기술행정 부문의 규제완화/정희권 · 과학기술처 52

책과의 만남 「좁머씨 이야기」/김탄일 · 재정경제원	54
------------------------------	----

만남

진 념 노동부장관/최운실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55
------------------------------	----

경제정책해설

외환 · 자본 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김병기 · 재정경제원	60
저소득층 勤所稅 대폭 줄여/한정기 · 재정경제원	64
WTO 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재산권제도 개선/우종균 · 특허청	67
선진 통신 · 방송시대 향한 무궁화위성사업/신순식 · 정보통신부	71
정신보건정책의 새로운 地平-「정신보건법」 제정/유영학 · 보건복지부	75
‘조선업종 산재예방 종합대책’ 추진/송지태 · 노동부	79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도입 · 시행/강영철 · 과학기술처	83
통계작성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법」 개정/김상식 · 통계청	87

해외통신

선진국 공공채무급증 문제의 심각성과 교훈/강정호 · IMF 대리이사	91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이장영 · IMF 이코노미스트	96

출입기자코너

• 세계화의 허상/이 훈 · 매일경제TV 기자	99
•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과제/이희상 · CBS 기자	100
• ‘아전인수’와 ‘동상이몽’/조일훈 · 한국경제신문 기자	101

경제동향 나라밖 : 엔貨 약세 이후 日本 수출 동향/정은미 · 산업연구원	102
--	-----

나라경제 논단

WTO 체제하의 농업정책 방향-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을 중심으로/배종하 · 농림수산부	105
---	-----

제언

• 新수도권정책에 대한 오해와 이기주의/박상우 · 국토개발연구원	109
• 전철운임의 현실화 시급하다/손길신 · 철도청	112

통계로 보는 우리 경제와 사회

통계로 본 베트남의 경제사회상/최봉호 · 통계청	114
----------------------------	-----

생활경제상담실 부가가치세/김연근 · 국세청	118
-------------------------	-----

나라경제 포럼 ‘네티즌’(Netizen)記/남광수 · 재정경제원(美 위스콘신대 유학)	120
---	-----

경제부처발간자료 안내 주요 경제정책자료	123
-----------------------	-----

정보통신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경 상 현

前 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산원 연구위원

세계무역기구의 기본통신시장 개방 협상이 9개월반 연장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시장에서도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방이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는 현실이 다시 확인되었고, 연장시한까지 타결될 내용의 발효시기를 원래 계획대로 1998년 1월 1일로 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방속도는 더 빨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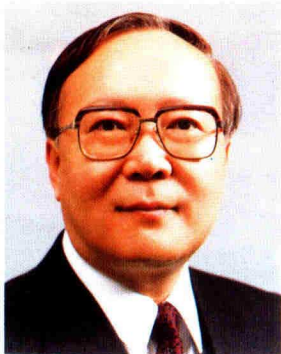
그렇다고 98년부터 곧바로 각국의 정보통신시장에서 선진국의 통신사업자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선진국일수록 우선은 자국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이번의 협상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정보사회로의 탈바꿈이 전세계를 흥분하게 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정보사회로의 발빠른 적응이 다음 세기에 번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정보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컴퓨터와 통신과 방송의 化合이다. 이들 하나하나가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따로따로의 실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화합이다. 오늘날엔 이 化合物을 멀티미디어(Multimedia)라고 부른다. 아직은 이 멀티미디어라는 화합물이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진정한 멀티미디어를 쓸 수 있게 되느냐에 따라 국가간 정보사회

로의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될 것이다.

이미 100만원대의 PC가 웬만한 음향·영상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거의 매일같이 경쟁적으로 이 성능을 발전시킨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이를 구현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PC를 요즈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Internet)에 연결해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많은 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정보 하나를 받기 위해 몇십분씩이나 기다려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통신에 있다. 우리 가정이나 사무실을 연결하는 통신선이 멀티미디어를 다루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병목의 惡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는 통신이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다.

이렇게 통신이 문제가 되기까지 이른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동안 컴퓨터는 자유로운 시장경쟁 속에서 철저한 適者生存의 원칙에 따라 발전해 온 데 반해 통신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 아래서 독과점 상태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즈음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유화 추세는 근본적으로 이들 시사점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 공포된 미국의 '1996년도 정보통신법'이다. 이 법은 미국의 정보통신시장에 지금까지 남아있던 제한과 규제를 거의 全廢하다시피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그동안 정보통신시



“

이제 머지않아 국내의 정보통신시장에 선진국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진출하여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려면 정보통신시장에서의 조속한 자유화 확대와 공정경쟁여건 강화, 한국통신에 대한 규제 축소 그리고 선택적인 조기 대외개방 등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장의 규제완화·경쟁체제화·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로 현재는 거의 모든 정보통신 분야에서 제한적이나마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30여개의 새로운 정보통신사업자가 신규로 사업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제 머지않아 국내의 정보통신시장에 선진국의 정보통신사업자가 진출하여 우리나라 사업자들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우리는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장에서의 조속한 자유화 확대와 공정경쟁여건 강화, 한국통신에 대한 규제 축소 그리고 선택적인 조기 대외개방 등의 방안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화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시내전화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는 일이다. 가정이나 사무실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무선가입자회선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CATV網과 같은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제한한다든가, 정부가 정의하고 인정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反生産의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들간의 제휴와 합병 등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야 할 것이다. 시장자유화가 소기의 목적인 정보통신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

로 공정경쟁의 핵은 시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부가 정한 공정경쟁의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규범과 규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들이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하는 노력과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해 오던 각종 규제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공정경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특수한 의무사항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에서 타사업자가 갖는 것과 똑같은 사업상의 자유를 갖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시내전화 분야에 경쟁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시내전화서비스가 한국통신의 독점영역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정당화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될 시내전화사업 분리독립요구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정보통신시장의 대외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분야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에서는 능력있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우리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우리의 수준과 경제력도 이제는 피해의식을 가져야 할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인 정보화경쟁은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진정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남원**

■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 환경부 자연보전국 —



자연보전의 파수꾼

최근 생물다양성과 녹지의 보전,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오염 관리'에서 '자연환경 보전'으로
환경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은, 자연생태계를 지키고
손상된 곳을 원상회복하며,
녹지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자연보전의 파수꾼으로서
전국의 현장을 발로 뛰고 있다.

글 · 조홍섭/ 객원기자(한겨레신문 기자)

마전 대전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생태도시' 조성계획을 설명하던 유성구청의 한 직원은 불쑥 튀어나온 "생태계가 도대체 뭐요?"라는 시의원의 할난섞인 질문을 받고 한순간 당황했으나, "의원님! 생태찌게가 맛있습니까? 동태찌게가 맛있습니까?"라는 기지로 응수했다.

생태계라는 낯선 개념을 정책에 반영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자주 물이해에 부딪치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아마 좀더 유식한 국회의원들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생물다양성', '녹지자연도', '그린네트워크' 등의 용어에 접한다면 짜증을 낼 것이 분명하다.

환경부의 업무 자체가 새로운 것이 많지만, 자연보전국은 그런 점에서 첨단을 달린다. 국 자체가 생긴 지 2년 7개월밖에 되지 않은데다 새로운 업무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보전국 간부들은 상대방을 만나면 먼저 자신의 업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려는 버릇이 있다. 일부 간부에게는 아예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환경부내 최고참 국장이기도 한 박종건 자연보전국장장은 자연보전국의 사령탑을 두번째로 맡고 있다. 그는 얼마전 춘천으로 최각규 지사를 만나러 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개발욕구가 큰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자연보전국은 '생물다양성보전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전국의 주요 산맥과 자연공원을 생태통로로 연결하고 도시에 자연을 되살리는 '그린네트워크화 구상'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정종택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리 꽃 동산' 조성행사 장면. 200여평 면적에 우리 꽃 33종 2만4천본이 식재되었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을지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3共시질 고도 성장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최 지사였지만 '21세기에는 환경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박 국장의 설득이 먹혀들어 갔다. 강원도는 최근 강원도의 홍보주제를 '깨끗한 자연'으로 삼고 한국 제일의 휴양관광지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자연보전국의 일은 크게 자연보전과 환경영향평가 업무로 나뉜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문제에 더해 최근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과 녹지의 보전,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오

염관리'에서 '자연환경보전'으로 환경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자연보전 업무는 바로 개발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자연생태계를 지키고 손상된 곳을 원상회복하며 국민의 자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자연보전국에 속해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자연보전과 업무의 성격은 다르지만 녹지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자연보전의 파수꾼 구실을 하고 있다.

자연보전 업무는 지난 80년 환경청이 발족하면서 환경생태과로 처음 시작했다. 이어 지난 90년 환경

처로 승격되면서 자연환경과로 이름을 바꾸어 달았고, 93년 「자연환경보전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연보전국으로 규모를 키웠다. 애초 환경부는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오는 방식으로 행정체계를 갖춰 나갔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돼 온 상하수도 업무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수자원관리 업무가 그 예이다.

또 자연환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부처를 꼽으려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이를테면 천연보호림과 야생조수는 산림청, 물고기는 수산청, 천연기념물은 문화체육부, 자연공원은 내무부, 도시공원은 건설교통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사정을 알 길 없는 일반인과 환경단체는 자연훼손 사례를 보면 먼저 환경부를 탓하게 마련이어서 환경부는 애꿎게 속앓이를 하게 된다. 특히 국립공원 안에 스키장과 골프장이 들어서고 각종 개발 명목으로 녹지가 잠식당하는 예가 언론에 보도되면 “환경부는 무얼 했느냐”는 비난은 더욱 강도를 높게 된다. 적어도 도시내 녹지와 산림·야생동물·국립공원 등의 관리를 환경부에서 총괄해야 마땅하다는 게 자연보전국 직원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다.

선우영준 자연정책과장은 환경부 직원 가운데는 가장 먼저 일광욕(?)과다로 콧등의 껍질을 벗겨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활용해 주말에 제주도 한라

산 국립공원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온 것이다. 선우 과장은 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전국의 주요 산맥과 자연공원을 생태통로로 연결하고 도시에 자연을 되살리는 ‘그린네트워크화 구상’을 처음 도입한 이론가이자 물불 안가리는 추진력으로 유명하다.

특히 그는 경제부처 고위 정책결정자를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의 욕구 가운데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자연’이라며 자연보전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한다. 그는 또 “물·공기·폐기물 관리는 선진국 수준을 바라보고 있으나 자연관리는 중국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개탄하기도 한다.

자연정책과는 이런 이념무장 아래 ‘생물다양성보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리이다. 지난 93년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생태계와 생물종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가장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떠올랐다. 자연정책과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초까지 국내 생물의 재산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종의 현황에 관한 문헌조사를 마쳤다.

김원민 과장이 이끄는 자연생태과는 자연보전국의 야전사령부인 셈이다. 비무장지대에서 습지·섬에 이르기까지 보전이 필요한 자연생태계를 직접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일을 도맡아 한다.

올초 특채한 식물생태학 전공의 유대철 박사를 비롯해 鳥類學을 전

공한 김창희 박사, 임학의 전승훈 박사 등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다.

자연생태과는 97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의 동식물 학자들을 동원해 제2차 자연환경 전국기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을 생태계 특성에 따라 보전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등급화한 생태지도가 나오게 된다.

자연생태과에는 기자들의 출입이 잦다. 현장을 발로 뛰는 과원들의 순박함이 사람을 끌지만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아이템이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팔당호에 침투한 미국 원산의 도입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의 위장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봄철에 날아다니는 ‘꽃가루’ (실제로는 솜털종자)는 몸에 해로운가, 남한에 야생 반달가슴곰이 몇마리나 남아있나 등을 취재하려면 이 課를 찾아야 한다.

자연생태과는 특히 습지보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갯벌 등 습지는 생산성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하구둑 건설과 간척매립사업으로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이런 깨달음에서 서남해안 갯벌에 대한 생태계 정밀 조사와 습지의 보전과 이용방안 마련, 습지보호 국제협약인 람사협약 가입 추진 등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숨가쁘게 펴나갈 예정이다. 박국장과 생태과 직원들은 최근 서울대 유근배 교수를 초빙해 습지에 관한 특강을 듣는 등 습지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환경현안과 관련해 종종 집중포화를 맞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미리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82년에 일찍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개발의 면죄부'라는汚名에 시달려왔다.

그동안 주민참여와 평가대상, 사후관리 등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애초 제도 자체가 사업을 인정한 바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어 확실한 개발전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함께 개발압력이 거세지면서 곳곳에서 지역개발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목소리가 위축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과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똑같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론자로부터는 무력하다고 지탄받으면서 개발자로부터도 기피되는 딱한 처지에 몰려 있다.

소문잡 평가제도과장은 요즘 이처럼 골치아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분주하다. 평가제도과는 가칭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해 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평가기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손희만 과장이 이끄는 평가분석과는 언뜻 행정자료실로 착각할 만큼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부에서 가장 바쁜課의 하나이다. 사업자가 보내오는 평가서를 분야별로 평가위원에게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은 바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다. 자연보전국 직원들에게 있어 휴가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취미활동도 그냥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쓴다.



사진은 선우영준 자연정책과장이 휴가를 이용 한라산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상에 올랐다가 찍은 세계적 희귀식물들인 ① 들버들 ② 흰그늘 용담 ③ 돌매화나무

보내 의견을 들은 뒤 협의를 해주고,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끝을 모르게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위천공단 조성사업이나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해줄 때는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평가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집계가 나올 때는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한다.

환경부 안에는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가 많다. 이웃한 노동부 직

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엘리베이터 문앞에는 동아리 활동 벽보가 자주 붙는다. 그 가운데는 자연보전과 밀접한 것들이 여럿 있다. '자연보전과 풍수지리 연구반'에는 무려 90명이 가입했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는 23명이 활동중이다. '자생식물연구회'도 15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이 밖에 '희귀동식물과 천연기념물 연구모임', '철새연구모임', '물고기사랑회' 등이 모임을 갖고 있다.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청사진-「21세기 경제장기구상」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지 30여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서 1995년 현재 1만163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1만달러소득 달성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개도국·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문턱에 겨우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빠른 양적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제도선진화 문제, 국민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적 향상 문제, 부문간의 成長隔差 지속 문제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향후 21세기에는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통합화의 급진전으로 인력 및 기업의 국가간 이동성이 증대되는 등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지방화의 진전으로 정부의 경제통제력이 약화되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동이 예상된다.

또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인구구조도 노령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低賃의 풍부한 인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

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욕구도 단순한 성장보다는 삶의 질 향상과 형평성 제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하고 선진국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장과정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과거의 연장이 아닌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경제장기구상」 -21세기를 향한 전략과 비전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다가올 21세기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내용의 「21세기 경제장기구상」 작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즉, 우리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21세기 경제장기구상」 추진 전략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중장

기계획은 일본을 비롯한 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수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경제기획청이 ‘2010년에 이르는 선택’이라는 장기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1960년의 ‘일본경제의 장기전망’, 82년의 ‘2000년의 일본’에 이은 세번째 중 장기 전망으로 지구와 인간이라는 두 가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자원·인구문제의 확산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010년의 일본경제사회의 모습으로 노동인구의 감소, 환경 및 자원 제약 가중, 경제성장을 저하(2000년대 2~3%)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은 이루어지나 소비수준, 노동시간,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 등 3자 간의 균형유지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민주화 촉진, 세계경제의 장기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에 대한 지구적 대응 등을 금후의 과제로 들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미 발전된 국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강대국, 미국·영국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한 ‘Strategic Economic

Plan'을 수립하였다. 동 보고서에 서는 싱가포르 경제는 향후 20~30년 동안 연평균 5%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1인당 GNP가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Vision 2020'은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화와 사회개조를 시도한다는 목표하에 마하티르 수상이 발표한 장기계획으로서, 경제성장과 경제사회정의의 동시달성 및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그 실천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Britain 2020 Project'는 런던 소재 독립적인 민간연구기관인 Policy Studies Institute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미래의 바람직한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활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의 범위를 좁히고 선택 가능한 정책대안들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해 9월부터 작업

연구작업은 총괄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17개 관련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부·학계·연구계 및 민간의 전문가 420여명으로 22개 부문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각 분과반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난 9월부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2월까지 실무작업반별로 수차례의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분야별로 중간보고서와 핵심전략과제를 작성하였다.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기본전략 및 이의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0년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면에서 GDP 4조달러,
수출 1조 2천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작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선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점과 시정해야 할 점을 발굴하되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 발굴에 역점을 두었으며,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발전경로 및 그들이 취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분석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도 각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어려우므로 작업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런 작업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 보고서간의 제합성·일관성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각 주무과와의 긴밀한 관계하에 부문별 핵심전략과제에 대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실천가능성을 종합검토하였다.

또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단순한 당

위론적인 정책의 나열보다는 정책추진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동시에 강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비전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요인·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한 후 최적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우리 경제구조나 정책이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조직구조·정책 등이 유연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건하에서의 발전전략을 제도의 선진화와 인력·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두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중간보고서는 각 연구기관장 및 학계, 언론계 인사 28명으로 구성된 「新경제 전문위원회」(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상정하여 조정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지금까지 부문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을 차제에 재점검·수립하여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장기종합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기본전략 및 핵심과제를 제시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의 기본적인 작업추진의 視界(time horizon)는 향후 2020년까지 확대하여 전망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제사회의 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2000년, 2010

년, 2020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초기 5년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여 향후 5개년계획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실무작업반 작업도 1996~2000년 기간의 구체적인 實踐課題를 중심으로 작업하여 핵심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의 중장기 전망, 비전 및 발전전략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I 장에서는 향후 급속하게

변동될 21세기 대내외 여건변화를 살펴보고, II 장에서는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을 '세계일류국가'로 설정하고 이의 건설을 위한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둘째, 새로운 발전동력의 창출 셋째, 성장과 삶의 질의 조화와 균형 넷째, 지구촌경제 중심국가의 지향 다섯째, 새로운 국민의식의 함양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확충〉

1. 정부혁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2. 정보화의 촉진
3. 창조적 인력 양성과 선진형 노사관계 확립
4.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제고
5.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국토공간의 생산적 활용
6. 금융 및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
7.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8.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국민의 복지문화수준의 향상〉

9. 소득증대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
10. 환경친화적 사회경제체제의 구축

〈적극적인 대외전략 추진〉

11. 지구촌 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
12.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통일 여의 대비

〈국민의식의 선진화〉

13. 새로운 국민의식의 함양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한국경제의 모습(표 참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면에서 2020년에 GDP 4조달러, 수출 1조 2천억달러로 G7국가에 진입하게 되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20년에 3만달러(1995년 가격)를 상회하고 물가상승률도 선진국 수준인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학기술력도 G7수준에 도달하여 제조업 중 첨단산업 비중은 2020년에 4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

〈표〉 21세기 한국경제의 모습

	95년	2000년	2010년	2020년
• 인구(만명)	4,485	4,679	4,968	5,058
인구증가율(%)	0.90	0.80	0.42	0.04
• 경제활동참가율(%)	62.4	63.8	66.9	68.0
(여성)	(48.6)	(49.8)	(52.9)	(54.9)
• 노령인구부양비율(%)	8.0	9.4	13.1	17.5
• GDP(경상, 10억달러)	456	872	2,107	4,081
(세계순위)	(11위)	(9위)	(8위)	(7위)
• 1인당 GDP(경상, 달러)	10,163	18,200	41,300	80,600
(1995년 불변가격)	(10,163)	(13,700)	(22,000)	(32,000)
• GDP디플레이터(%)	5.4	3.6	3.5	3.0
• 조세부담률(%)	20.7	24.3	25.0	25.0
• 교역규모(10억달러)	251.2	416.4	1,105.2	2,441.0
(세계순위)	(13위:94년)	(9위)	(7위)	(6위)
• 산업구조(%)				
농림수산업	6.6	3.9	3.0	1.6
제조업	26.9	27.4	26.9	26.8
서비스업	66.2	68.6	70.2	71.9
• 평균수명(세)	72.9	74.3	76.1	77.0
• 의사1인당 인구수(명)	962	782	605	401
• 주택보급률(%)	81.7(94년)	-	100(2005년)	-
• 상수도보급률(%)	82.1(94년)	90	95(2005년)	-
• 하수처리률(%)	43(94년)	65	90	95
• 엔겔계수(%)	28.0	25.5	20.6	18.6
• 대도시(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ppm)	0.017	0.010	0.008	0.008
• GNP대비 R&D 투자비중(%)	2.7	3.6	4.0	4.0
• 제조업대비 첨단산업비중(%)	14.8	19.0	31.6	44.5
• 기술진보의 성장기여율(%)	13	17	22	30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청사진-「21세기 경제장기구상」

경쟁적 시장질서의 확립

향

후 21세기에는 세계경제통합의 진전에 의해 무역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국가간 경제적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세계화되는 등 세계경제가 단일 경제권으로 심층 통합되어 갈 전망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은 국제거래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재화·서비스·생산요소·기업 등의 國際移動性을 급격히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30여년간의 급속한 고도성장의 결과로 국민경제의 규모와 구조가 크게 달라짐으로써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이 한계에 봉착하고 시장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실패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과거 市場失敗로 여겨지던 문제들이 정부개입의 대상이 아닌 민간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경제운영방식과 정책기조, 각 경제주체의 행동양식에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여건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산업조직, 기업의 사업·경쟁전략,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등을 변화시키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21세기

에 선진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競爭의 시장경제의 구축'이라는 목적과 비전하에 경제운영방식·정책을 재정립함으로써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발전과 국민후생의 증진 수단으로 시장경쟁과정을 활용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경제운영방식과 정책기조를 경쟁제한적 산업보호·육성에 의한 '경쟁력 강화'로부터 '시장기구의 효율적 작동'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극대화'로 전환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경쟁적 시장경제의 구축'은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여기에서의 주요한 정책과제는 경제 전반의 경쟁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정책과제로는 첫째, 경제질서·제도의 개혁 둘째,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환경의 개선 셋째, 경쟁정책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경제질서·제도의 개혁

우리 경제의 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적 시장경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경제운영방식과 생산자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부 정책기능의 중심을 시장경쟁의 촉진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경쟁규칙의 중립적 집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기능은 특정산업에 대한 보호·육성 및 지도·간섭·통제에서 탈피하여 경쟁적 시장여건의 확립, 공정한 경쟁규칙의 중립적 수립·집행,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경쟁적 시장의 힘이 효율적 자원배분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인 수단이 된다는 인식하에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경쟁정책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경쟁과정을 보호·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경제질서·제도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경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내재하는 부정부과 비리를 털어내고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규제 등에 의한 자의적인 사유재산권의 침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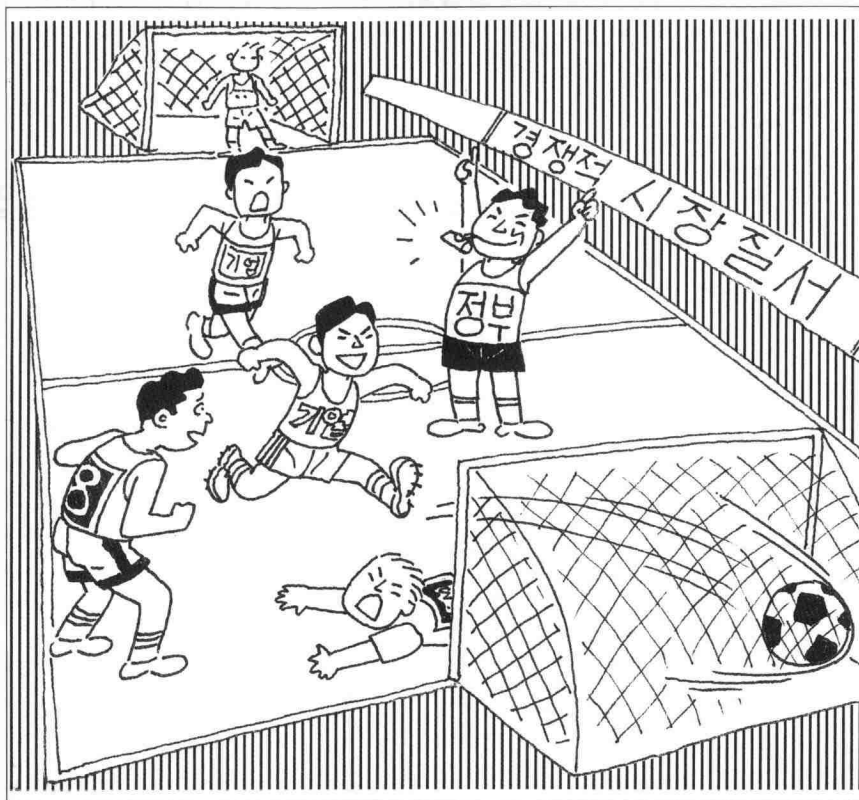
를 최소화하고 나아가선 사유재산권 제도를 명료화하여 경제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귀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환경의 개선

앞으로의 개방화된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정부의 보호와 통제에 의한 성장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기능이 보다 원활히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촉진하고 선진국(예: 미국·뉴질랜드)에 없는 규제는 완전히 없앤다는 자세로 규제완화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규제개혁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규범(norm)과 규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철저히 규범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自然獨占의 공익산업과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규제를 철폐하여 경쟁압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성과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規制定主義를 확립하여 규제기준·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행정지도·간섭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인허가, 신고·등록 등의 규제행정에 있어 일괄 '원 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등 가능



한 규제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환경의 여건을 형성해 나가면서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서도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정부주도하에 구체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모색하려 하기보다는 개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경영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관련법령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진입규제, 사업영역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또한 법

정관리제도 등의 기업과산관련 법제도도 합리화해 나가야 하는 한편 퇴출장벽을 완화하여 한계기업의 자연퇴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정책도 향후 OECD 가입과 더불어 중요한 독립적 정책영역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소비자 후생의 증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염두에 둔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논의·결정에 있어 당해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익과 견해를 체계적으로 고려·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

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시장개방과 국제화의 진전을 감안하면서 직접적인 규제에서 간접적인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되, 공정거래제도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과의 유기적인 통합성을 제고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외개방과 경쟁확대에 따라 경제력집중 문제는 완화될 전망이므로 대기업 여신관리제도 등 직접적인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된 후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다각화 등 기업행태와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의 개선이 정착될 때까지는 총량규제는 유지하고 경쟁제한적인 행태에 대한 규제 또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쟁정책의 강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비하면서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정책 운영체제를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적 법령·제도 등을 축소·철폐하고, 공기업 부문에도 경쟁을 적극 도입하여 경쟁정책의 기반을 확충하며, 그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정책을 경쟁정책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경쟁촉진은 '경쟁정책 중심의 경제운영체제'라는 비전하에 기존 법령과 제도의 틀내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협의의 정책목표에서 벗어나 경쟁기

21세기에 선진경제로 발전하려면
'경쟁적 시장경제의 구축'이라는
목적과 비전하에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운영방식과 정책기조가
'시장기구의 효율적 작동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극대화'로
전환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반확충과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확보하려는 '광의의 경쟁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쟁법·정책의 선진화,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문제에 초점을 둔 국내정책적 목적과 성격에서 벗어나, 국제적 시각에서 경쟁규범을 확립·집행하고 선진국 수준의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정책을 '경쟁촉진'법·정책으로 개칭하고 그 목표를 경쟁적 시장구조·행태의 확립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정책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선진국들도 「反트러스트법」, 「독점금지법」, 「경쟁제한금지법」 등으로 불리는 경쟁법제에 의거하여 경제효율과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카르텔 금지는 시장경쟁 활성화의 핵심과제로서 개방화·자유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인

바, 경쟁정책당국은 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법집행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담합성향과 체질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경쟁정책의 전문성·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조직적 조사·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각에서 중요한 사건을 선별·심결함으로써 사업자간 분쟁의 해결이나 거래관계의 공정화에 그치지 않고 시장구조·행태의 실질적 경쟁화를 통한 시장성과의 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법·정책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의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OECD 가입 및 경쟁정책의 국제화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경쟁정책과 타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쟁정책과 산업·무역정책 간의 유기적 협력·조정체제를 마련하여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WTO 활동과 OECD 논의 등 국제동향을 참고하여 경쟁정책당국과 산업·무역정책당국 간의 상호협력 분야를 개발하고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양정책 간의 상충을 해소한다.

또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상호보완성이 높은 정책들로서 양자간의 합리적 관계정립과 집행체제의 구축은 시장의 효율적 작동과 소비자후생 제고에 매우 긴요하므로 거래관련 정책과 안전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정책당국과 소비자정책당국 간에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정책적 연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정**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청사진-「21세기 경제장기구상」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충



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우수한 노동력과 투철한 기업가정신, 그리고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이 조화를 이루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이르는 등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과제와 장벽은 높고도 많다. 즉, 그간 우리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왔던 投入要素 증대에 의한 성장전략이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 과학기술과 정보화의 급속한 확산 등 국내외 경제여건 또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의 도전을 넘어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는 첫째, 정부혁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둘째,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제고와 정보화의 촉진을 통한 知的資本의 축적 셋째, 창조적 인력 양성과 선진형 노사관계의 확립 넷째, 사회간접

자본의 획기적 확충을 들 수 있다.

정부혁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정부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 및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사업부서화·계약제·기업화·민영화 등 적합한 개편전략을 마련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며, 소비자이자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對국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객 위주의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여 성과 및 능력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각 직급에 대한 실적평가제도와 이에 상응한 성과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재정지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대형사업에 대한 계속비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예산제도개혁의 추진작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회계 전산화작업과 병행하여 공공부문에도 가능한 분야부터 기업회계원리를 도입함과 아울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월제도의 활성화와 분산조달제도의 실시 등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인센티브제 활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재정비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31개인 稅目을 단계적으로 재정비하여 간소화하며, 소득세 기능의 제고를 위해 종합소득세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WTO 체제의 출범에 대응하여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재점검하고, 전산신고방안을 강구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는 등 세무행정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를 통한 知的資本의 축적

앞으로 전개될 고도의 과학기술·정보사회에서는 無形의 지적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므로 과학기술수준 및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네트워크화된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1세기 첨단기술·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방 위주의 과학기술 개발체제를 혁신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견인할 정보·생명공학·신소재·신에너지기술 가운데 한국의 특화 가능 영역에서 핵심기술역량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00년대까지 반도체·자동차·가전·조선산업 등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는 정밀기계, 로봇, 항공, 환경·보건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선두 수준에 진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상호보완관계 강화를 통한 기반기술과 산업기술의 융합 및 조기 상업화 능력 제고, 전문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소규모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대규모 연구조직과의 경쟁·보완적 체제 구축, 연구개발시설·장비 및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계 개선 등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대폭 확충, 知的財産權 관련 법제의 개선 및 표준화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기술의 개발·확산 촉진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자동화·전자화된 고도정보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원격의료·원격교육 등이 보편화되는 사회(Cyber Community)가 구현될 뿐 아니라, 홈쇼핑·홈뱅킹 등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혁신과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제고와 정보화 촉진을 통한 知的資本 축적, 창조적 인력의 양성과 선진형 노사관계의 확립,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은 이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전자거래가 일반화되며, 공장도 지능화되는 경제(Cyber Economy)도 머지않아 정착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지식집약적인 소프트웨어·영상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과 통신서비스산업 및 장비제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통하여 국가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00년까지 효율적이며 개방된 전자정부의 구현, 열린 학교 실현, 중소기업 정보화, 첨단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보사회의 하부구조인 超高

速 정보통신기반을 2015년까지 구축하여 삶의 質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먼저 97년까지 전국적인 선도시험망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예컨대, 정보자료의 안전성과 개인의 私生活을 보호하는 제도의 확립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전자화폐 및 전자주민등록증 등의 도입에 대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창조적 인력의 양성과 先進型 노사관계의 확립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국가간의 비교우위는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에 달려있으며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보에 있어 人的資源의 질과 그 활용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창조적 고급인력의 양성과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는 물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창조적인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설립과 학생선발·교육내용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교육을 地域 密着型으로 전환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교육에도 경쟁여건을 강화하고, 경제·사회가 새롭게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종업원 재훈련 등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래의 근무형태나 인력수요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며 점차 복잡·다양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직업의 수는 86년 1만451개에서 95년 현재 1만1,537개로 증가했으며, 최근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파견근로제도가 在宅 勤務의 확대 추세를 통해서도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은 물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정보의 유통 및 교육훈련에 대한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함은 물론,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사관계법·제도·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며,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구현하여 노사가 신뢰하고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선진형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勞·使·政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등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며, 공공보육시설의 대폭 확충 및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설립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뿐 아니라,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 확대 등 공공부문이 여성채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애로현상 타개와 향후 예상되는 수요증가의 사전대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21세기의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서 우리의 경제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국민편익 증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시설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1세기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국가(hub)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교통·물류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과제이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개발하고, 부산항·광양항 등을 국제교역의 거점이 되는 대형 중추항만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류체계의 합리화와 권역별 內陸物 流基地의 확충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이 93년 현재 17% 수준에서 2011년에는 9%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고속간선교통망'을 구축하여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주요도시를 1~2시간대에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의 구축 및 주요 간선철도의 複線化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고속도로망 확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陸·海·空에 걸치는 각종 교통수단 간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연계수송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장기종합교통계획이 수립·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첨단교통체계(ITS)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93년 현재 물이용량은 290억t인 데 반해 물공급능력은 310억t으로서 공급예비율이 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2011년의 물수요는 366억t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2000년대초로 예상되는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수계별로 중소규모 多目的댐을 건설함은 물론, 물값의 현실화 등 수요절감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체계의 확립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형 사회기반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가격 합리화 및 세계개편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효율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며, 民 資發電事業 확대를 전력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LNG 인수기지 건설·운영 등에 민간참여를 촉진하며, 석유와 천연가스의 도입선 다변화 및 공급·비축설비 확충,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재원이 차질없이 마련된다면 정부의 예산배분 확대 및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원**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청사진-「21세기 경제장기구상」

국민의 복지문화수준 향상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결과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소득이 증가하여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조건이 상당수준 충족되면서自己啓發을 중시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등 국민들의 행태와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력 또한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에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산업사회의 沒個性性이 극복되고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개성이 중요시되는 다원적 사회가 전개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다양성과 자기실현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양적경제성장'이라는 단일목표를 위해 다른 가치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제도 및 가치체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유지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외적인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넘어 순조롭게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은 代替的이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는 인식 아래 인간지향적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성장의 과실이 개개인의 후생증진으로 실현되도록 국민의 복지·문화 및 생활환경 수준을 향상시켜, 성장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 경제와 삶의 질에서 명실공히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예방적인 韓國型 사회복지체계의 정립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지향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고 국민의 복지수준은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복지제도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여 국민들 사이에 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되, 경제성장과 상호보완적인 생산적·예방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형 사회복지체계는 증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선진국의 福祉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편적 국민욕구의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은 다양하고 차별적인 개개인의 복지욕구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민이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되, 보험급여수준을 적정화하고 자활지원 및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급속한 확대에 의한 과다한 관리운영비, 급여 및 서비스의 중복 등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사회복지관리체계를 효율화하며,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과 가치관을 살린 사회복지체계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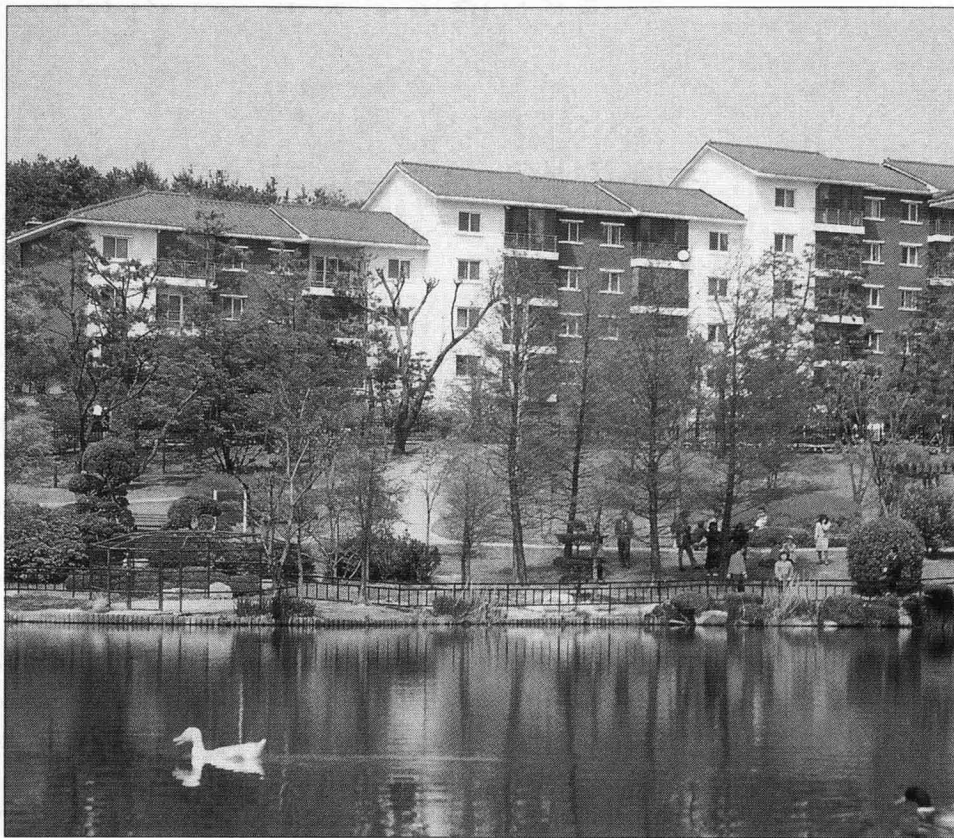
시키고 기업의 종업원복지 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

정부는 98년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는 등 기본적인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한편 증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제고가 불가피한데, 조세부담률은 96년의 21.2%에서 2000년에는 24.3%, 2020년에는 25.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확대가 최대의 복지시책이므로 고령자 및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년후 再雇傭制·시간제 고용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과 취업형태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재훈련기회를 확대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나아가 치매전문병원 등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민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로 국민들은 문화·건강·여가를 포함하는 '문화적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국민들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질적 복지는 물론 문화적 복지



까지 증진함으로써 복지를 완성해야 한다.

국민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로는 첫째,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문화적인 삶'의 실현을 통한 선진형 생활문화의 향유 둘째,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국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며 국민휴식공간의 조성 및 편리한 관광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속히 증대하는 국민들의 문화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문화·레저시설의 확충이 필

수적이다. 예컨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레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주 5일 勤務制 정착에 대비하여 대도시 주변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문화예술공간·도서관·레저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벽지·공단 등에도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진정한 의미의 세계일류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통해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꾀함은 물론 문화예술 및 語文분야의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전국

민의 문화향유기회 증대 및 문화예술 세계화의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연극산업과 만화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민적 수요를 충족 시키고 아울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環境親和的 사회경제체제의 구축

지난 30여년간 성장 위주의 발전 과정에서 환경보전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간주되어 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약했고 이로 인해 환경문제가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 추구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환경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점차 증대되는 반면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활동 증대,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때 쾌적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상호발전적인 조화를 도모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향후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뿐인 국토환경을 영원히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삶의 터를 후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조화되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저공해 청정에너지를 개발, 보급하고 전철 등 저

우리나라가 순조롭게 선진경제로 진입하려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은 代替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는 인식 아래, 인간지향적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복지·문화 및 생활환경 수준을 향상시켜, 성장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해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수처리장·폐기물 매립장·재활용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토의 環境容量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부하가 환경악화나 환경파괴를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배출총량에 따른 부과금 징수 등 오염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생산공정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이 되도록 하고, 환경보전적인 소비행태와 생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환경규제기준을 선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생활공간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지하공간환경관리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생태계 보

전지역을 확대하고 생태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시 일정 비율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거 수준의 선진화

80년대말 이전까지는 국민총생산 대비 주택투자율이 낮아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하였으나, 88년부터의 주택 200만호 계획과 93~97년 간의 「新경제계획」의 추진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됨으로써 주택난이 완화되어 93년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79.1%에 이르고 있다. 또한 주택의 양적 부족에 의한 주거과밀현상 외에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아 주거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총생산 대비 주택투자율을 99년까지 6.0% 이상 유지하여 2000년대초 전국의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쾌적하고 다양한 '質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 수준을 선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임대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보급률 100% 달성에 맞추어 주택분양가·주택규모·유형 등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전원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청사진-「21세기 경제장기구상」

적극적 대외전략의 추진

세

계경제 통합화에 대응하여 각국은 국내시장을 열어 세계기업들과 자유롭게 경쟁하는 능동적인 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구촌경제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계화의 추진으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국가위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世界經濟秩序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세계화의 추진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무한경쟁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방식을 선진화하고 기업 및 민간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계화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무역·투자·자본거래 등의 분야에서 개방화 및 자유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금융·외환·자본 자유화와 외국인투자개방은 조기에 완료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규범과 조화되도록 국내의 제도 및 관행을 신속히 정비하

고, 새로운 국제규범의 출현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및 민간주도형 경제질서의 확립으로 기업의 세계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무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통상 및 경제외교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외개방이 국내산업구조 개편,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교역 및 투자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대외개방을 완성하고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범적인 국가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무국경 지구촌경제의 중심국가(hub)로의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 또는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국제기관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경제외교의 강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다자주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교역질서 및 규범의 확립이 가장 유리한 세계경제환경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국제경제질서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가 이들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자간체제 밖에서 쌍무적으로 다루기 힘든 중국·러시아 등의 WTO 가입을 기본적으로 지지함으로써 WTO체제를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일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對개도국 교역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WTO체제를 통해서 개도국들의 시장개방에 힘을 기울여 우리에게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가 지구촌화하면서 세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토론의 場 그리고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 및 공동사업의 窓口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으로, 분쟁·질병·환경·에너지·빈곤 문제 등 地球的 문제의 해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기구에서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누리는 일반적 위상 외에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도는 구체적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부담금과 출자금 등 재정적 기여도 및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의 分擔金 및 국제금융기관에의 출자금을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 세계화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국제의식을 고양하고, 국제통상 및 경제외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

우리나라는 세기의 전환점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소수 국가 중의 하나이며, 30여년간의 비교적 단기간내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개발 사례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개도국이 우리의 開發經驗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對개도국 교역비중도 對 선진국 교역비중을 능가하고 있어 對개도국 경제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큰

세계경제 통합화의 조류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구촌경제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계화의 추진으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국가위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世界經濟秩序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對개도국 지원정책은 과거 개발경험을 최대한 살려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닌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受援國의 당면 수요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보다는 자구세력을 돕기 위한 지원수단의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多岐化되어 있는 對개도국 지원 관련기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위한 '개발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와 산업적으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정치외교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 및 지역을 우선지원하되,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전세계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개발경험을 살려 受援國의 인적자원 개발 중심 종합프로그램을 추진하고, 公的開發援助(ODA) 규

모의 획기적 증대와 非連繫(untied) 원조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地域主義에의 적극적 대응

21세기 세계경제는 아시아·美洲·유럽이라는 3대 지역경제권으로 大分될 것이며 각 지역간의 연계 강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다. 현재 아시아와 미주는 이미 APEC 결성을 통하여 경제협력의 기초를 쌓고 있으며, 미주와 유럽은 TAFTA 논의, 아시아와 유럽은 ASEM을 비롯한 대화채널 설립 논의를 통해 각각 양 지역 간의 협력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국가로서의 협상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여 '상호 排他的이 아닌 다수의 경제협력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참가하고 있는 APEC에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ASEM에의 능동적 참여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에 주력하여야 한다.

APEC은 우리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중국 등 우리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의 발전은 多者主義 질서에 있어서 우리의 협상력과 발언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급증하고 있는 東아시아국가와의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는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지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질서에 의해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APEC내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조정해 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여타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다자주의의 활성화를 통해 역외차별을 완화해 나가는 방법일것으나,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경제협력체나 경제통합체의 시장침투를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EU에 대하여는 韓·EU간 기본협력협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通商摩擦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기술협력의 경우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機械·정밀화학·新素材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큰 분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EU 역내로의 현지투자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조업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유통 및 금융 부문에의 진출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ASEM 참가는 통상외교의 다변화 및 회원국간에 존재하는 상호보완성의 활용도 提高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에도 ASEM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망된다. 특히 ASEM을 통해

EU 및 ASEAN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SEM이 지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신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외교적인 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000년 3차 ASEM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협력 강화에 있어 촉매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에서의 중심적 역할 수행

경제·기술 강국인 일본, 신흥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중국, 신흥 선진국으로 등장할 한국, 그리고 資源寶庫로서의 러시아 極東地域을 포괄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21세기 세계 경제 중심지의 하나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 冷戰時代의 유산이 잔존하여 역내 경제협력이 그 잠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세계적 경제통합이 진전되면서 域內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동북아국가들과의 관계는 남북한 통일과정 및 통일후의 대외관계에 있어 정치·경제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지역이 앞으로 역내국가들 사이에 경쟁과 협력이라는 관계를 보다 뚜렷이 드러내게 되면 우리로서는 機會와 挑戰의 양 측면을 모두 갖게 될 것이다. 즉, 거대한 중국시장이 성장하고 일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되고 러시아 극동의 자원개발이

현실화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日本과의 갈등관계가 전망됨에 따라 쌍무적 통상관계에 있어서나 동북아 경제질서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발전이 국내 산업에 주는 경쟁압력 증대와 일본의 기술우위 지속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도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북아경제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로부터 수반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기술 원으로서의 일본,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중국, 資源原으로서의 러시아 극동이 주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 향후 산업화된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활용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와 경제 및 기술 발전 수준상 중간위치에 있는 점을 활용하여, 동북아지역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그 경제적 잠재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물류, 교역의 중심지(hub)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청사진-「21세기 경제장기구상」

바람직한 국민의식의 함양

제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근로자·기업인·정책담당자 등 모든 經濟主體들이 잘살아보자는 목표하에 열심히 일한 결과 현재와 같은 괄목할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 결과 소득수준 또한 빨리 증가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단순한 행동의 준거는 더 이상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모든 경제주체에게서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최대 관건은, 과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잘살아보자라는 의식이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퇴색되는 시점에서 이를 대체하면서도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바람직한 국민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바, 우리가 가장 주력해야 할 국민의식의 先進化課題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필요한 한국적 자본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일이다.

의식개혁운동의 방향설정 위해 전담기구 설치

국민의식과 관련된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욱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의 역할이 결정적인 만큼, 개별 사안에 대해 여론을 선도해 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와 같은 일방적 교화 위주의 교육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의식개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를 한 시적으로 만들어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효과측정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하였던 의식개혁 관련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장기적인 목표 없이 사안에 따라 즉흥적으로 기획된 것이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후평가를 해보지 않았다.

이제는 21세기까지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바람직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해 경제주체별로 가져야 할 창조적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그 효과가 실제로 경제활동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지, 국민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장경제 지향적인 관행과 의식의 정착을 위해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수범사례를 조사·발굴하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확산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이들을 대우해 주는 풍토를 조성하며,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 등과 같은 경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실제로 국민들의 의식 및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보완작업에도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장애가 되는 관행과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보다 함

리적인 시장창조적인 관행과 의식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토록 한다. 이를 테면, 과도한 관혼상제에 드는 비용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경제단체와의 협조하에 전개하고, 기타 영수증을 안 받는 관행 그리고 가격정찰제의 불철저한 실시 등에 관해서도 일정 기간을 정해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시키도록 한다.

바람직한 국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중 단기 전략 수립

지금 우리 사회는 이중적인 제약 조건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제가 보편화되면서 지구촌 시장에서 각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30여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즉, 대외적인 상황은 점차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욕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신적 무장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 제고

21세기형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잘살아보자’라는 의식이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퇴색되는 시점에서 이를 대체하면서도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바람직한 국민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필요한 한국적 자본주의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인·학계·언론인·노조 등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언론매체·공청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자기책임의식의 함양

21세기의 경제운영은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국민 각자가 자기책임의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자기책임의식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공정한 경쟁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의 성과로서의 **‘富’**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구시대적인 관행이 남아 있는데, 이런 관행과 의

식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지역감정도 연고주의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은 21세기가 되어서도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연고주의에 입각한 의식 및 관행을 찾아내고, 그 병폐가 경제활동에 얼마나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규명하며, 국민의식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적 자본주의정신의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가정·직업 교육에 있어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도덕성·창의성을 기초로 국제화·정보화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가정에서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기본예절을 담당하며 그리고 기업에서는 전생애에 걸쳐 학교교육과의 연계하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므로 대학교육이 직업활동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대학교육과 직업활동의 연계고리를 강화하여 일정한 직업활동을 한 후에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국민 각자가 평생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질서의 확립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의 기초질

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상과 처벌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환경오염, 교통사고 및 혼잡, 산업재해, 쓰레기 처리비용 등의 복지저해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정·학교 등에서 교육의 통를 통해 기초질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기

초질서 확립에 대한 캠페인도 기업이나 언론사 등과의 연계하에 적극 전개시켜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공정한 집행과 함께 시민차원에서의 신고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를 선진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봉사활동이 개인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부

분이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기업·지방자치단체·학교·사회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수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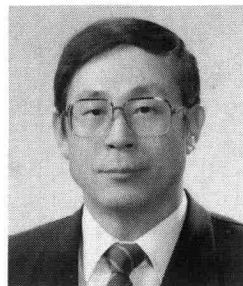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필요한 자기책임의식·합리성·창의성 등 다양한 경제의식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조사·발굴하고 이들 수범사례를 언론매체와의 연대하에 널리 알려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이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유인제도를 강구토록 한다. 이를테면, 자기 분야에서 철저한 프로근성을 갖고 열

심히 일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직업인 그리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한동안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던 기업인 의사, 변호사, 예·체능인 등 고소득자 중에서 가장 성실히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의 표창을 하고 동시에 그 다음해에는 세제 감면을 해주는 것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입사나 승진 등 회사운영에 있어 가장 공정한 기업 또는 창의성이 존중되는 기업 등을 발굴하여 이들 수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 회사를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다른 기업구성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박정호**



세계7위권 진입을 위하여 —KDI의 장기전망을 보고



문희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초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의 2020년까지의 장기전망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이 전망에 의하면 95년말 4,500억달러의 우리 GDP가 25년 후인 2020년에는 약 10배가 되는 4조1천억달러가 되어 지금의 세계 11위권 경제규모에서 7위권으로 도약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도 95년의 1만달러에서 3만2천달러(95년 불변가격 기준)가 되고 경상가격으로는 8만600달러가 되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3배 이상 향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전망은 미국 와튼경제예측연구소의 전망을 援用한 것이라 KDI의 독단적인 창작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신뢰도가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전망을 분석해 보면, 우리 GDP가 경상달러로 연평균 9.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25년간의 달러물가상승률을 2.5%로 잡더라도 실질 GDP 성장률이 6.5% 성장하면 되므로 지난 30여년간의 우리 실질 GDP 성장률 약 8%에 비춰볼 때 이 전망치는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KDI는 우리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와 기본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그러한 과제와 조건들은 전망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경제가 지키고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것들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여기에 추가하여 우리가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스탠포드대학의 폴 크루그만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이다.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은 주로 생산요소의 투입, 즉 인력과 자본의 투입증가에 의한 것으로 선진국 경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의 효율성 증가로 인한 성장에의 기여는 극히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처럼 노동력 등 투입요소의 증가가 앞으로 과거와 같지 못할 나라는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아직도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MIT의 앨리스 암스텐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과 존 나이스비트 등 미래학자들도 아직은 동아시아의 지속적 성장에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90년에서 95년까지 우리 경제에 투입된 노동인력이 약 11% 감소되었고 근로시간수를 보더라도 동 기간내에 겨우 1% 증가한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25년간 노동투입은 계속 감소가 예측된다. 따라서 한 단위의 노동과 결합되는 자본, 즉 자본장비율의 증가를 통한 꾸준한 경제의 생산성 증가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필요한 추가자본 투입을 위한 재원은 우리의 높은 국내저축과 필요시 해외차입으로 충당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낮아지는 인구증가율,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보다 많은 여가의 선호와 이에 따른 1인당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력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현재의 48%에 머물고 있는 여성근로 인력의 비율을 KDI가 제시하는 2020년의 55%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인력정책과 직장에서 남녀 성차별의 보다 과감한 철폐 등이 실현될 수 있다면 여성인력의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요인은 투자이다.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투자는 연평균 약 15%씩 증가하였고, 새로운 투자가 될 때마다 생산능력의 양적 팽창과 아울러 새로운 기술을 함양한 기계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도 꾸준히 향상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왔다. 따라서 미래에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오늘처럼 잘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높은 저축률이 계속되어야겠고 둘째, 기업들의 활발하고 동태적인 경제행위를 통한 적정이윤의 추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가 예측되는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노사관계의 정착 그리고 정부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달성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의 질이 높지 못하면 완제품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성장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2020년까지의 지속적인 성장은 대기업이 아무리 앞서서 달려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오늘날 우리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경영개선·정보수집·자금동원 및 판매능력 등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앞으로의 성장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 격차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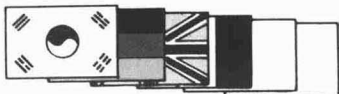
우리 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교통·건설 등 서비스산업이 계속 낮은 생산성에 머문다면 경제생산성의 下向平準化로 고율의 성장이 장기간 계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우리의 서비스산업 시장이 완전 개방될 때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보험·건설·물류·교통·소프트웨어 등 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제 수준에 접근하지 못하면 2020년의 꿈은 달성하기가 어렵다.

오늘처럼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되고 제품의 사이클이 매일 다르게 단축되는 상황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기고 고율의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조정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중화학공업 즉, 전자·자동차·기계·조선·철강 등 산업은 우리가 꾸준히 질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 이 중 일부는 노임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경공업이 쇠퇴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先導산업을 첨단분야에서 꾸준히 발굴·개발해야 됨은 물론 기존의 중화학공업 중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몇개의 산업은 과감하게 버리는 슬기와 용기가 요청된다. 특히, 앞서 말한 폴 크루그만 교수의 '언급대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생산요소의 증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획기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최대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동원하고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KDI는 2020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에 이어 7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대만·홍콩·싱가포르 등 동북아시아의 나머지 세 마리 龍도 같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 못지않게 성장함으로써 이들이 1인당 GNP 수준에서 우리를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위는 어떻든 간에 우리 경제가 향후 25년 동안에도 지금처럼 생동력 있게 발전해 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고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화합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KDI의 전망은 실현되고 2020년경에는 세계에서 막강한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남원**



OECD 시장경합성 논의와 多者間 무역의제

7 년여의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한 WTO의 출범은 무엇보다도 다수 개발도상국들을 물에 의한 게임의場に 포함시킨 점과, 세계교역질서에서 다자간무역체제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GATT를 통하여 추진한 시장장벽의 완화 및 자유무역 증진성과에도 불구하고, WTO체제가 당면한 문제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EU·NAFTA 등 지역통합체와 APEC 등 지역협력체제의 양적·질적 확대 심화가 WTO 다자체제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과, WTO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 약속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행위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WTO체제가 새로이 규율한 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이나 과거 국내정책 영역으로 간주되던 경쟁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경제질서의 축이 EC·미국·일본 등으로 다극화되고 특히 중국 등 아시아권의 잠재시장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선진국들은 소위 경쟁친화적 무역체제(competition friendly trading system)



김동선

駐 프랑스대사관
OECD 가입준비사무소 서기관
(통상산업부에서 파견)

구축을 위한 整地작업에 전력 투구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국제경합성'(international contestability of markets)논의로 볼 수 있다.

물론 OECD에서 현재까지는 시장의 국제경합성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립이나 규범화(rule-making)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들의 공동관심 분야에 대한 분석적 작업을 진행하는 정도지만, 이러한 분석작업은 과거 GATT다자간협상(라운드)에서의

OECD 역할과 견주어 볼 때 앞으로 WTO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의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WTO 1차각료회의는 95년에 새로 출범한 WTO의 향후 좌표설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서비스 후속협상 등에 대한 모니터 등도 중요하지만 투자·경쟁정책·규제개혁·뇌물 및 부패 등 광의의 시장경합성 관련 의제들이 향후 다자간라운드의 정식의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환경의 세계화’가 국제경합성의 논의배경

국제경합성의 논의배경은 무엇보다도 ‘기업환경의 세계화’라는 외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기업의 다국적화, 생산·기술·마케팅의 무국경화 진전으로 상품 및 요소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역과 투자의 상호영역이 불분명해졌으며, 국내정책 또는 규제영역 분야가 점차로 시장 접근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시장경합성 논의가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경 없이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관심이 국경간 상품이동에서 서비스·아이디어·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설치·활동으로 이전되면서 자유화의 대상이 국경장벽보다는 시장구조적 장벽 (behind the border obstacles)을 제거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배경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합의 및 정부재정압박 등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시장개입의 여지가 축소된 반면, 새로운 경쟁상대로 등장한 선발개도국들은 종래의 무역규제라는 정책수단을 투자나 경쟁규제라는 수단으로 대체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조건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들 수 있다.²⁾

이론적으로는 이미 ‘시장의 국제적 경합성’이란 개념이 보벌 등의 산업구조론³⁾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나, 이러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배경은 역시 각국의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계속되는 무역수지 악화,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시장개입의 한계, 다국적기업의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요청, 일본의 경우 경제구조조정압력 및 규제개혁을 추진할 외부적 영향력의 동원, 미국으로부터의 양자적 압력을 다자적으로 일반화하려는 구상 그리고 유럽

과거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경제질서의 축이 EC·미국·일본 등으로 다극화되고 특히 중국 등 아시아권의 잠재시장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선진국들은 소위 경쟁친화적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整地작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국제경합성’ 논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의 경우 시장단일화와 고용창출적인 경제성장기반 마련, 동구권의 개혁을 통한 유럽단일경제로의 순조로운 편입추구 등이 3대 경제권역의 국제경합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서로 상이한 접근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대체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협상의 틀을 마련하고 선진국 상호간 합의도출 작업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설정한 후, GATT를 통하여 다수 개도국까지 다자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거 다자협상의 관례였다.

과거 동경라운드에서 기업의 행위인 반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반덤핑협정 체결이나, 우루과이라운드의 보조금 감축효과측정을 위한 지표의 개발, UNCTAD를 중심으로 한 일반특혜관세(GSP)의 창조 등이 OECD가 선진국간 진행한 분석작업을 기초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국제경합성 논의는 이제 초기단계로서 이를 다자적으로 규범화하거나 다자협상라운드를 출범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의한 장벽과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 등 규율 가능한 대상에 국한

현재까지 시장의 국제경합성 논의는 OECD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접근확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동 논의는 Geza Feketekuty 등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한 개념의 정리작업과 함께 시장의 경합성에 대한 측정수단, 지표개발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OECD는 잠정적으로 ‘국제적으로 경합적인 시장’에 대한 개념을 ‘재화 및 서비스공급자 간의 경쟁적 과정이 제한적인 또는 왜곡적인 공공·민간의 조치나 행위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 시장조건’으로 정리하고 있다.⁴⁾

동 논의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경합적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합성은 정도(degree)의 문제라는 현실적 한

계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고, 경합성을 보장할 정책적인 수단으로는 선형적으로 수정불가피한 장벽(소비자와의 관계, 학습효과, 문화, 지리적 여건, 관습 등)을 인정하고 정부에 의한 장벽과 기업의 반경쟁적인 관행 등 규율가능한 대상을 국한하여 논의하고 있다.⁵⁾

한편 OECD에서는 이러한 경합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일반화된 지표설정은 당분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시장점유율, 시장집중화지표(Concentration Index), 수입비중, 가격, 이윤,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 등 결과(results)로부터의 지표측정과 벤치마킹을 위한 모델사용방법(예를 들면 제조분야는 EC 등 경쟁적 리더를 벤치마킹하여 비교하는 지표)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OECD가 개발하여 우루과이라운드 시장개방의 효과를 측정하던 수단인 농업분야에서의 생산자/소비자 보조상당치(PSE/CSE), IMF/World Bank가 적극 검토한 국별비교지표(Indic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OECD의 자동차·기본통신·유통·건설 등 특정시장의 구조적 개방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OECD/FDI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세계화지표(Globalization Index) 등이 참고로 검토되고 있다.⁶⁾

이러한 개념과 측정수단 개발이 전반적 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특정 시장분야(예를 들면 자동차시장 등)에서 선진국간 합의되는 경우, 바로 그 시장에 대한 폐쇄성의 측정지표와 양자차원의 개방압력과 장벽완화 압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경합성에 대한 개념이나 측정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전이지만 OECD는 금년 가을 국제경합성에 대한 규범화 관련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경합성논의의 다자화와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다자간투자협정 규범화·규제개혁 등 연관외제들도 동시에 논의

OECD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시장의 국제

경합성' 논의와 관련하여 OECD 타위원회에서 다수의 연관외제들이 동시에 논의중에 있다.

우선 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규범화가 97년 5월을 목표로 진행중이고, 경쟁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쟁정책의 국별 법·제도 적용범위에 대한 수렴화작업과 국제간 조화가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공공관리위원회·산업위원회·무역위원회 등 다수위원회에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논의가 진행중으로 97년 5월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 2년간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뇌물 및 부패에 관한 규율강화작업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개별외제에 관한 논의는 투자나 뇌물, 부패의 규범화작업과 함께 경쟁정책 분야는 자동차·유통시장·필름·통신 등,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수송·통신·유통 등 공통적인 분야에 대한 분야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OECD 경합성 논의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논의속도와 접근방법, 규제개혁·투자 등 연관논의 동향과 국제적 경합성 논의로의 통합 가능성, 향후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출범 가능성 즉, 국제경합성 논의가 향후 다자간 무역협상의 주요목표가 될 수 있는지 등 세 가지 사항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우선 OECD 무역위원회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개념화, 계량방법 개발, 규범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통·농업·기본통신·서비스 등 사례연구와 분야별 분석을 통한 특정시장의 경합성 지표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측정지표에 대한 모델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제경합성 연관외제 중 투자와 뇌물·부패 이슈 이외에는 각국의 상이한 법·제도 및 현실을 감안하여 단기간에 국제공동의 새로운 규율을 설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각국 제도와 법규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합성 연관외제의 통합논의 가능성은 바로 국제경합성에 대한 다자간 협상출범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투자, 뇌물·부패, 규제개혁 등 규범화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우선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OECD 시장경합성 논의와 다자간 무역의제

96년 5월 OECD의 각료이사회 보고서는 향후 시장의 국제경합성 논의와 다자간 무역의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OECD 무역의원회가 각료이사회로부터 추가작업지시를 받을 사항 중 총론적으로는 '시장의 국제경합성', 각론으로는 무역과 연관된 투자·경쟁정책·환경·노동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각료보고서 메시지는 금년말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의 의제 즉, 향후 무역의제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OECD 논의의제 중 다자간 라운드로의 발전가능성은 일차적으로 12월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의 결과를 보면 가시화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미국·EC 등 선진국간에도 관심의제가 상이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균형된 의제선정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C 일부국을 중심으로 OECD투자협상을 WTO로 이전하자는 제의나,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려는 EC 보고서, 96년 4월 킬 G7회의 및 OECD 무역과 노동보고서에서 미국·프랑스 등의 노동조건과 무역의 연계주장, 미국 주도로 OECD국간의 부패·뇌물 규율에 대한 규제강화, 일본의 주도에 의한 규제개혁 논의 등은 향후 무역의제와 관련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결국 선진국간에도 의견이 상이한 새로운 의제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공통분모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립과 기업환경의 동등하고 무차별적 기준(level playing field) 마련이라고 볼 때 이러한 개별적 논의들은 광의의 '시장의 국제경합성'이란 협상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다자간의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금년말까지 OECD 가입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OECD회원국의 일원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다수 OECD국가들은 과거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이나 GSP수혜 또는 APEC 무역, 투자자유화 일정

OECD는 잠정적으로 '국제적으로
경합적인 시장'에 대한 개념을 '재화 및
서비스공급자 간의 경쟁적 과정이
제한적인 또는 왜곡적인 공공·민간의
조치나 행위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
시장조건'으로 정리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장벽과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 등 규율 가능한
대상을 국한하여 논의하고 있다.

에서 논의되었던 개도국 지위를 앞으로는 포기하고 OECD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앞으로 OECD 가입국으로서 다자간의 라운드 개시 전 선진국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과거 반덤핑 등 MTN코드나 현재의 정부조달협정과 같은 일부국간의 합의보다는 다수 개도국을 포함한 다자간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WTO 싱가포르회의의 의제선정에 있어서도 다수 개도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

는 반덤핑·섬유·보조금 등에 대한 의제를 포함시킴으로써 균형된 의제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자간 규칙에 의한 세계무역질서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APEC 등의 지역협력체 논의와 병행하여 OECD, WTO 등에서의 다자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들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제도를 조속히 경쟁지향적 제도로 개선하는 길이 명실공히 OECD국가로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 **남재**

- 註 1) *The International Contestability of Market and the New Trade Agenda : A Preliminary Outline*, WP(95)55/Rev.1/OECD
- 2) *The Scope, Implication and Economic Rationale of a Competition Oriented Approach to Futur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Geza Feketekuty, TC(96)6/OECD
- 3) *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William Baumol, John Panzar and Robert Willig, 1982
- 4) *The International Contestability of Markets - Issue Paper*, TD/TC(96)5/OECD
- 5) *Measuring the International Contestability of Markets : A Conceptual Approach*, Graham, E and Lawrence, R 1996, OECD
- 6) *Indicators of Market Openness : A survey of Literature*, TD/TC/WP(96)14/OECD

조기출퇴근제를 도입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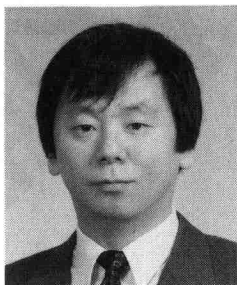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구한다’는 격언이 있다.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행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사이에서 조기출퇴근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한다.

조기출퇴근제도는 개선과 혁신의 출발점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논거를 내세우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실제로 조기출퇴근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싫든(?) 좋든 조기출퇴근제에 따라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성을 인정받기에 한계는 있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조기출퇴근제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3년 7월 삼성그룹은 조기출퇴근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삼성의 15만 전임직원이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기로 한 것이다. 이 7.4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일반



이범일
삼성경제연구소 신경영실장

**조기출퇴근제가 기업과 소속원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크다.
조기출퇴근은 직장인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줄 뿐 아니라
출퇴근전쟁에서의 체력손실을 줄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준다.
추가로 창출되는 시간은 자기 계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화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상 초유의 엄청난 실험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집이 수원인 사람이 어떻게 시청 앞에 7시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라며 반발하는 임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조기출퇴근제를 실시한 첫날 정시출근율은 95%를 넘어서 많은 걱정이 기우였음을 증명했다. 조기출퇴근제가 시작된 지 약 3년이 지난 지금 7.4제는 ‘삼성신경영’을 상징하는 조치로서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신세대층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조기출퇴근제가 기업과 소속원 그리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크다.

우선, 조기출퇴근은 직장인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지금도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출퇴근에 낭비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웬만한 지역이라도 출근하는 데 한 시간 반 가량이 걸린다고 한다. 어림잡아도 출퇴근에 세 시간, 즉 하루의 8분의 1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력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아침 출근길 콩나물시루 같은 대중교통수단(예, 전철·버스) 안에서의 전쟁을 한차례 치르고 출근하면 기진맥진하여 거의 한 시간 정도는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필자도 과거에는 그랬으니).

그러나 7.4제가 실시된 이후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가 된다. 분당이나 일산에 살고 있는 동료들도 30~40분이면 충분히 시청 앞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퇴근시에도 비슷하다. 러시아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길어도 한 시간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즉, 출퇴근시간만 절약해도 1.5~2시간 정도의 시간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런 효과는 도시교통의 분산 효과도 가져와 사회전체적인 출근시간의 단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추가로 창출되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자기계발에의 활용이다. 누

구나 하루 한두 시간이 가져다 주는 효과에 대해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루 두 시간을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남들이 사는 평범한 5년에 자신만을 위한 3천시간을 더 보태는 것을 의미한다. 3천시간이면 두 가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며, 파일럿을 양성하고도 남는 시간이라고 한다. 이 3천시간의 확보와 효과적인 활용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에서 조사한 하루에 두 시간씩 5년을 자기계발에 투자했을 때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둘째, 실력을 키우지는 않더라도 직장생활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는 보람을 얻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자연히 늘게 되어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배우자와 손잡고 저녁노을을 함께 바라보면서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에는 직장생

활의 피곤함을 핑계로 생략되었던 것들이다. 이런 즐거움을 평일에 맞본다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기 어렵다.

조기출퇴근제는 시간창출이라는 양적 효과도 가져다 주지만, 직장생활의 질적인 생산성도 제고시켜 준다. 모든 직장인들은 생산성의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사무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인간의 두뇌는 시간대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오후 시간을 적게 활용하고, 오전 시간을 많이 활용할수록,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조기출퇴근제를 통한 오전근무의 비중을 높이는 것, 이것이 조기출퇴근제를 통해 거둘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이다.

정시퇴근이 조기출퇴근제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조기출퇴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정시(4시)퇴근을 실천하는 일이다. 할 일이 없더라도 늦게까지 남아 있는 사람을 곱게 보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은 조직에 남아 있다. 자신의 업무가 끝났더라도 옆 동료의 일이 끝나지 않았거나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신문이라도 보고, 잡담이라도 하면서 버티는 것이 기존의 조직관행이다. 특히 부서장 및 간부들이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그룹의 경우 7.4제 실시 초기에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7.4제가 잘 준수되지 않는 조

<표> 1일 2시간의 자기계발 투자시 나타나는 효과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운전면허증	2종보통	1종보통					
볼링	AVG150	AVG180	AVG200				
O A	사내3급	사내2급	사내1급	정보처리기사2급			
어학(英·日)	사내검정시험3급			사내2급	사내1급		
변리사	자격증 취득						
독서	50권		100권	150권	200권	250권	
수영	기본기	평형, 자유형		배영, 접영			
바둑	입문	9급	6급	3급	1급		
골프	인도어	100타	90타	핸디싱글			

직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문책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다. 이렇게 되자 관계사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상사들은 앞장서서 퇴근을 독려하고 실무자들은 이에 저항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某회사의 경우 종래 특근·잔업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정시에 퇴근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직원들이 일거리를 싸 들고 회의실이나 자료실로 숨어들면서 밀실작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퇴근을 하라는 지시는 추상 같았지만 퇴근시간까지는 도저히 일을 끝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뒷사람에게 들켜 불호령을 받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조기출퇴근 제도가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거래처를 접대해야 하고 은행과 거래도 해야 하는데 사회의 다른 조직이 전혀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황에서 유아독존식으로 삼성만 조기출퇴근제를 실시하니 이에 따르는 업무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데도 문제점은 있다. 예를 들면 생활리듬, 생활스타일이 달라지니 뭘 하더라도 평일에는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함께 술자리를 하더라도 삼성사람들은 늦어도 10시면 자리를 뜨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혼자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눈치보이는 일인가?

게다가 불행히도 리더를 잘못 만나면 출근은 새벽에 하고 퇴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밤늦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출퇴근제는 노동력의 착취일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과거의 9.6제

부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기출퇴근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변해 보자는 것이다. 변화는 모든 개선과 혁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아래서는 보통 퇴근이 8시, 9시로 늘어져도 으레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7.4제에서는 아래서는 안된다. 임직원이 새벽에 일어나 어렵사리(?) 출근하는 것은 4시에 퇴근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퇴근시간이 늘어지면 9.6제 때보다 불만이 훨씬 높아지기 마련이다.

기업과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효과 커

이런 부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기출퇴근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수십년간 막연히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성문화된 불문율을 깨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번 변해 보자는 것이다. 변화는 모든 개선과 혁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출퇴근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열심히 일하자"(Doing things right)라는 고정관념

을 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기술과 자본의 열세를 그저 성실한 인력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버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농민적 근면성을 앞세워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생각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앞으로는 질 높은 상품과 고부가가치업무를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은 우수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어느 민족보다도 창조적이고, 복합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런 창의성과 복합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앞으로는 올바른 일(Doing the right things)로 승부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기출퇴근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는 과감히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근무시간만 늘려서 몸으로 때우는 식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할 수 없다.

조기출퇴근제는 모험이다. 기업과 임직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즉, 일시적인 생산성 향상에 답보가 있더라도 인간의 계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이를 극복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아침시간을 활용한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잠들은 새벽시간에 깨어있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역사는 부르고 있는 것이다. **김영**

조기출퇴근이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

80년대 후반 이래 진행되고 있는 자본합리화 운동의 새로운 경향은 유연화 전략과 기업문화 전략의 통일로서 파악할 수가 있다. 유연화 전략이란 기존의 생산방식과 생산체계가 보다 유연하게 시장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기계 설비를 확보하고 보다 유연하게 노동력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화 전략은, 시장수요에 적극적으로 연동하여 고용수준을 변화시키는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다품종의 생산수요와 기술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본 공정의 다능공화를 꾀하는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 그리고 임금의 총량적 합리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임금의 유연성(financial / pay flexibility) 등으로 구체화된다.

기업문화 전략은 기업의 공유가치를 만들고 이를 기업활동 전반으로 파급,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체질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기업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는 없으나 기업전략 차원에서 바라보는 기업문화란 기



권재철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조기출퇴근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전략은
위기에 처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영혁신 방식이기는
하지만 노동배제적 성격을 뚜렷이
내재하고 있다는 한계와 함께
한계상황 이상으로 쥐어짜는
일본식의 노무관리 방식인
'마른 수건 쥐어짜기' 수준에
머물 우려가 높다.**

업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관·태도·느낌·행동방식 등과 같은 공유의미/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를 생산·조직·가치체계 등 기업활동 전면에 침투시킴으로써 기업체질(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구상과 실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문화 전략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정서관리, 문화활동과 문화적 구축물에 대한 개입, 상징적 조작에 의한 무의식적 지평에의 개입, 교육훈련을 통한 일상성의 혁파, 발상의 전환을 강제하는 의식개혁 운동,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인적 자원 관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문화 전략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자본의 합리화 전략은 최근 유연적 근로시간,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9시출근 6시퇴근'으로 규정되는 전통적인 근무제도가 파괴되고 조기출퇴근·탄력출퇴근·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출퇴근 시간의 파괴는 조기출퇴근에서부터 시작돼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가 삼성그룹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93년 7월 삼성그룹은 조기출퇴근제를 시발로 기존의 근무시간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룹총수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신경영의 상징인 출퇴근 시간 조정은 타성적인 근무방식의 개선이 우선적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타성을 바꿈으로써 그룹차원에서 추진중인 경영혁신을 몸으로 실감토록 하자는 것과 '변화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삼성의 조기출퇴근제도가 시행될 무렵 이 제도는 '퇴근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 기존의 관습·타성에 따라 비현실적이라는 내부불만이 높아 '일만 더 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상식선의 우려는 한국의 최대재벌과 그리고 재벌총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오히려 강하다. 삼성그룹 비서실에 따르면 조기출퇴근은 신경영의 뼈대이고 이것의 중단은 신경영의 후퇴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변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퇴근시간이 돼도 안 나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안 나가면 그 부서장이 책임을 진다" "이것은 명령이다" 라는 그룹총수의 추상 같은 경고 앞에서 이를 제어할 아무런 단체나 장치가 없이 개개인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조기출퇴근하라는

총수의 명령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뀐 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가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얼마전 삼성신용카드의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조기출퇴근제가 직원들의 여가활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신용카드가 3백2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기출퇴근제 활용실태에 따르면 조기출퇴근제 실시 이후 여가시간이 '많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8.3%에 그친 데 비해 '조금 늘었다' 33.0%, '변동없다' 40.8%, '오히려 줄었다' 6.5% 등으로 응답해 다수의 직원들은 '오전7시출근 오후4시퇴근제'가 곧 여가시간 증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근뒤 여가시간 활용으로 '어학공부를 한다' 15.6%,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한다' 20.6%로 자기발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응답자는 36.2%에 그친 반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24.9%, '가족과 함께 지낸다' 22.2%로 나타났다. 특히 밀린 회사업무를 한다는 직원도 8.3%에 이르러 상당수 직원들은 7.4제 도입 목적이라는 자기계발에 여가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40.3%가 회사업무에 밀려 시간이 없기 때문으로 답하고 있다.

이나마도 재벌총수의 결단과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출퇴근시간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나온 사무직의 결과라면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잔업감소에 따른 임금감소와 조기퇴근에 따라 개인시간이 많아지면서 미혼여성 노동자들이 파트타임으로 부업을 갖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퇴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개인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도 증가하여 생활에 여유가 없어지는 데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노사협의회에 대한 제조업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평생직장에 대한 의식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직장을 옮기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 있다. 신경영 이후 회사직원들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29%가 '약간 좋아졌다', 9%가 '많이 좋아졌다'고 답한 반면,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또는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이 각각 52%와 10%로 조사돼 인간관계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기출퇴근제(8.5)가 시행되는 D그룹의 경우에는 여전히 오후 5시가 되어도 제대로 퇴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D그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1%가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퇴근시간이 잘 지켜진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시 퇴근이 잘 안 지켜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대상의 45%가 '상사의 늦은 퇴근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업무과다'가 34%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일부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기업의 신경영 전략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제대로 된 조기출퇴근제도

가 가져오는 순기능을 무시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출퇴근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전략은 위기에 처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영혁신 방식이기는 하나 노동배제적 성격을 뚜렷이 내재하고 있다는 한계와 이미 말라 있는 수건을 쥐어짜서 물을 내는 격으로 더이상 짜낼 수 없는 것을 한계상황 이상으로 쥐어짜는 일본식의 노무관리 방식인 '마른 수건 쥐어짜기' 수준에 머물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조기출퇴근제도는 어느새 집중시간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로 그 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고 이제는 그 간 재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변형근로시간제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화 구호와 함께 '삶의 질'의 향상이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특히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Yearbook of Labour Statistic), (1995) 등의 자료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4년 현재 48.7시간으로 비교대상 6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특정주·특정일에 극도의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제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삭감하려는 의도이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비인간적인 행위인 것이다.

소위 노동자들의 자기계발과 여가

**조기출퇴근제도는 어느새
집중시간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로 그 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고, 이제는 그 간 재계에서
주장해온 변형근로시간제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의 자기계발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오히려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선용을 위해서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세계화에 걸맞게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조기출퇴근 논쟁이 있었지만 자칫하면 출근시간은 앞당기고 퇴근시간은 지금과 비슷하게 돼 근무시간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현재 보류된 상태이다.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조기출퇴근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처방을 찾는 과정에서 착안되었다. 먹고 마시는 소비성 서비스업 종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체는 일할 사람이 모자라 조업부진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조기퇴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술수요가 감소되면 유흥업소가 줄어들고 비대한 서비스업의 인력이 제조업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을 도입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향락적 서비스업의 급성장은 지난 시기 재벌과 일부 가진자들의 각종 투기 및 부도덕

한 권력에 의해 무너진 사회의 도덕규범·상업논리 속에서 잉태된 것이지 직장인들의 저녁 술좌석에서 유래했다고 하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민주적 개혁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엄정한 조세정책,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강화, 건실한 사회경제적 풍토 조성 등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진행될 때에 비생산적인 산업구조와 왜곡된 고용형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도입된 고용보험제가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공공직업 안정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노동시장의 사회적 유연성이 확보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수급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서구사회의 예를 보면 시간 단축이 고용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여성 고용의 확대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

**실천하는 친절행정
쌓여가는 국민신뢰**



기·업·정·보

부당한 환경관련 표시·광고 규제

김종웅

공정거래위원회 기획과 사무관

기업들이 최근 제품과 공정에 그린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따른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1993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환경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78.5%에 달하며, 이 중 환경광고를 한 상품이 일반상품에 비해 호감이 간다는 소비자가 76.1%에 달하고 있어 환경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광고는 일반제품에 관한 표시·광고와는 달리 소비자가 그 효능을 느끼거나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가 더 심각하다. 환경광고에서 주장하는 환경적 효능은 과학적 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를 매우 혼란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에서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적 효능에 대한 입증성, 애매모호한 광고표현의 사용금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ISO 환경광고기준은 환경용어 표시에 있어 요건의 강화를 통하여 선진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규제수단이 될 전망이며, 국내 기업들로서는 특히 국제적 교역에 대한 대비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외국의 환경광고 규제실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환경광고에 대한 소비자誤認의 문제가 제기된 후 환경적 효능에 관한 별도의 광고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캐나다·호주·일본·독일 등 9개국 이상에서 이미 환경광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적 환경규제인증제도의 일환으로 각국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광고의 국제표준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환경광고 기준에서 나타나는 큰 원칙은 표현의 진실성, 광고

◀우리나라 환경광고의 실태와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환경광고 표현들의 문제점은 '그린', '저공해' 등과 같은 광범위한 환경적 효능의 무분별한 사용과 '생분해', '조절전', '재활용' 등과 같이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일정한 조건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경용어 사용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공해', '오염 없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등과 같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 또는 암시하는 경우이다.

둘째, '그린', '클린', '청정', '오존층 보호', '환경친화' 등과 같이 막연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환경적 효능을 주장 또는 암시하는 경우이다.

셋째, '저공해', '오염절감', '에너지절약형', '초절전', '물절약' 등과 같이 환경개선효과를 주장하면서 비교기준과 개선효과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넷째, '재생○○', '생분해성', '광분해성' 등과 같이 계량화가 가능한 환경적 효능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환경광고가 범람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진정한 환경친화상품과 비친화상품을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한 기업에서 애써 개발한 환경상품이 유사업체의 근거 없는 과장광고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한다면, 환경상품의 개발과 생산은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그린라운드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주의적 경영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선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환경광고 기준(안) 마련▶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광고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환경용어가 남용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96년 4월 3일자로 환경광고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이에 근거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그리고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에 의하여 부당광고 여부를 심사하여 왔으나, 환경광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의 특수성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어 상기 기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준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당한 환경광고의 주요 유형 및 기준은 고시로 정하고, 광고표현의 구체적 사례 등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와 지침을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동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가 환경보호를(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린', '청정', '저공해' 등과 같이 막연하고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셋째, '유해물질 감소', '쓰레기 감소' 등과 같이 제품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요인을 감소시켰다는 표현은 감소량 또는 비율을 비교의 기준과 함께 명확히 밝혀야 한다.

넷째, 환경마크나 재활용 가능표

시, 기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환경관련 표시 외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호와 도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섯째,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환경관련 인증, 수상경력 등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표현하여서는 안된다.

여섯째, 환경과 관련된 실험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실험기관이 수행하거나 인정한 실험결과에 한하여 표시·광고에 인용할 수 있다.

일곱째, 일반소비자나 유명인사로 하여금 환경과 관련된 내용의 증언이나 설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개인적 경험과 양심에 바탕한 것이어야 한다.

◀기대효과 및 앞으로의 조치 계획▶

환경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시행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상품이나 용역이 소비자에게 선택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심사업무도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및 지침 시안을 전문가 4인을 포함하여 37개 기관에 정식으로 의견조치를 요청하여 현재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중에 있다. 앞으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단체 회의를 거쳐 동 고시 및 지침 안을 최종확정하여 96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

내가 재정경제원의 외신담당창구를 맡게 된 것은 지난해 한국정부의 장관들이 아직도 연말에 떡값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誌의 보도 때문이었다.

외신기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 외신에 대한 접촉노력이 부족한 데서 연유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과거에는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가 각기 대외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나 국장을 중심으로 외신기자들과의 접촉이 잦았는데 양부처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접촉라인이 끊어지게 되어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자문관이 이 일을 담당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 자신도 우리나라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외국인들에게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건의를 부총리와 재경원 간부들에게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처음에는 외국언론의 국내정책에 대한 문의에 답하고 또한 외신기자들을 자주 만나 상호이해를 높이려는 의도로 출발했다. 그러나 점차 영문보도자료를 만들어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외신기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접촉할 수 있는 취재원은 언어 문제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또한 신문 등 국내언론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센세이셔널리즘 및 비판 위주로 되어 있어 외신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이들의 의문사항 몇가지를 답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했던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한 후 몇가지의 특기할 만한 일이 발생하였다.

재정경제원의 외신창구



심상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

첫째로,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에서 '외국인투자개방 확대계획'을 영문으로 함께 만들어 배포하였다. 자문관실에서 영문보도자료를 만들어 외신에 제공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지만, 담당과에서 직접 영문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증권업무과장이 자문관과 함께 외신기자클럽에서 '증권산업의 국제화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이는 재정경제원의 국제화의식이 크게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로, 소위 우리의 신재벌정책에 대해 外信에서 호

평을 한 일이 생겼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동남아국가들과 중국 등도 한국의 기업투명성 제고 노력을 본받아 외국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는 등 정부정책에 매우 긍정적인 기사를 실은 것이다.

셋째로, 외국언론에 대해 대변인 성명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5월 15일 신재벌정책에 대한 부총리의 기자회견내용을 외신담당관이 직접 작성, 외신 앞으로 제공했다.

또한 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경제자료안내실에 자료를 보내고, 하이텔·천리안 등 컴퓨터통신망에도 동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분들에게 이 자료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세계화시대에는 정부정책도 외국인에게 투명해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수립시 외국인과 외국언론에게 알리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가장 기초적 요건이 아닐까 싶다. 재정경제원의 이러한 움직임이 타부처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

최 근 들어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의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생존·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대기업·소비자 및 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가오고 있는 무한경쟁의 도전이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경제 전분야에 걸친 개방 및 내외국인 동등대우가 진행되고 심지어 국가의 경제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적이거나 선별적인 지원이 더 이상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소득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더욱 다양화·고급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기업경영에서는 기업간의 경쟁심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량생산체제에 적합한 '규모의 경제' 보다는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한 '기민성과 유연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 욕구의 변화를 신속하게 간파하고 필요한 생산기술을 한발 앞서 확보함으로써 기업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몸이 무거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민성·유연성 등 관리기술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능동적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열어나 가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간 경쟁의 심화와 소비자 욕구의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시대'가 오고 있다



임내규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자세변화와 경영혁신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중소기업 문제는 정부가 주로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는 더 이상 정부의 역할과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대기업·소비자 등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경제주체가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세분화·고급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능동적인 '경쟁의 주

체'로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의 정도인 '고객만족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기술과 관리기술을 통한 총체적인 품질경영(TQM: Total Quality Management)이 절실히 요구되며, 총체적인 품질의 구성요소인 품질, 가격 및 납기의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러한 총체적인 품질경영을 통한 시장경쟁력의 원천은 MIT(Mindset,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즉, 고객만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중소기업인의 적극적인 의지(Mindset)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Information)의 획득 및 활용, 그리고 품질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생산기술(Technology)이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쟁력의 원천인 혁신 의지·정보력·기술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21세기는 바야흐로 중소기업의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

과학기술행정 부문의 규제완화

정희권/과학기술처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新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여러 정부의 시책 중 규제완화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책은 없을 것이다.

규제완화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첫째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측면으로 국가주도적인 경제개발단계에서 행해졌던 시장기구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을 철폐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이다.

둘째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의 관점으로 관의 편의보다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쳤던 각종 규제를 완화·정비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95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문의 순위

는 전년도에 이어 48개국 중 24위에 머물러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우리나라는 48개국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간의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경제개혁조치로 느껴지기에는 아직 미흡하며 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추진이 요망된다 하겠다.

과학기술행정 분야의 주된 업무는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술개발을 조장·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현재 과학기술처의 규제완화작업은 원자력 분야와 출연연구기관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행정 부문의 규제완화실적을 보면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기업연구소 설립시 연구원의 자격기준 완화 등 14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행정제도개선과제 6건 중 4건을 완료하였다. 또한 출연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규제완화를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한도내에서 규제완화를 추진

원자력 안전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고 관리능력의 확보이다. 원자력 안전규제체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경제·사회 및 기술적 여건에 맞도록 끊임없이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 부문의 규제완화는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에 「원자력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대상범위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에는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100mCi 이하를 300mCi 이하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허가대상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규제의 강도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판매기관은 일률적으로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방사성 동위원소 허가량에 따라 1년 및 2년으로 정기검사의 주기를 완화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 장치의 경미한 시설변경과 신고사용기관의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시설검사를 생략함으로써 일부 방사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의 운반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의 운반시에, 이전에 운반검사를 받았던 운반방법과 동일하게 운반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한도내에서 운반검사를 서면검사로 대체하고, 운반후 10일마다 운반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출연연구소의 자율성 강화 위해 규제완화과제 30건을 개선완료

정부가 국공립연구소가 아닌 출연기관 형태로 기관을 설립한 것은 연구활동의 특수성 때문이다. 즉, 연구활동이란 그 특성상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연구기관이 독립된 실체로서 자율적 운영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성과의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과학기술처에서는 출연연구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그 개선을 요구한 연구개발 행정규제완화과제(13개 기관에서 142과제)를 접수한 후, 이 중 38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

정 개정 등에 반영함으로써 30개 과제를 완료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비사용 측면에서 연구비의 비목을 종전의 10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하였다. 종전의 여비·기술정보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6개 비목을 직접경비로 통합하여 직접경비는 일단 편성된 총액규모내에서 연구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 공통관리비목인 내부인건비·개발준비금·간접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산방법을 간소화하였다.

둘째, 연구수행 측면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면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3개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필요시 간단한 사유서 제출로 3개 이상 과제에 대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관운영 측면에서 운영비 및 정T/O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외부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은 연구개발비로 이원화된 예산구조와 정T/O, 가T/O, 전일제 위촉 등으로 구분 운영한 인력관리 등을 연구사업비에서 조달토록 일원화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출연기관평가와 관련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매년 실시하던 기관에 대한 평가를 95년부터는 3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하여, 기관업무의 경감과 실질적인 평가를 통한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행정 부문의 규제는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규제가 많아 다른 경제적 규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규제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즉,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능사가 될 수 없으며 원자력과 관련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과학기술행정 분야의 규제완화는 초일류의 과학기술력 확보를 통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허리숙인 봉사정신
일어서는 국민경제**

진 념

노동부장관

대담 : 최운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때 : 96년 5월 14일 • 곳 : 노동부장관실





이번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 노사관계의
의식·관행·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의 「新노사관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진념 노동부장관을 만나 노사관계 개혁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다.

특히 이번 인터뷰는 진념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평소 노동문제에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장관께서는 5월 25일로 취임 1년을 맞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벌써 1년이 되었나요? 지난 1년 동안 노사관계도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는 勞와 使, 나아가 전국민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나하나 처

리해 오는 과정에서 노동행정이라는 것이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노동정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와 사회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흔히들 노동행정 하면 노사분규, 노동쟁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정책에는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적인 과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지식 산업화시대의 경쟁력의 요체를 ‘사람’이라고 볼 때, 노동정책은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한 노사동반자 관계의 정착은 물론 인력·산업재해·근로복지 등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년은 노사, 국민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의 노사관계가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로 이행하는 元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전국 2,800여 사업장에서 46만명이 노사화합선언에 동참하였고 분규도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사협력의 분위기가 금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4월 24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新노사관계 구상」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5년은 산업재해율통계를 산출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1% 미만을 달성하여 안전문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재해율을 3년 이내에 선진국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이 사회보장제도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에 이어 95년 7월부터 복지제도의 최종완성이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사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사업장에 필요한 노사관계 진단기법을 개발하는 등 노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 장관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드디어 노사관계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노사관계 개

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우수성에 달려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1세기에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기술수준을 높여서 이들이 보람과 열정을 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의식과 문화, 제도와 관행은 대부분 과거 산업화·근대화 시대에 마련된 것이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노동계·경영계는 물론 OECD 등 국제기구나 단체로부터 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립적인 노사관계하에서 노사관계 개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노사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우리 산업현장에 노사협력의 인식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보아, 문민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각종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87년 이후 노사대립과 갈등을 겪은 지 10년째 접어드는 해이며 동시에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둔 해입니다. 이제 우리 노사관계도 참여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근본

적으로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 일부 언론이나 노동계·경영계 등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쟁점사항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에서 「新노사관계 구상」을 통해 밝히신 것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번에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 노사관계의 의식·관행·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사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 앞서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는 노사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통해 '21세기형 新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노사관계 개혁은 '노사



대답자 최은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956년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성인교육 전공으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이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에 종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학습사회연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위원회 평생교육분과 연구위원과 정부제2장관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관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리라 생각되지만, 여기에는 누가 참여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까?

▲지난 5월 9일 현승중 전총리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노사 대표 각각 5명, 학계대표 10명, 언론·종교·법조·여성·사회단체 등 공익대표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총 30명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98년 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의식과 문화, 제도와 관행 등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까지의 노사관계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당사자가 21세기를 내다보는 역사적 안목 위에서 산업사회의 共同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영계의 수범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사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달라지고 노사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新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 벌써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이것은 되니 저것은 안되니 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노사관계 개혁이 국론을 분열시켜 경제·사회를 어렵게 하거나 앓을까 걱정됩니다. 무슨 복안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노사관계개혁 추진과정에 다소간의 진통과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사가 슬기롭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혀 나간다면 노사관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제 노사도 더 이상 대립과 투쟁 위주의 노사관계로써는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없고 또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점차 노사간에 '서로 이기는' (win-win) 노사관계를 만들어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사의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와의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共同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노사관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

실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득권을 양보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적지 않은 고통을 분담하여야 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사관계 개혁은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당사자가 21세기를 내다보는 역사적 안목 위에서 산업사회의 공동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영계의 수범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노사관계 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가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도 앞으로는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단기적 임금투쟁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과 함께 가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과거 산업화시대의 유물인 노사문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서 탈피하여 엄정한 법집행자,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정 부는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에 대비한 세계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94년 12월 외환제도개혁계획을 발표하고 95년부터 단계적인 자유화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도 선진형 외환제도

로 배려하였다.

일반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

이번에 개정되는 「외국환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중 일반국민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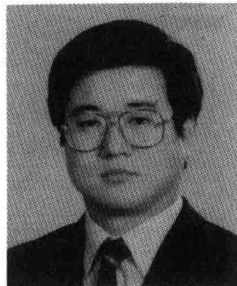
외환 · 자본 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로 바뀌어야 될 전환점에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경제의 여건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95년에도 외환 · 자본 자유화를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또 조그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유화조치를 해왔다.

외국환관리 법령의 6월 1일 시행에 맞춰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이러한 외환 · 자본 자유화 추진을 법적인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95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동법 시행령도 개정하였다. 개정된 외국환관리법령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춰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96년 5월 18일자로 대외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은, 이미 발표한 외환제도개혁 계획상의 96년도 조치예정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하였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일반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의 자유화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김병기
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

첫째, 일반국민의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해외송금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일반국민이 해외에 송금하고자 할 경우 은행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책임지고 확인한 이후에 송금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이 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즉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환은행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함과 동시에 일반국민의 송금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둘째, 해외이주비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현행제도상 세대주는 20만달러, 세대원은 1인당 10만달러까지만 반출이 허

용되고 있는 이주정착비 한도를 2배(세대주 40만달러, 세대원 1인당 2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였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은행에 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은행이 직접 국제청으로 자금출처확인을 의뢰하고 국제청의 회신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일반국민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경우 연간 송금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그 송금내역을 세무서에 통보하던 것을 2만달러로 확대하였고, 보유목적으로 매입하는 외화의 한도도 연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하여 대외지급시 규제범위를 가능한 축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해외에서 송금되어 온 외화로서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자금(증여성 송금)을 현재는 2만달러까지만 환전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도 없이 송금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하므로 2만달러 초과시 송금액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 개인이 해외에 예금할 수 있는 예금 한도가 현재는 연간 3만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를 연간 5만달러로 확대하였다.

기업의 해외영업활동을 적극 지원

현지금융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업의 해외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였다.

첫째, 현재 11개 용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던 현지금융 용도의 제한을 폐지하여 원칙적으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였고, 부동산취득자금 등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현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외사무소 경비지급에 대한 제한도 자유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수출입거래관련 규제를 대폭 자유화하여 보다 원활한 대외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결제방법 중 연불수출 등 수출 후 대금영수거래는 자유화하여 장기간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사후관리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외국환은행과 수출업체 간에 자율결정토록 하였다. 소액거래의 자유화범위도 확대하여 건당 2만달러 이하의 수출입대금 결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면제하던 것을 건당 3만달러로 확대하였으며,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서 현지에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건당 5만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팩토링 수입대상을 건당 10만달러 이하의 거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소규모 국제거래를 외환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수출선수금, 수출착수금 및 분할지급수입거래시 이자선급 및 복리조건의 거래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래

**개정 외국환관리법령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제도개혁 계획상의 96년도 조치예정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OECD 가입과 관련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하였다.
또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리조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셋째, 지금까지 해외건설업체 및 용역업체는 계약잔액의 20%(최소 200만달러)까지 해외에 외화자금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최소 300만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종합무역상사도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30%(최고 3억달러)까지 해외에 외화자금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50%(최고 5억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도가 확대된다.

넷째, 해외지사 설치, 상호계산, 해외투자 등의 대상에서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는 제외하여 왔으나 불량거래처라 하더라도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상적인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정상기업과 동일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자산운용목적의 해외예금을 금액한도 없이 할 수 있게 되며 일반기업은 현행 100만달러까지만 해외에 예금할 수 있었으나 이 한도가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금액한도 없이 해외에 신용을 공여할 수 있게 된다.

외환제도 및 외국환은행업무 개선

대외거래 관련 거래통화를 외국환은행과 고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외환제도 및 외국환은행업무를 개선하였다.

첫째, 외환제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통화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외거래 관련 거래통화를 외국환은행과 고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일반국민 및 기업이 선물환거래 또는 금융선물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거래전에 실수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실수요 범위내에서 적기에 선물환거래 및 금융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거주자의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 장외금융선물 거래는 환율의 과다한 변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와 달리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실수요 범위내에서 이러한 장외금융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차별적 조치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거주자가 외국통화간에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1만달러 초과시에는 그 취득경위 및 인정된 거래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절차를 폐지하여 외국통화간 교환을 자유화하였다.

외화표시 지급보증제도도 대폭 개편하여 원칙적으로 자유화되되 자금의 유·출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형화되지 않은 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 외화표시 지급보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시 교포 및 외국인거주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외환거래에 대해 배려함을 잊지 않았다.

먼저, 지금까지는 화교 등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장기거주 외국인은 국민인 거주자와 달리 자녀의 유학경비 송금 등 일부 외환거래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 5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거주자는 이주비 반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교포에 대해서도 교포의 국내재산 반출허용에 맞추어 동일인당 20만달러 범위내에서 담보물 처분대금 송금을 허용하였다.

셋째, 외국환은행의 국내 점포신설절차를 자유화하여 최초로 외국환점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추가로 신설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게 하던 것을 최초신설, 추가신설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면 7일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외국환은행은 아니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업무 처리 위탁을 받아 일부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업무 중계점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송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외국환은행이 국제거래에 따른 송금·추심 등 제반 결제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국가 등에 소

제한 금융기관과의 계약이 아닐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만 하도록 하여 외국환은행의 대외업무를 원활하게 하였다.

여섯째, 외국환은행의 대외업무 지원을 위해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 설치도 지금까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인가를 받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포를 신설할 때마다 수시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 및 현지법인의 업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외국환은행의 업무자율성의 폭을 확대하였다.

일곱째, 환전상과 관련하여 외국인 여행자와 국민들의 환전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외국통화나 여행자수표를 원화로 교환하여 주는 환전상은 일정요건만 갖추어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제까지는 관광호텔, 외국인 전용매점 등 외국인을 상대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만 환전상설치 인가를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예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납입자본금이나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이 영업소별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두 명 이상 채용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신고할 경우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전내용의 관리를 위해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도록 하되 기존의 관광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환전상의 설치가 자유화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주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으며 환전상이 사들인 외화도 궁극적으로는 은행에 집중될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외환관리체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나 외국인 관광객 및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일반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여덟째, 체신관서의 국제우편환 업무를 확대하여 기존의 업무 외에 추가로 외환우편지료업무 및 대금교환우편물 구입대금 지급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째,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시 현행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사무소 이전시 사전에 신고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만 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지점을 설치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의 국제화 추진

이번 규정 개정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원'의 국제화 추진을 들 수 있다. 원의 국제화란 국내에서 유통되는 법화인 원화가 국제거래 및 해외에서도 결제수단으로서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원화의 유통을 허용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 돈의 가치를 인정하여 우리 돈을 화폐로서 받아주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우리 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원의 국제화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원의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3년 비거주자가 경상거래를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내 외국환은행에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는 종전에 건당 30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해서만 자유원계정에 예치·인출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도 없이 경상거래대금은 모두 자유원계정에 예치·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외국환은행뿐만 아니라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에서도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여행시 원화를 반출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반출된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로이 은행에 예금하거나 외화로 환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외국환은행과 기관투자자는 동일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원화대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원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일본 엔화 등에서 보듯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경제력의 신장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원의 국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적 자본유출입 우려가 있는 거래는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일상적 외환거

불법적 자본유출의 우려가 큰 지급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불법적 자본유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등 불법적 자본유출입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래 및 기업의 대외활동에 수반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자유화하고 기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불법적 외화유출입의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일반국민의 편의 증진 및 기업의 해외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외환·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불법적 자본유출입의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불법적 자본유출의 우려가 큰 지급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불법적 자본유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정한 외환거래時(예를 들자면 해외지사 활동비를 일정금액 이상 송금할 경우) 그 송금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관리 차원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해외에 투자한 유가증권을 해외의 예탁기관에 실물보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대외지급보증 및 해외예금에 대해 정기적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유화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기타 외환시장 하부구조 측면에서 한국은행 금융망(BOK-WIRE)을 이용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외화자금 이동의 투명성 및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외환제도의 선진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자본자유화에 맞추어 일반국민 및 기업들의 의식수준도 선진화·개방화될 때 가능하다. 개인의 해외여행 또는 기업의 해외활동시 자유는 충분히 향유하되 자율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외환·자본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법은 본래 예산부수법안으로서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정부가 서둘러서 「소득세법」을 비롯한 3개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94년에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러나 금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지금까지 정부가 납세자 개인에 대해 일일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주던 소득세의 과세방식이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는 등 조세제도가 종래와는 달리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OECD 가입 등

저소득층 勤所稅 대폭 줄여

「소득세법」의 적용과정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세금이 경감되었으나 가족수가 적은 일부 중·저소득 근로자에 있어서는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문제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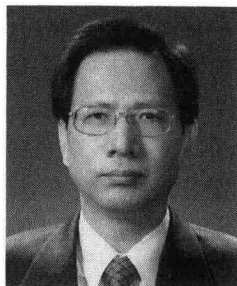
둘째, OECD 가입을 앞두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稅政의 선진화·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시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금년 5월부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도 국내증권시장에 상장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연도중에 불가피하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세법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지금까지 우리 세정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차질없는 조달이라는 지상과제로 인해 징세 위주의 세정운영이 불가피하였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한정기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장

제반 조세여건이 변화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의 선진화·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때에는 납세자

에게 반드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 주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조세탈루협약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를 배제함으로써 세무조사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셋째, 세무조사과정에서도 변호사나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넷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도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고 또 제출한 신고서 등도 진실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납세자를 믿는 신뢰세정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세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규정을 두어 납세자의 비밀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근로소득세제 등을 보완

소득세 부문에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少數가족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자 식비를 비과세로 처리하여 금년 1월분 소득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율 확대하고 인적공제액 상향조정

94년 「소득세법」 개정시 최저세율을 상향조정(5→10%)하고 계급수를 축소하는 등 세율구조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면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인적공제액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종전보다 평균 20% 정도 경감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독신자 등 가족수가 적은 일부 중·저소득 근로자에 있어서는 공제액 인상이 최저세율조정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부담하는 갑근세가 개

〈표 1〉 근로소득세액 공제 및 인적공제 내용

현행(94년 개정)	개정안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 공제한도: 50만원 - 인적공제(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20% - 공제한도: (현행과 같음) - 소수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금액 상향조정 1인: 연100→200만원 (+100만원) 2인: 연200→250만원 (+50만원)

稅法 개정안 중 소득세 부문에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소수가족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자 식비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등 관련세제를 보완하여 금년 1월분 소득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정전에 비해 다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세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부분적으로 확충하고, 독신자 등 소수가족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족현황에 따라 일정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94년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신설

퇴직소득의 경우도 근로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94년 세법 개정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겨 이번 에 새로이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0년근속 퇴직자가 퇴직급여로 2천만원을

〈표 2〉 신설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내용

현 행	개정안
〈신설〉 ※ 현행 과세제도 - 퇴직금에서 다음의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기초공제(퇴직금의 50%) • 근속공제(5년 이하분 연간 90만원~20년 초과분 연간 120만원) - 세액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年分年乘法에 의해 계산 • 세액=(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 공제한도: 근속연수×24만원 ※ 24만원: 95년대비 96년 세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과표계급의 年分 증가세액

받는 경우, 부담세액은 95년도 30만원에서 96년도 60만원으로 30만원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근로자 식비 비과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식비명목으로 받든, 교통비명목으로 받든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난 94년 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월급여 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던 3만원 이하의 식비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다. 대신에 인적공제액을 올려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금년부터 막상 식비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자 식비과세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크게 제기되고 또 근로자의 후생증진이라는 정책방향과의 조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비는

〈표 3〉 근로자 식비에 대한 課稅 조정내용

현 행	개정안
• 근로자가 받는 식비 과세 ※ 95년 이전 - 월급여 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는 현물제공 식사 또는 월 3만원 이하 식비(현금)는 비과세	•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나 월 5만원 이하의 식비는 비과세도록 함.

〈표 4〉 貸損稅額 공제대상 확대 내용

현 행	개정안
•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10%를 대손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대손세액 공제요건〉 - 거래상대방의 파산 -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등	• 다음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 허용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수표 - 소멸시효(3년)가 지난 외상매출금 • 사후관리를 위해 대손 관련 장부는 5년간 보관토록 함.

월 5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貸損稅額 공제 확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판매대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금회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 특히 자금여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여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금년 7월 1일부터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96년 5월부터 외국법인이 발행한 株券도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외국법인 주권도 포함시켜 내국법인발행 주권과 외국법인발행 주권 간에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 심판관의 단독 심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심판기준 금액을 현행 1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당첨**

내가고친 낚은관행

완성되는 경제개혁

지 난 93년 12월 15일, 7년여의 긴 협상 끝에 마침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었고, 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WTO 체제는 기존의 GATT 체제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가 GATT 체제의 대상이 2차산업 위주였던 데 반하여 WTO 체제는 1차산업, 3차

과 전체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가 강화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이번 개정에서는 총 63개 조문(특허법 34개 조문, 실용신안법 8개 조문, 의장법 12개 조문, 상표법 9개 조문)이 개정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주요 개정내용 및 향후과제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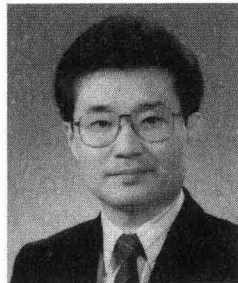
WTO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재산권제도 개선

산업 및 지적재산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미국 등 선진국은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등의 추격으로 제조업 경쟁력에서의 비교우위를 상실하여 가자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하여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분야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그 결과 73개 조문에 이르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타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협정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관련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95년 11월 30일 특허청 소관법률인 산업재산권 4법 즉,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상표법 10차 개정, 의장법 9차 개정) 12월 29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WTO/TRIPs협정 체결에 따라 산업재산권 4법을 협정내용에 맞도록 개정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의 성과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결



우종균
특허청 법무담당관실 서기관

「특허법」 34개,
「실용신안법」 8개 조문 개정

이번에 「특허법」에서는 34개 조문이, 「실용신안법」에서는 8개 조문이 개정되었는데, 특허권의 '실시' 개념을 확대하고, 출원의 조기공개제도를 도입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강제실시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허권의 '실시' 개념 확대

먼저 특허권의 '실시' 범위가 특허발명된 물건 등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 외에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까지 확대되었다(특허법 제2조). 이는 WTO/TRIPs 제28조의 'offering for sale'을 반영한 것으로 물건 등의 실질적인 양도 또는 대여의 전단계인 '청약'도 특허권의 실시 포함시킴으로써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WTO/TRIPs에서 청약의 실시의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특허권이 일단 침해되면 권리자가 손해를 보상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양도의 사전단계인 청약에서부터 특허권 침해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

롯된 것이다.

이러한 청약의 예로는 상품판매광고, 상품의 진열, 카탈로그나 팜플렛에 의한 구입권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등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출원의 조기공개제도 도입

종전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출원을 공개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 이전이라도 출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허법 제64조). 이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역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허제도의 기본구조는 자신의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 있으므로 출원공개를 하여야만 법적인 보호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만 일률적으로 공개를 하고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에 타인이 출원된 발명을 무단 침해하여도 이에 대한 대응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에서 이를 개선하여 1년 6개월 전이라도 출원공개를 원하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출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출원을 공개한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무단 실시하는 제3자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고, 경고장 발송 후 공고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출원공고 이후 침해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허권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

이번 개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현행의 공고일 부터 15년에서 출원일부터 20년으로 변경하였다(특허법 제88조). 이는 WTO/TRIPs 제33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평균 2~3년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역시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

이번에 「특허법」에서는 34개 조문이,

「실용신안법」에서는 8개 조문이

개정되었는데, 특허권의 '실시' 개념을 확대하고, 출원의 조기공개제도를 도입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강제실시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라 특허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록이 있는 때부터 발생하므로 '출원 후 20년'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개정조항은 개정 「특허법」의 시행일인 96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출원되는 특허뿐만 아니라 96년 7월 1일 현재 존속중인 특허권 및 특허출원에도 적용된다(WTO/TRIPs 제70조 제2항 반영).

이렇듯 시행일 현재 존속중인 특허권에도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舊法에 의하여 특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될 것을 예상하여 투자를 하고 사업을 준비한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5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통상실시권)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현재 공고 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허법」의 규정에 맞추어 출원 후 15년으로 개정하였다. 기타사항은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다.

강제실시권제도의 개선

강제실시권제도는 특허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결정으로 제3자에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다.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으로서는 되도록 강제실시권 대상을 축소하려 하였고, 기술력이 약한 개도국으로서는 가급적 강제실시권 대상을 확대하여 원하는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협상

의 결과 WTO/TRIPS 제31조에 강제실시권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특허법 제107조).

이러한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법정용어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를 접수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청구별로 재정요건에의 적합성 및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통상실시권 설정을 재정한다. 재정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다.

개정 「의장법」에서는 ‘**意匠공개제도**’ 신설

「의장법」에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의장권의 '실시' 개념에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포함시킴으로써 의장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장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意匠공개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의장법은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과 같은 공개·공고제도가 없고 심사후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사정을 하고 후에 공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장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출원중인 의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행정재신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출원공개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출원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모방의 우려 및 물품생산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개를 원치 않는 출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으므로 출원공개를 원하는 출원인의 출원만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개의 신청은 사정 이후에는 공개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출원 공개신청을 최초 사정의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하도록 하였다.

공개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출원 및 「특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공보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출원공개된 의장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등록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의장에 있어 출원공개의 효과는 「특허법」상의 특허공개의 효과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다만, 「특허법」과는 달리 의장은 공고제도가 없으므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법**」 개정으로 ‘**색채상표제도**’ 도입

금번 「상표법」 개정에서는 WTO/TRIPS의 규정에 따라 '색채상표제도'가 도입되었다. WTO/TRIPS 제15조는 색채의 조합(combination of colors)도 상표로 등록

〈표〉 강제실시권 재정요건

재 정 요 건	내 용	조 건	반도체기술에 대한 재정
3년 이상 국내 불 실시 및 불충분한 실시	- 특허권자가 3년 이상 국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특허권자와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만 청구	국내수요를 위한 공급	불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 (noncommercial use)	‘비상업적’이라는 요건 추가 ‘비상업적’은 ‘noncommercial use’의 번역으로 ‘비영리적’보다 좁은 개념임.	국내수요를 위한 공급	가 능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실시	행정적 절차(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법적 절차(법원)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없 음	가 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표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흑백으로만 상표를 출원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하여 색채가 결합하는 경우 색채도 상표의 구성요소로 인정하여 색채상표의 출원을 인정하였다. 즉, 색채는 독자적으로 상표가 될 수 없으나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조합과 결합함으로써 상표의 구성요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입법추진과정 초기부터 과연 이러한 개정내용이 WTO/TRIPs 상의 'combination of colors'의 요건을 충족시키는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색채의 조합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도형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 색채상표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급격한 도입보다는 어느 정도 완충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및 일본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게 되었다.

금번 개정법률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고 이에 따라 이미 「상표법」 시행규칙도 개정·시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공격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바람직

현재 작년에 개정·공포된 산업재산권 4법의 하위법령(대통령령 6개 및 통상산업부령 6개)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되는 내용은 주로 개정 법률의 단순 집행사항의 정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특기할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첫째, 지금까지는 서면으로만 제출하게 하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플로피디스크로도 출원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99년도 시행을 목표로 전자출원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출원인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출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보발간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그 사전 준비단계인 셈이다.

둘째, 산업재산권 질권 설정을 위한 수수료를 채권금액의 1천분의 5에서 7만원으로 대폭 인하하였다. 현재 법정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이 활발히 추진

「의장법」에서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의장권의 '실시' 개념에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포함시킴으로써 의장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의장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憲法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에 맞춰 출원중인 의장을 보호하고자 행정색신 차원에서 출원공개제도를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한 자금대출이 시도되고 있는데, 현행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고을어서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것이다.

95년에 WTO/TRIPs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중자산업법」 등의 타 부처 소관 관련법률의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체도가 보다 더 세계적인 무역환경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국내에서조차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번 입법과정에 있어서 특허권의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 특히 존속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에서 외국의 권리가 과보호되는 결과 로열티부담 증가 등 국내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가 있었다.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사물의 한쪽면만을 강조한 주장이다. 국가적으로 볼 때 지적재산권 체제의 완비는 외국인 권리자의 국내투자에 대한 기반을 구축·제공해 줌으로써 기술이전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기업에게 기술개발의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술발전의 지표를 나타내는 특허출원의 내국인 비율도 이제 75%를 상회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국과의 교역을 통해서만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제는 우리 기술의 세계 각국에서의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즉,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지적재산권 전략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고 이런 기초하에서만 타국에서의 우리 기술의 보호 주장이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남원**

19 96년 1월 14일 오전 6시 10분(한국시간 1월 14일 오후 8시 10분) 미국 케이프커너베럴 공군기지의 무궁화 2호위성 발사대. 먼동이 트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 새벽의 찬 공기가 상큼하게 느껴지고 구름 한점 없이 별빛만 반짝이는 새벽하늘, 발사장 주변은 발사통제센터의 발사카운트다운을 위한 준비요원들의 숨 가쁜 목소리

공을 목적으로 한국통신이 약 3,370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여 95년에 통신·방송 복합기능의 중형급 위성 2기를 확보한 사업이다.

무궁화위성사업계획은 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에의 활용을 목표로 80년대초부터 기초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성통신의 수요와 경제성, 활용도에

선진 통신·방송시대 향한 무궁화위성사업

가 옥외스피커를 통하여 흘러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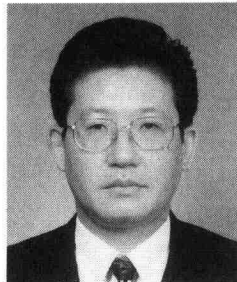
고요한 침묵이 흐른 것도 잠시, 텐!... 쓰리! 투! 원! 발사카운트다운 소리가 울려 퍼진다. 순간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붉은 섬광을 발하면서 3만5,786km의 적도상공을 향하여 발사대를 박차고 치솟은 '무궁화 2호' 위성. 작년 8월 무궁화 1호위성의 발사차질로 움츠려졌던 분위기를 단번에 만회하려는 듯 무궁화 2호 위성은 우리 모든 국민과 숨결을 같이 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것이다.

1945년 10월 영국의 공상과학소설가이자 테크닉 저널 리스트인 아서 클라크卿이 자신의 논문인 「외계중계」(Extraterrestrial Relays)에서 위성을 이용한 글로벌 통신의 가능성을 제시한 후 정확히 반세기 만의 일이다.

여기서는 무궁화위성사업의 추진개요와 발사의의를 간단히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무궁화 2호' 위성 발사로 본격적인 위성통신·방송시대 열려

무궁화위성사업은 첨단 위성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



신순식
정보통신부 통신위성과장

서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80년대 중반부터 국가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첨단통신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89년에 정부는 위성확보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방송위성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 90년대 중반 독자위성 보유에 대한 실행 가능한 세부추진계획 마련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국내위성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케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통신·방송위성사업 종합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통신·방송위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9년 12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종합추진계획의 기본방침으로, 위성체의 제작과 발사는 선진국에 의뢰하고 지상장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토록 하였으며, 위성체의 설계·제작·조립·시험·발사 등의 모든 과정에 국내 기술진을 참여시켜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2000년대초에는 국내에서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90년 5월 무궁화위성의 설계 기준과 구매규격서 작성을 위하여 국외전문용역기관인 프랑스의 사텔 콘세일(Satel Conseil)社 및 캐나다의 텔레사트(Telesat)社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무궁화위성의 설계기준(안)을 마련하고 91년 1월 무궁화위성의 설계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무궁화위성의 구체적인 규모를 결정하였다.

설계기준에 따라 무궁화위성은 중형급 통신·방송위성으로 통신용 중계기 12개, 방송용 중계기 3개를 탑재하여 동경 116도 정지궤도에 위치하게 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확정된 무궁화위성 구매규격에 따라 위성체 제작에 대한 국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91년 12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社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성발사체는 동일한 국제 공개입찰을 통하여 미국의 맥도널 더글라스社와 92년 8월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생활문화에 획기적인 변화 부를 듯

무궁화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위성이라는 점에서 발사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본격적인 위성통신·방송시대의 개막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갖게 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위성통신시대의 개막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지상망이 갖는 공간적 제약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21세기의 우주개발을 위한 경쟁대열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위성사업을 통하여 우주공간의 영토라 할 수 있는 정지궤도 사용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위성수요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첨단의 위성제작기술 전수를 통한 국내기술 향상 및 향후 독자적으로 위성을 제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무궁화위성은 통신과 방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위성으로 우리의 생활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송의 다양한

무궁화위성 발사로 전국적인 디지털위성방송이 가능해지고, 畫像회의·종교집회 및 광범위한 금융전산망 구축 등이 용이하게 되며, 언론의 전국 동시적인 원격인쇄출판이 이루어지는 한편, 비상행정통신의 경우 지상망 두절시에도 긴급통신이 가능하여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이 향상되는 등 앞으로 우리의 생활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의 중계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등 지상망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지역도 위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지구국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통신회선을 구성할 수 있는 회선구성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갖는다.

둘째, 위성은 지상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상통신용으로 신뢰도 높은 통신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내재해성을 갖는다.

셋째, 위성은 우주공간에 위치하여 지구의 넓은 지역과 통신이 가능하여 원거리통신에서도 거리에 따른 비용 차이가 없고 동시에 여러 지점과 통신이 가능한 同報性이나, 다지점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다원접속성을 갖는다.

넷째, 지상의 건물·산과 같은 장애물에 의한 난시청이 발생하지 않아 깨끗한 화면을 전국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언론·금융 등 각 분야에 첨단서비스 제공

무궁화위성을 통한 구체적인 서비스계획은 다음과 같다.

방송 분야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소형안테나에 의해 고품질의 디지털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 위성방송은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제공하는 첨단의 위성방송으로 기존 홍콩의 스타TV, 일본의 NHK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날로그위성방송보다 더욱 선명한 화질은 물론, 음질 또한 CD 수준으로 현장감 넘치는 위성방송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재 개발중에 있는 고선명TV(HDTV)방송 및 디지털음성방송 등의 첨단 방송서비스도 무궁화위성을 통하여 제공이 가능

하게 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위성비디오전송을 통해서 대기업의 사내방송이나 교육훈련·畫像회의·학원강의·종교집회·경마 등의 영상정보를 實時間(Real Time)으로 전국 어디서나 간단한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의 경우 본사와 지점 간의 의사전달이 용이하고 회의를 위한 출장이 없어져서 비용과 인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일반국민도 가정에서 학원강의나 종교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언론·산업체 등에서도 자사와 전국에 흩어진 관련 회사간 경제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경우 전국에 흩어진 지점과 지상재해에 의한 장애 없이 24시간 금융전산망의 운용이 가능하고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의 경우 전국에 흩어진 수백개의 점포와 본사가 동시에 연결되어 재고상황이나 판매상황·상품주문 등의 물류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언론기관의 경우도 위성을 통해 전국에서 동일한 내용의 신문·잡지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 인쇄·출판할 수 있게 된다.

비상행정통신은 행정기관이나 군·경찰이 자연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지상망 두절시에도 이동전화나 긴급통신이 가능하여 사태의 수습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이 향상된다.

우주공간 영역 및 독자적인 위성제작기술을 확보

우주는 영토·영해·영공에 이은 제4의 국가영역이라 할 수 있어 세계각국에서는 우주공간의 자국영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적도상공 3만6천 km의 정지궤도는 현재의 기술로는 제한된 자원이 될 수 밖에 없다.

80년대까지만 하여도 정지궤도는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다시피 하던 것이 현재는 웬만한 국가에서도 정지궤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사용계획을 신청하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는 90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무궁화위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약 5년간에 걸친 인접국과의 전파간섭 조정작업을 통하여 동경 116도 및 113도의 정지궤도를 확보하여 이번에 무궁화 1.2호위성을 동경116도에 발사하였으며, 113도는 향후 위성수요에 사용할 계획

으로 있다. 또한 위성통신시장의 국제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지역위성통신, 초고속위성통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5개의 정지위성궤도에 대한 사용신청서를 ITU에 제출하여 확보를 추진중에 있다.

한편, 위성과 관련된 기술은 선진국들이 이전을 기피하는 최첨단의 기술이다. 이에 정부는 무궁화위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첨단기술의 축적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통신사업자·산업체 등의 기술인력 총 54명을 처음부터 제작현장에 투입하여 첨단 기술의 위성제작기술을 이전받았다.

이 중 한국통신·한국전자통신연구소·삼성전자·엘지·현대 등 8개 기관의 30명이 위성체·탑재체·지상시스템 분야에 참여하여 시스템설계·태양전지판제작·열제어시스템 등 18개 분야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한라중공업·항공우주연구소 등의 총 24명이 발사체 분야에 참여하여 기초설계 및 발사체 구조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았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위성통신 지상장비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저속데이터 통신용 단말기 및 행정통신용 지구국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디지털위성방송방식의 채택으로 이에 필요한 송·수신장치 등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위성의 설계 및 제작, 지구국장비 개발에 대한 기술자립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도 정비,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후속조치에 注力

무궁화위성의 발사는 우주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며 이제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위성통신을 비롯한 우주산업 발전에 본격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궁화위성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여야 하고, 점차 거세지고 있는 통신시장 개방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성통신 관련분야의 기술수준 향상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 무궁화위성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효율적인 위성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여건 마련은 본격적인 위성시대를 맞아 향후 위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 통신중계기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중계기 배분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중계기는 국가의 비상통신용 수요나 행정통신 수요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통신사업자의 사업용 수요와 일반기업의 업무용 수요에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용 중계기는 위성방송사업 허가 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나, 무궁화위성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고 위성관련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위성방송 채널은 가능한 처음부터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성중계기 이용요금 수준의 결정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계기 이용요금은 위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궁화위성의 경우 하나의 위성체로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위성으로 단일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보다 투자원가는 저렴하다. 정부에서는 작년 7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여 무궁화위성 중계기 이용요금을 결정하였는데 대체로 국제평균의 85~90% 수준으로 하였으며, 특히 방송용 중계기는 위성방송 전채널의 운용을 전제로 사업 초기에는 50~2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여 위성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둘째, 위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의 통신관련법령에 의하면 위성통신사업은 기본적으로 위성시설을 확보하여야 가능하나, 위성시설의 확보는 현행 국제전파규칙에 따라 위성운용 개시 3년전부터 6년전 사이에 ITU에 위성망계획서를 제출하여 정지궤도에 대한 인접국가와의 전파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정작업을 완료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의 사업허가 관련 법 및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확보의무와 배치되는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치열해지고 있는 위성통신사업의 국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위성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위성사업허가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성관련 기술의 국내자립을 조기에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위성관련 국내기술수준은 금번 무궁화위성사업 추진

정부는 이제 막 시작된 국내 위성산업을 정착·발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위성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위성사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며, 위성 관련 기술의 국내자립을 조기에 실현하는 한편, 지역위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통신사업자·연구소·산업체에서 파견된 전문가의 현장훈련으로 관련기술의 습득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분야의 기초기술을 습득하고 참여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게 된 것은 향후 위성관련기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 외에 학계·연구소·산업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위성관련기술의 국내 자립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위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위성은 이용지역이 국내인 무궁화위성과는 달리 전세계를 서비스 대상지역으로 하는 위성이다. 이는 국내 위성사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무궁화위성사업 추진으로 얻어진 기술력을 상당부분 활용할 수 있고 민간의 위성사업참여 욕구도 적절히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위성사업의 참여범위를 글로벌하게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무궁화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며, 발전하는 조국의 상징임에 틀림없다. 우리 국적의 위성에서 발사되는 위성전파에 의한 본격적인 위성시대를 열었으며,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동북아지역에서의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인 정책적 배려 등이 총체적으로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성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제도 정비, 핵심기술 개발, 각종 규제완화 등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지난 83년 TV에(추적60분) 방영된 기도원의 실태는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어떻게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저렇게 유린할 수 있는가 하는 탄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 정부는 정신질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민도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과 사회

정신보건정책의 새로운 地平 - 「정신보건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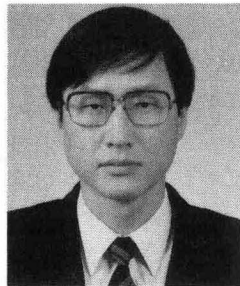
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정신보건정책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공포

「정신보건법」안은 85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강제입원 규정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88년 제12대 국회 폐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그 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규정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92년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 95년 12월 동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과, 기타 재정지원과 벌칙에 관한 조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를 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유영학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장

복귀 노력에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정신질환자 보호대책이 주로 입원과 수용보호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들의 장애극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의무까지 지도록 한 것은 앞으로의 정신보건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된다. 정신의료기관이라 함은 정신병원·정신요양병원·정신과의원 그리고 종합병원·병원에 설치된 정신과 등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다시 생활훈련시설과 직업훈련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나뉘어지는데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훈련 또는 직업훈련·직업알선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의료기관 가운데 정신요양병원은 새로운 의료기관의 한 형태이며 주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즉 「정신보건법」은, 급성정신질환자는 정신

병·의원, 병원·종합병원의 정신과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만성환자는 정신요양병원,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또는 재가환자 등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사회복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일부 민간기관 또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그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정신보건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야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서 법적으로 자격을 인정받는 전문인력으로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약 1,100명, 「의료법」의 전문간호사제도에 의해 배출된 정신간호사가 약 120명이 있으며, 이외에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증은 아니지만 대한심리학회에서 양성한 임상심리전문가와 임상심리사가 약 140명, 기타 사회복지사들이 정신보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신보건 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게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소에 배치되어 지역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앞으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확대·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95년 12월 제정·공포된 「정신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재정지원과 벌칙에 관한 조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만일 정상적인 사람이 보호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몰려 강제로 입원된다면 엄청난 인권침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를 매우 엄격히 규정하여 만일 이에 위배하여 입원시킬 경우에는 무거운 벌칙을 가하도록 하였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입원의 종류를 자의입원, 동의입원, 평가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및 응급입원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입원에 대하여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자의입원은 말 그대로 환자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입원하는 경우로, 환자가 퇴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퇴원 조치토록 하고 있다. 동의입원은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환자 자신이 입원을 원하지 않더라도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로, 이때에는 반드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입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매 6개월마다 계속입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입원은 자해·타해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입원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조치를 시킬 수 있는 경우로, 동 기간 동안 진단한 결과 입원의 필요가 있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 에 의한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3개월에 한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자가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키는 경우로 입원기간을 7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어떠한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퇴원·처우개선의 청구에 대한 심사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 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과전문의, 법조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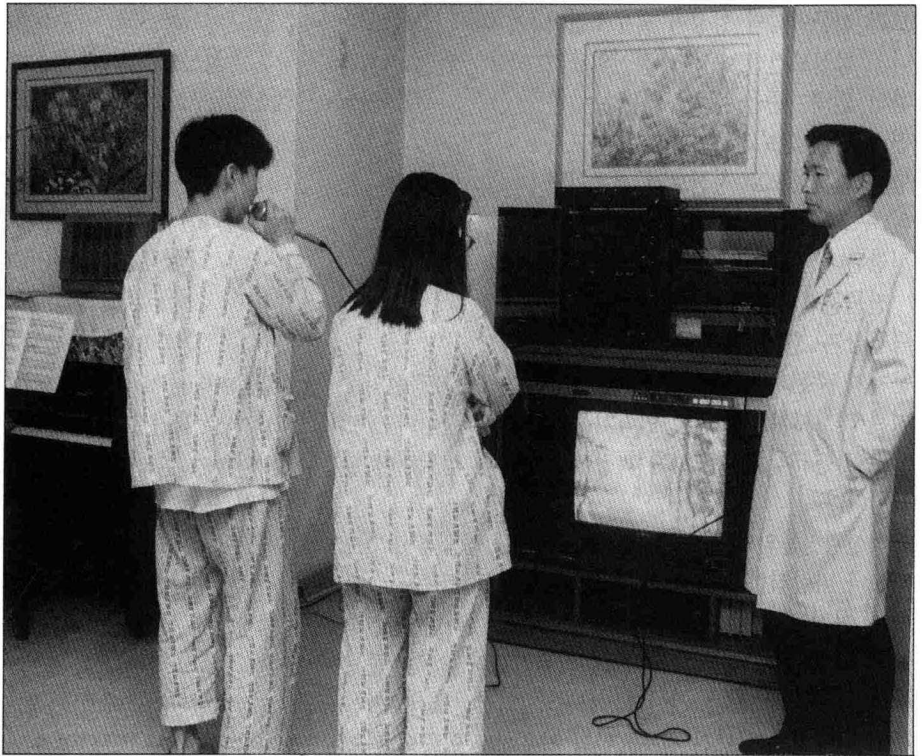
타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심의위원회내에 심판위원회를 두어 퇴원·처우개선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신보건법」은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도록 하고 면회·통신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전문화·다양화에 努力

「정신보건법」의 정신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정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통해서 이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에 돌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시설의 확충과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그동안 전문병상의 증설과 시설 수용환자의 보호수준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



사진은 정신질환치료센터에서 환자들이 노래·음악·미술 집단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루어졌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전문병상이 적은 수준이며(인구 1만명당 병상수: 한국 4.9, 미국 11.2, 싱가포르 11.1, 일본 29.2), 특히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국·공립 정신병원의 확충과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요양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전문병상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국립정신병원은 자폐증·마약중독자·알콜중독자 등 보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대한 치료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병상의 확충과 아울러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시설의 확충도 시급하다. 그동안 정신보건정책은 부족한 전문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고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도 미비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정신보건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추후관리와 정신보건예방교육·환자상담 등 보건소의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적절한 재정지원을 하여 이러한 지역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신

보건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조건이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양적인 인력공급과 함께 질적인 자격관리의 문제가 주된 과제이다. 인력공급 문제는 또한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인력기준과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정신과전문의의 경우 현재 매년 약 100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바람직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현실적 제한여건을 감안한 선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도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주로 담당할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경우에도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서비스의 질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격과 등급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특히 각 분야 전문가들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와 팀워크가 중요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협조와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시설과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전문치료병상의 부족 해소를 위하여 국·공립정신병원의 확충과 정신요양시설의 요양병원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지역정신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민간단체나 환자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몇개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정신보건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에 약 300여 개의 정신장애자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이외에도 약 1천 개소의 소규모 공동작업소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정신보건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시급한

「정신보건법」의 정신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정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통해서 이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회에 돌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시설의 확충과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실정이다.

지난 9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아주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역정신보건 시범사업 결과, 지역정신보건 프로그램이 환자들의 사회 적응에 있어서나 삶의 질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정신질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와 이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 등 현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하고 기피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사람들의 범죄율보다 오히려 낮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두려워하고 기피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의 개선이나 정신보건사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들을 가까이 두고 함께 보살펴야 할 이웃이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정신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향상되고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개선됨으로써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원**

우 리나라 산업재해는 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점차로 감소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965년 産災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 처음으로 근로자 100명당 연간 재해자수를 표시하는 재해율이 1% 미만인 0.99%로 떨어졌다.

이는 그동안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며, 재해자수는 총 1,876명으로 이 중에는 사망자 41명과 직업병에罹患된 근로자 47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선업의 산업재해율은 2.18%로서 전업종 평균재해율(0.99%)의 2배 이상이며, 일본의 93년도 조선업 재해율 1.04%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조선업의 재해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조선업이 제조

‘조선업종 산재예방 종합대책’ 추진

모두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재해예방노력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아직도 선진국 또는 경쟁국인 일본이나 영국·대만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의 비율은 선진국의 3배 이상이나 높다.

특히 조선업종의 경우, 선박 수주량에 있어서는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지난해 한진중공업(주)의 선박수리중 발생한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금년에도 한라중공업(주) 삼호조선소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유비용제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등 조선업종의 산업재해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송지태
노동부 안전기획과장

업이면서도 건설업과 유사하여 작업대상물이 수시로 변하고 협력업체와의 공동작업으로 제한된 공간내의 생산체계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작업 통제가 어렵고, 高所작업·중량물 이동·도장작업·용접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작업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체 모두 작업자의 확보가 곤란하고, 경기호황시 조업의 연장이나 미숙련 작업자의 고용이 불가피하며, 노사

문제 등으로 생산체제가 직영에서 하도급체로 변화하는 데 반하여 모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지원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

〈표 1〉 조선업의 산업재해율 추이

(단위: 명, %)

조선업 산재율은

전업종 평균치의 2배를 상회

지난해말 기준으로 조선업체에는 8만5,892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근로자	62,843	65,489	63,030	75,432	85,892
재해자(사망자)	2,155(16)	1,550(26)	1,293(23)	1,660(43)	1,876(41)
조선업 재해율	3.43	2.37	2.05	2.20	2.18
전업종 재해율	1.62	1.52	1.30	1.18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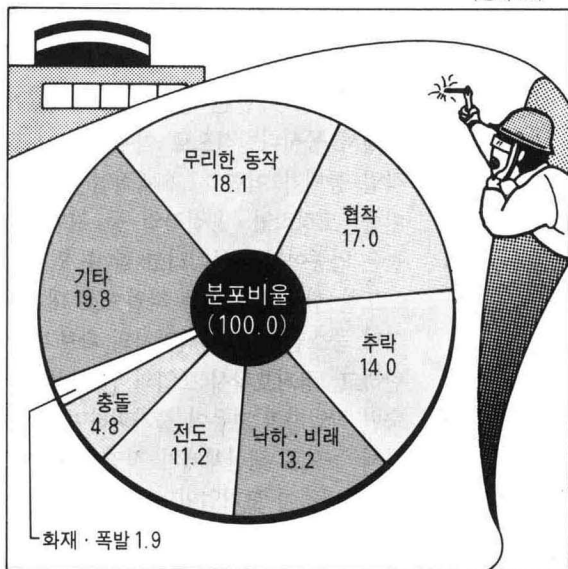
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업체 규모별로 보면, 전체 조선업체 536개소 중 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26개 조선업체에서 발생한 재해가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율에 있어 상시 100인 미만의 조선업체 재해율(3.84%)이 상시 1천인 이상의 대형 조선사의 재해율(1.88%)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작업공정별로 보면 취부(붙이는 작업) 24.6%, 용접 17.1%, 도장 11.2% 등의 공정에서, 부서별로는 선각조립 30.5%, 의장 20.6%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해유형에서는 무리한 동작, 협착, 추락, 낙하·비레, 전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참조).

〈그림〉 조선업체의 산업재해발생 유형

(단위: %)



〈표 2〉 규모별 조선업체 산업재해 현황(95년)

(단위: 개소, 명, %)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1,000인 이상	7	70,027	1,319	32	1.88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19	6,666	204	4	3.06
100인 미만	510	9,199	353	5	3.84
계	536	85,892	1,876	41	2.18

정부는 지난 4월에 '조선업종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97년까지 조선업종의 재해율을 1%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형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재정능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재정적·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

조선업종 산업재해율 1% 미만으로 저감

정부는 지난 4월에 '조선업종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97년까지 조선업종의 재해율을 1%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형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재정능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재정적·경제적 지원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직업병 예방활동의 전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형조선사의 자율안전보건 유도

우리나라 조선업은 선박수주물량이 90년 438만t에서 95년 713만t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공법도 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 등 중대재해 유발요인이 많은 대형설비 작업에 대한 공정상의 안전성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형조선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결과에 의해 공정별 안전·보건상의 조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근로자의 건강저해요인 등을 찾아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이 마련되면 사업장내에 勞使 同數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 계획은 시행되며, 장기적인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개선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와 사업장의 노조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합동으로 연 3회 이상 현장확인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체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시설 및 설비물의 안전과 작업환경상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반드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중소규모 영세 조선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지원

영세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안전관리비용과 보건관리비용을 오는 7월부터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상시 50인 미만의 영세 조선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대행해 주는 전문기관이 업체를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및 교육·상담 등을 하게 되며,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비용을 보조 받게 된다.

아울러, 현행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제도를 97년 1월부터 바꾸어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설비,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융자한도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이자율 역시 연 6%에서 5%로 낮추어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세 조선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활용, 안전시설 개선에 투자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형조선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업에만 시행하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 제도를 조선업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안전관리비제도가 조선업에 시행되면, 대형조선사의 하청협력업체는 공사계약시 원수급자로부터 공사금액



의 일정부분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안전시설비, 작업환경개선비,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력업체는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조선업의 특성상 다양한 공정이 혼재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주로 철판의 용접·절단, 연마, 도장 작업 공정 등에서 소음·분진 및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최근 일부 대형조선사에서는 유기용제에 의한 직업성질병 의심자가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선 조선업체의 유기용제 취급, 연마, 용접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직업성질병 자각증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20일까지 전국의 46개 지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14개 지도원에서 신청을 받아 임시 건강진단을 실

시하여 직업병 유소견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선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게 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문진표, 유해인자에 노출된 정도, 사업장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직업병유소견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조선업체의 해당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합동으로 정밀측정을 실시하고 소음·분진·유기용제 등의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시정조치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에 포함하여 개선해나가기로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조선업체의 근로자들이 그룹 산하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선업체가 밀집된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병원 등의 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추가지정토록 하며, 지정희망기관이 원할 경우 검진장비 구입, 시설비 등을 산재예방기금에서 우선 융자해 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상호 정보교류가 없어 사업장내의 작업환경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수검진기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부터 공정별·유해인자별 측정결과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명단 등을 통보받고, 측정기관은 특수검진기관으로부터 직업병 유소견자가 소속된 부서명을 통보받도록 제도화하여 측정 및 검진결과를 상호 연계토록 할 것이다.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精度管理 항목을 현행 유기용제와 중금속 검사 외에 청력검사와 진폐검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판정의 정확성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교육 강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불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이 결합되어 발생하고, 사업주는 수시로 불안정한 상태를 확인하여 개선하여야 하며, 근로자 역시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세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용과 보건관리비용을 오는 7월부터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상시 50인 미만의 영세 조선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대행해 주는 전문기관이 업체를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및 교육·상담 등을 하게 되며,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비용을 보조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하여금 97년에 외국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 안전보건활동 기법과 외국모형을 비교·조사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안전보건 관리모델과 직업병예방모델, 단위작업별 안전작업매뉴얼 등을 개발, 조선업체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할 것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노사관계자가 선진국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선진 조선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우리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외시찰 계획도 마련중에 있으며, 특수제작한 교육용 버스 2대를 확보, 조선업체를 순회하여 안전보건관계자·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재해예방교육을 실시기로 하였다.

한편, 조선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 1월에 발족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선업안전보건팀'의 인력을 현행 6명에서 금년 상반기 내에 보건 및 위생 분야 4명을 추가하여 총 10명으로 보강하고, 이들에게 전담 회사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기법 전수, 안전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술지도·지원을 강화하면서 조선업체 사업주 간담회, 재해예방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재해예방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수립한 '조선업중 산재예방 종합대책'은 조선업체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정부의 지도·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산재예방은 일차적으로 사업주가 인명존중의 경영이념 아래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자세로 노사가 공동노력할 때 큰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정부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96년 우리나라의 국가 총연구개발 관계예산 2조 3,796억원 중 약 3분의 1인 7,841억원 정도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투자되고 있고, 약 8,700명의 많은 연구인력이 모여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국회·언론계 등 사회지도급 인사

고,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전체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에 9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 개최된 제1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이공계 정부출연기관의 예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여 97년도부터는 전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사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도입 · 시행

들의 공통적인 인식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투자를 국가목표에 따라 사업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부터 경쟁에 의한 연구수주 능력의 확대 및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WTO체제 출범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고 97년으로 예정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뒤이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출연연구기관을 21세기 세계일류연구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요청된다.

올해부터 과학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에 전면적으로 시행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에서 연구개발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으며 국내 일부 연구소에서 적용하여 연구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roject Base System)를 95년 8월 협약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부터 우선 적용하였



강영철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장

업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우수 연구기관들도 이 체도를 도입 · 시행하고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미국 스탠포드연구소(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의 경우 3천여명의 연구원이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간접비용(O/H)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연구사업수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바텔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도 자유경쟁을 통한 계약연구제도를 도입하여 연구

팀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연구사업수주에 따라 기관 운영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Technology), 국립과학재단(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및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거의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기관들은 연구개발사업의 발주와 수주 및 기관운영에 있어 연구과제중심 운영체도에 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

초창기에 이 제도를 적용한 바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및 전자부품종합연구소가 본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기관운명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원자력발전계통 설계사업과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부문에 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는 연구사업비의 편성·배분·수주 및 사업관리 등을 연구과제 중심체제로 운영·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총연구원가제도, 연구책임자중심제도,

연구사업중심 기관경영제도가 가능하게 되어

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인력과 비용이 투명해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연구사업비의 편성·배분·수주 및 사업관리 등을 연구과제 중심체제로 운영·관리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연구사업비의 편성·배분·수주 및 사업관리 등을 연구과제 중심체제로 운영·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편성에 있어서는 총연구원가제도,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연구책임자중심제도,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연구사업중심 기

관경영제도가 가능하게 되어 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인력과 비용이 투명해지고 그 결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첫째로, 총연구원가(full cost)제도 측면은 연구과제에 소요되는 비용 즉, 인건비·재료비·기자재 구입비 등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관리지원비용 등 기관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간접경비 및 연구개발대가인 개발준비금 등을 연구과제의 원가로 환산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로,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중심제도 측면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편성권, 연구비(개별관리비목)의 사용권, 연구수행의 관리권, 인센티브 배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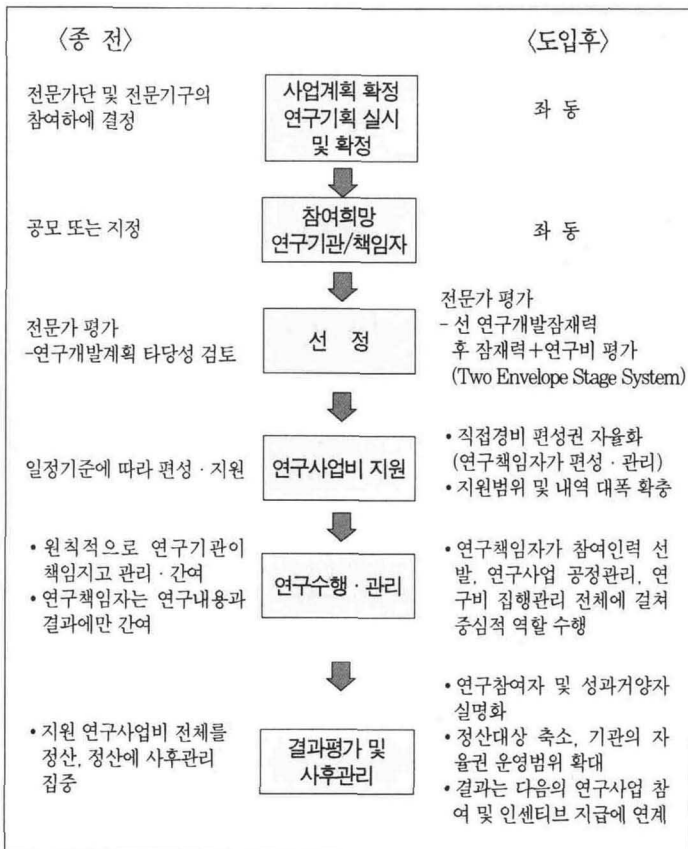
셋째로, 연구사업중심기관경영(Project Oriented Management)제도 측면은 종래의 실·부 단위로 운영되던 기관운영이 연구팀 중심으로 전환되어 연구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관운영을 연구사업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연구관리행정이 간소화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자율성 크게 신장돼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주는 종전과 같은 공모 또는 지정방식으로 하며, 사업선정은 종전의 1단계인 연구개발계획 타당성평가에서 연구개발 잠재력과 연구비를 평가하는 2단계 평가방식(Two Envelope Stage System)을 적용하고, 연구사업수행 및 연구비관리는 연구책임자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단계 평가방식은 1단계로 연구계획 및 연구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주·선정체제 변경



책임자의 우수성, 연구환경의 적정성 등 연구개발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2단계로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가중치를 주어 합산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적의 연구사업수행기관(연구책임자)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책임자에게 당해 사업에 참여할 연구원의 선발, 편성, 참여율 결정권, 외부인력의 위촉활용권, 개별 관리비목에 해당하는 연구비의 원인행위·관리 및 사용 총괄권, 연구관리비 범위내에서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인센티브배분 결정권, 연구과제 진행상의 진도관리, 과제평가 등의 해당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연구책임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연구비 원가구조를 종전의 10개 비목에서 6개 비목으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변경된 비목 중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일단 편성된 총액규모내에서 연구

책임자가 연구사업의 진행정도와 비용의 소요를 예측하여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비에 대한 발생이자 관리 및 집행잔액 파악(정산) 방법도 간소화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대폭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의 연구관리행정이 간소화되었으며,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아울러 연구기관운영 측면에서 종전의 정부출연금과 연구사업비로 이원화되어 지원되던 예산을 연구사업비로 일원화하였다. 즉,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연구기관 설립목적과 고유기능에 맞는 출연기관고유사업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고유사업 운영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연구개발대가 인정, 일부 비목의 연구비 잔액 사용 기관 일임과 발생이자의 활용 등 기관 중장기 발전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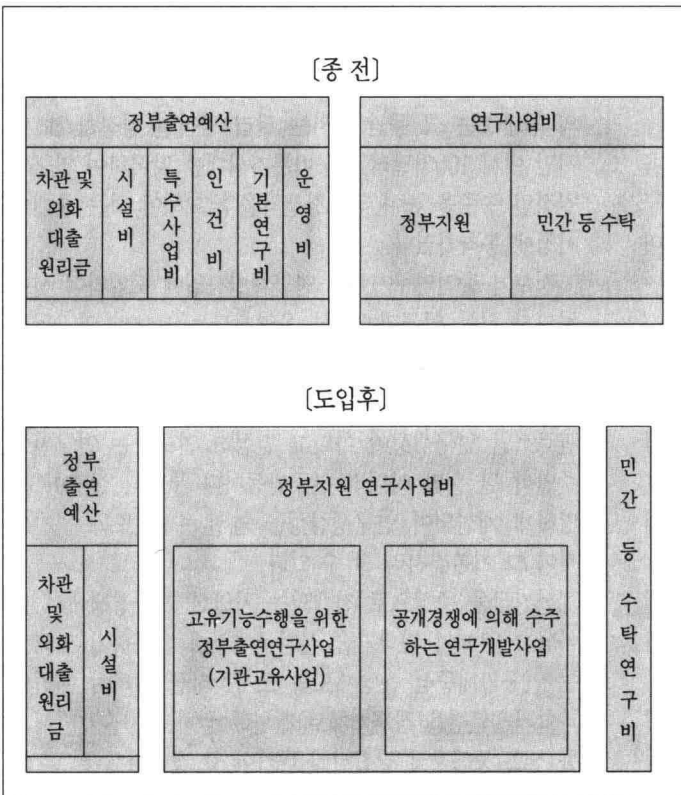
이와 함께 운영비 및 정T/O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 및 기타 인건비는 연구개발비로 이원화된 예산 조달구조와, 정T/O·가T/O·전일제별정직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 인력관리 등을 연구사업비에서 조달토록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며, 공개경쟁을 거친 우수한 연구주체가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우수한 연구성과가 거양되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선정, 그리고 집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누구이고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상·지원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성과 및 연구원의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훌륭한 연구성과를 많이 내고 연구사업을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이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소속 연구기관에서 우대받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진작까지도 가능토록 하여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운영체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출연기관 예산체제 변경



註: 정부지원 연구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직접경비 등 모든 소요경비를 각 사업별로 반영

정부에서는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기관고유사업, 간판연구사업, 추천연구원제도, 중소기업수탁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개발준비금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의 조기정착 위해 기관고유사업, 간판연구사업 등 보완대책을 마련

첫째로, 정부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비경쟁적 연구사업인 기관고유사업제도를 신설하여 기관 고유의 기능수행과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의 발굴·선정 등 연구수행 전반에 걸쳐 기관의 자율적 추진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둘째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류화·전문화 계획에 따라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판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지원하는 제도로서 1단계로 6개 간판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우선 지원하고 계속하여 추가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셋째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양하는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추천연구원 창의적 연구지원사업제도를 마련하여 95년도에 이미 20명을 선발하여 1인당 1억원씩 지원하는 바 있으며 96년도에도 30명 수준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로,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원기 상승효과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손쉽게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기술개발비의 50%를 대응자금(Matching Fund) 형태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탁기술개발 대응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다섯째로, 특정연구개발비에 연구개발이윤인 개발준비금(내부인건비의 25%)을 인정하여 연구원 개개인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선행·기초연구,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의 축적을 위한 회계틀로서 일시적으로 연구사업이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비의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연연구기관의 노후 기자재 및 시설의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96년에 172억원 지원하여 연구환경

정부에서는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기관 고유사업, 간판 연구사업, 추천연구원제도, 중소기업수탁사업에 대한 대응자금, 개발준비금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 세계는 WTO체제하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각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과학기술계에도 예외없이 몰아닥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 최대 연구소인 NRC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향후 3년간 15%의 인원 및 예산절감을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에너지성 산하 국립연구소 직원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독일 및 영국에서도 최근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정부지원 연구소들의 연구비투자 축소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소는 그 동안 이와는 달리 양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이제 100억달러 연구비투자시대를 맞이하여 연구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봉착하였다.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는 유능한 연구원들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자신의 책임하에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연구소의 관료적인 연구행정이 아니고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원이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마다 투입과 산출이 분명하게 계산되어 연구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취지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고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우리의 과학기술환경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기술개발체제를 창조 중심으로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남원**

「통계법」은 62년 1월 제정된 이후 동년 12월에 1차 개정되고 75년 12월에 2차 개정된 이후 그동안 법개정 없이 운용되어 오다가 95년에 3차 개정작업을 벌여 동년 12월 29일 「통계법」 개정안이 확정·공포되었다.

이번 「통계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정부의 행정

였다.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제도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통계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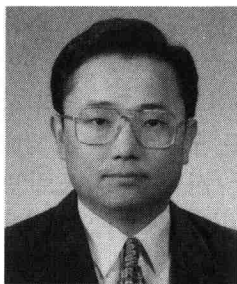
통계제도는 한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어

통계작성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법」 개정

규제완화시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통계의 신뢰도 및 時宜性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표협의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공표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舊法에는 작성사항 전부를 승인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술적인 사항에 한하여 그 협의만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통계간행물 사전발간승인 면제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국가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함으로써 통계관련법을 운용상의 혼란 예방과 국가통계활동의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통계자료의 공유기능 강화 및 對국민 통계정보서비스기능의 제고 차원에서 통계자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표준분류의 변조·유폐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통계발전을 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의 근거규정도 보완하였다.

셋째, 통계작성환경을 개선하도록 보완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통계작성 사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벌칙관련 내용을 현실화하



김상식
통계청 통계조정과장

떤 체계로 생산하느냐에 따라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집중형 통계제도는 모든 통계활동이 하나의 전문화된 통계작성기관에 집중되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모두 작성·공급토록 되어 있는 통계제도이다.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자체적으로 작성·이용하는 통계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통계

제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 아래에서는 통계활동의 중복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국민의 응답부담 가중, 통계지식과 작성경험이 부족한 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저질통계의 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연유하는 통계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새로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개발하여 통계의 수급을 균형시킬 뿐만 아니라 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 관련된 통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통계활동에 대한 종합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종합조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 바로 「통계법」이다.

결국 「통계법」의 목적은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연유하는 통계작성상의 문제점을 종합조정하고 통계작성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정통계는 국가나 地自體의 정책 수립 및 평가시 널리 활용

통계의 정의에는 일반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가 있다. '일정한 집단에서의 개개의 요소가 갖는 수치의 분포나 그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의 총체'는 일반적 정의라고 할 수 있고, 법률적 정의는 이와는 달리 위에서 언급한 통계적 속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정법적으로 「통계법」의 대상이 될 만한 실익과 관리가능성에 대한 고려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으로서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로서 통계작성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이나 타기관 또는 타업무 수행상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 의미의 통계는 정책결정에의 활용도·신뢰성·조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된다. 지정통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 기타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 전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도별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통계,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널리 활용가능한 통계,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이고, 일반통계는 승인통계 중 지정통계가 아닌 통계를 말한다.

지정통계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통계작성에 있어 「통계법」상 일반통계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地自體·지정기관만이 현행법상 통계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이라 함은 통계청이 승인한 국가의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서 통계의 작성·공표·활용

95년말 확정·공포된 개정 「통계법」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시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통계의 신뢰도 및 時宜性を 제고하고, 국가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통계작성환경을 개선·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등 통계활동의 전반에 관하여 「통계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관을 말하는데, 현행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정기관의 세 종류가 있다.

지정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업체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통계작성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 일정한 수준의 통계활동실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국가기관이 아닌 이러한 기관을 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통계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들 기관이 공공적 성격을 지닌 것은 물론 이들 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가 당해 분야의 국가정책형성 및 평가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보호의 입장에서 「통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계 작성시에는 통계청장의 사전승인 얻어야

「통계법」에서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이라 함은 통계활동의 전과정 즉, 협의의 통계작성, 통계결과의 공표,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서의 통계작성이란 통계작성의 기획, 조사기준시점 및 실시기간의 설정, 모집단 선정 및 표본추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등 통계자료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으로서의 협의의 통계작성을 의미한다.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長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편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거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8조에 의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작성근거가 있는 통계의 경우까지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조사대상 및 표본선정의 적합성, 조사방법의 타당성 등을 통계청장이 미리 검토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다른 법률에 작성근거가 있는 통계의 예로는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기본

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제70조에 의한 국민영양조사 등이 있다.

통계결과의 공표시 부담완화 위해 공표협의면제제도도 운용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통계결과에 대하여 공표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승인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작성된 통계가 작성기관 내부에서만 이용되는 것을 막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련자료와의 검토를 통해 당해 통계결과가 사회·경제적 현상의 일반적 추세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결과의 공표를 위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계표,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를 공표예정일 7일전까지,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과의 공표협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통계결과의 신속한 공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처리기간을 「통계법」 시행규칙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는데, 공표협의의 신청일부터 지정통계는 7일, 일반통계는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처리기간을 정하여 통계결과의 신속한 공표·활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모든 통계에 대하여 공표협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통계작성기관에도 부가적인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통계청장은 신뢰성이 높은 통계결과로서 신속한 공표를 요하거나 기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통계결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는 공표협의면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통계간행물 발간은 「통계법」에 의한 승인만으로 가능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 유사·중복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예방하고, 관련통계간 상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수록되는 각종 통계표양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또한 기존 통계자료의 인용·전재상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발간승인시 공보처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통

계청의 심의를 이중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나, 93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와 94년 2월 정부간행물조정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통계법」에 의한 발간승인만 거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통계간행물 발간과 관련된 절차를 완화하였다. 또한 승인을 얻은 통계간행물의 명칭·발간주기 또는 수록된 통계표의 2분의 1 이상을 변경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미리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통계청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간행물은, 내용의 구성상 통계결과의 수록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간행물로서 수록되는 통계결과의 양이 전체분량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간행물, 통계청장과의 공표협의를 거쳐(공표협약이 면제된 경우도 포함) 공표되는 통계결과를 최초로 수록·공표하는 간행물로서, 이 경우 백서 또는 업무편람·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 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되는 범위내에서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시 당해 통계자료의 보호 및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따라서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시 당해 통계자료의 보호 및 응답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따라서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포괄적 통계조정수단 마련

위에서 열거한 통계작성승인, 공표협의, 발간승인 등 구체적·개별적인 통계조정수단 이외에 통계청장은 통계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포괄적인 통계조정수단을 가지는데,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가 그것이다.

이는 개별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능동적 지위에서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균형있는 통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포괄적인 통계조정수단을 가지는데,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가 그것이다.

통계청은 「통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통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계작성사무의 개선 및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통계청은 특히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계의 작성승인·공표협의 등 구체적 조정수단과는 별개로 일반적·포괄적 조정수단을 「통계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이유는, 구체적 조정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작성승인이나 공표협의 등의 신청에 대해 통계청이 수동적 지위에서 개별적 통계의 정확성·합리성만을 검토하게 되어, 이 경우 통계제도 전체의 효율적 운영 및 필수적 통계의 신규개발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통계조정이 자칫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능동적 지위에서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균형있는 통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 공공채무급증 문제의 심각성과 교훈

강정호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을 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모든 주요선진국의 금년도 성장률이 95년 가을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내지 1.9%포인트 하향조정되었다. 특히, 유럽국가의 성장을 저조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성장률이 각각 1.0%, 1.3%이고 실업률은 10.5%, 11.7%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유럽국가의 저성장전망은 99년 1월 1일 유럽통화통합(EMU) 출범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유럽통화통합은 주요 경제지표의 수렴(Convergence Requirement of Maastricht Treaty)이 전제되고 있다. 재정·인플레이션·장기이자율·환율의 수렴기준이 제시되고, 이 중에서도 GDP 3% 이내의 재정적자, GDP 60% 이내의 정부채무 유지가 핵심기준이다.

95년도의 경우 EU 15개국 중에서 재정적자 기준 충족국가는 덴마크·아일랜드·룩셈부르크 3개국, 정부채

무 기준 충족국가는 독일·프랑스·영국·룩셈부르크 4개국에 불과하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이탈리아는 7.1%, 프랑스와 영국은 5.1%, 독일은 3.6%이며, 그리스는 9%에 이르고 있다.

96년 4월 G7경제차료회의에서도 고용창출과 성장문제가 경기변동적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재정적자 축소와 보다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거듭 약속하였다.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유럽경제의 문제의 밑바닥에는 구조적인 재정적자,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경직적인 노동시장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높은 사회보장세 및 최저임금제도는 고용비용을 높이고 비숙련 노동기회를 낮추는 한편, 높은 실업보험제도는 조기퇴직을 촉진하고 근로인센티브를 낮추는 등의 구조적인 '저성장·고실업' 문제의 根因이 되고 있다.

문제의 조기해결 전망이 어두운 것은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보듯이

사회복지개혁 시도가 바로 정치적·사회적인 소요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히 전통적 재정보수주의, 사적연금제도의 조기도입, 노동시장의 상대적 탄력성 유지, 개방적인 무역정책 등으로 고성장·저실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유럽 등 선진국의 문제는 경제성숙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세출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불균형문제 초래

80년과 95년 사이에 선진국의 평균공공채무는 GDP의 4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늘어났고, 그중 벨기에·이탈리아의 경우 각각 133%, 123%에 달하고 있다.

지난 150년간 선진국의 재정적자·정부채무 문제는 미국 남북전쟁, 세계제1차대전, 세계제2차대전 등 전쟁기간중에 야기된 적이 있었으나, 지난 15년간과 같이 비교적 평화가

유지된 기간에 눈덩이같이 불어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도한 정부채무는 채무이자상환 부담으로 정부의 생산적 지출기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실질이자율 상승, 민간자본 축적 지연으로 성장기회를 직접적으로 낮추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보다 심각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추세가 눈에 띄게 빨라져 연금 및 의료보장 부담이 늘어나 정부지출부담을 가중시켜 한마디로 엮힌 데 덮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재정불균형문제는 세입문제라기보다 세출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정부지출평균이 60년대에는 GDP의 25%이었으나 94년에는 50%에 이르렀다. 특히 스웨덴은 69%, 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는 55%에 달하였다.

세출증가요인을 보면 공공연금 등에 대한 이전지출, 보조금, 이자지급 증가가 주요 3대 요인이다. 60년에는 이전지출 및 보조금이 GDP의 8%이었으나 80년에는 17%, 92년에는 21%로 늘어났다. 프랑스·이탈리아·노르웨이·스웨덴의 경우 이 제는 GDP의 3분의 1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자지출도 70년 GDP의 1.5%에서 92년 4.25%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재정불균형이 심화된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연금 등 사회보장지출이 최초 입안시에는 빈곤자·장애자 등 특정불우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제도로 확대되어 수혜자가 급격

히 늘어난 데 있다. 일단 수혜대상이 되면 이익단체의 로비 등으로 수혜범위나 수혜내용 축소 등 제도개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실업보험은 구조적 실업을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양쪽에 작용 재정적자를 급증시킨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너그러운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인센티브를 줄여 경제참가인구를 줄이고 고령자부양 비율을 높이고 있다.

셋째, 70년 이후 생산성정체가 세입압박요인이 되었다.

넷째, 생산성증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이자율이 80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

다섯째, 종래에는 인플레이션과정에서 실질정부채무를 줄일 수 있었으나 투자자들의 민감성이 제고되어 인플레이션은 높아진 리스크프리미엄으로 반영되어 실질정부채무를 줄일 수가 없게 되었다.

여섯째, 73년 이후에는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자본 시장의 신장과 통합으로 인해 정부의 적자 예산 편성 및 대규모 공공부채 유지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선진국의 공공채무는 한계수준에 도달

이제 선진국의 공공채무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정적자가 정의 외부효과를 낳는 공공투자에 기인하거나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지출로서 장래의 생산성증가,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면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전소득, 보조금, 지급이자 등 소비성지출 증가에 연유하고 있다.

둘째, 공공채무의 유지가능성은 이자율·성장률·재정기초수지에 달려 있긴 하나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공공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선진국이 공공채무비율을 향후 15년 후인 2010년까지 1980년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지급이자율을 뺀 기초재정수지흑자를 95년도 기초재정수지기준 매년 3%포인트 내지 10%포인트의 추가흑자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셋째, 현행의 재정정책은 세대간의 형평부담문제를 야기한다. 미국의 예를 들면, 현행 지출정책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현행 퇴직자가 자기 소득의 20% 내지 3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현행 근로자는 30% 내지 35%를 납부하는 한편, 미래의 세대는 평생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연금 및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퇴직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노동참가인구는 줄어든다. 이러한 고령화추세는 미래의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연금·의료보험지출부담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어 소위 '보이지 않는 채무문제'(invisible debt problem)의 심각성이 높아진다. 1950년부터 90년도까지는 전후 베이비붐에 따른 노동력증가와 상대적으로 적은 퇴직자로 부양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고령자부양비율 즉, 65세

이상 인구가 15세부터 64세에 이르는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이 95년 20% 수준에서 2030년에 35%에서 50% 사이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또 2050년이 되면 독일·이탈리아·일본은 50% 내지 60%에 이르게 된다. 즉, 현재는 5명이 1명을 부양하나 그때 가면 2명이 1명을 부양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매월 내고 퇴직후 정해진 연금을 받는 제도(pay-as-you-go 또는 partially funded pension)이기 때문에 급격한 고령화추세는 연금기여와 연금수급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IMF의 추계에 의하면, 향후에 순지급하여야 할 공공연금채무가 미국·영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모두 현재 가치기준으로 GDP의 68%를 초과하고 있다. 즉, 이러한 純공공연금채무가 통상의 공공채무(visible public debt)를 능가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일본의 경우는 보다 심각하다.

여섯째, 이 상황도 퇴직자에 대한 향후 의료보장부담을 감안하면 더욱 악화된다.

경상적 재정적자와 장래의 공공연금채무에 동시적 대처가 필요

공공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재정적자와 장래의 공공연금채무, 이 두 가지 문제에 동시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매년도의 재정적자는 주로 세출삭감으로 해결하고 연금채무문제는 급여수준을 재정

건실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기여율이 높아 추가인상은 어려우므로 지급률을 낮추거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방법 또는 인플레이션 반영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각각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개혁방안이 될 것이다.

프랑스·독일·일본의 경우 매년 GDP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여야만 현행 공공연금채무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

공공채무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나 재정긴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다양한 이해집단의 존재,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 훼손·염려 등의 이유 때문에 재정긴축시도가 성공한 것은 예외적이었고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MF의 분석에 의하면, 70년도부터 95년까지 선진 20개국이 총 108번의 재정긴축시도를 하였고 이 중 18번만 그것도 세계경제호황기에 실시한 경우만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삼아 보수적인 정책기조 펴야

선진국의 재정적자문제는 선진국형 경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세입·세출행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프로세스이다. 민주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사회복지내용도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수혜범위의 포괄화·일반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단 제도화된 수혜는 기득권화되어 원상회복이나 개선 등 복지개혁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재정기조를 견지하여 왔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도 초창기에 있어 지금이라도 신중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본다. 경상적 의미의 재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정 양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보수적인 정책기조가 요구된다.

첫째, 재정적자의 문제는 단순히 일반회계나 중앙정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여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건전성을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재정수지 차원에서의 통계유지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통계는 단년도의 결산수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까지 확대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록 초기에는 전망치의 오차가 크다 하더라도 재정제도의 종합적 투명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여 장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둘째, 경기조절적 재정운용요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긴축은 총수요감소를 통해 총산출에 대한 負의 효과가 크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하에서는 대외요인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경기변동 예측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이 미치는 경

기효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재정긴축은 이자율을 낮추며 실질자산가치 상승효과가 있어 정부지출 감소에 따르는 케인지언 효과가 조기에 상쇄될 수가 있다. 특히 건전재정 유지로 정부정책과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면 이 신뢰는 바로 여타 정책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또 재정긴축은 소비자·투자자 모두에게 미래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소득을 높이며 장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부투자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유발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주로 호황기에 재정부문에서 보다 많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금융부문의 긴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축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기호황, 불황의 폭과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황기에 지나친 긴축을 주장하는 것은 불황기에 지출증대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경제구조하에서는 경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균형예산을 고수하는 것이 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한년도의 균형보다는 다년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년간 균형논리는 특정연도의 적자예산편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일단 적자예산

에 익숙해지면 다년간의 적자예산 내지는 적자누증에도 불감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그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세출예산 책정기능과 세수확보 기능 중심이었는데, 예산집행 및 국고지출과 관련 국고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 재무성의 경우 채무관리·세입금관리가 여러 중요한 기능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곱째, 재정관리의 전산화가 중요할 것이다. 매년도의 결산기능보다는 장기전망, 지출통제기능,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화는 불가결한 요소이다.

여덟째,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재정의 투명성이 다시 강조될 수 있다. 투명성의 확보는 모든 단계의 정부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비예산 기금이나 우발적 채무행위 모두 회계에 포함되어야 하고, 조세감면행위나 가격지원 보조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출항목 자체가 정연하여 연도별·성질별 비교가 용이하여야 한다. 최근 투명성의 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과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 뉴질랜드는 85~92년 기간중 재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제고를 정부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홉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 향상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장기복지개선 계획을 마련, 국민연금·産災보험·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향후 20년간 점진적

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수혜범위의 확대는 그동안의 성장과실을 세대간·소득계층간·산업부문간 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나 장기적인 예컨대, 30년 내지 50년간의 수입·지출 분석으로 적자가 누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용범위·지급률 등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열째, '선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는 수지분석 외에 적용범위가 최초의 특정화된 범위에서 쉽게 확대되는 경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진국의 함정은 곧 높은 실업수당이 비용·소득 양면으로 모두 작용, 고용기회가 줄 뿐만 아니라 취업의욕도 줄어드는 정말 경계해야 할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저소득층·장애자·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로 이를 좁게 운용하여 정부의 부담으로 하되 여타 연금 등은 기여금의 총액만큼을 되돌려 주는 방식(fully funded pension)으로 민간 주도로 운용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정부가 복지에 무한정의 책임을 지는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를 더치병(Dutch Disease)으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후생제도가 발달된 독일·이탈리아·북유럽국가는 모두 고실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증가에 따르는 세후한계수입이 1인 경우 어떻게 근로확대와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부의 증진에 따른 후생비용 확충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폐해를 미리 생각하여 보수적

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열한째, 정치민주화 과정의 한 특 징은 이해집단 특히 소수의 강한 신 념을 가진 그룹의 목소리가 국가 전 체나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압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정부세 출과 관련 선진국이 될수록 다양성 이 존중되면서 이러한 '민주주의 딜 레마'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열두째, 직업공무원제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정책의 지속 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첩경 이 된다. 그동안의 정치구조하에서 는 정치와 경제행정 간에 간격을 유 지할 수 있었으나 민주화가 진전될 수록 특정 유권자 위주의 정책수용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인은 지역구의 이해 를 대변하려고 할 것이므로 재정부 문에서 정치개입의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의 강화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일부 선진국의 예를 보 면, 연립내각체제의 경우 소속당의 이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 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해 집단의 대변인으로 비추어지는 경위 가 있다. 특히 스웨덴·이탈리아 등 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공공채무와 과도한 복지제도는 이들 국가의 불 안정한 연립내각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열셋째, OECD 가입에 따라 자본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다. 자본 의 유출입이 제한된 때보다 금융시 장 참가자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가 보다 중요한 변수가 된다.

94년, 95년의 멕시코·브라질·아 르헨티나의 위기경험도 정부정책의 신뢰상실로 자본유출이 견잡을 수 없게 된 데 원인이 있다. 건전재정은 과도하게 해외자본에 의존하게 될 위험 자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의 신축성을 부여 자본유입 급증시 경기과열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열넷째, 향후의 '보이지 않는' 정부채무누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노령연금제도는 사 적연금제도에 주로 의존하고 공적연 금제도는 최소범위로 국한하여야 한 다. 민간연금제도의 성공은 재정의 장기건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저축증진효과도 크므로 조세체계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제상의 인센티브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열다섯째, 일시적인 적자누증이 있는 경우 재정긴축이 바로 경기후 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 장과 공공부채 축소와는 선순환의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 여야 한다. 특히 경기순환적 요인보 다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경기퇴조의 경우 조기의 재정긴축이 필요하다. 또 재정긴축은 세입확대보다는 세출 감소에 주력하여야 하며 지난 15년 간의 선진국의 세출증대에 따른 적 자누증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 준다.

열여섯째, 재정부문에서도 머지않 은 통일에 대비하여야 한다. 독일통 일시 고민 중의 하나가 최고수준의 서독복지제도를 그대로 동독 주민에 게 적용하여야 하는가였다.

우리의 복지제도가 장기적인 능력 보다도 당장의 형평수요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해진다면, 또 복지제도 는 한번 정해지면 하향조정이 대단 히 어렵다는 선진국의 역사적인 경 험을 감안한다면 견잡을 수 없는 '보 이지 않는' 공공채무의 늪에 빠질 위 험이 크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의 경험은 후발 주자인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生老 病死는 진리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먼 장래의 문제가 아닌 향후 20~30 년의 문제이다. 선진국의 딜레마는 선진국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서있 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정환**

손길은 봉사위해

발길은 개혁향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이장영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세 계 통화질서의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회원국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활동(surveillance)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그 활동의 초점을 각국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에 맞추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멕시코의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95년 초반부터 IMF의 실질적 정책결정기구인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에서 검토되어 온 것인데, 최근 일본·브라질 등의 은행부실화 사태 이후에 더욱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열린 IMF이사회에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금융 감독강화 노력에 IMF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책결정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가 생기게 된 배경과 그것이 금융자유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살펴보

기로 한다.

은행산업 취약시 심각한 경제적 비용 초래

취약한 은행산업이 어떤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가는 80년대말에 발생한 北유럽국가의 금융위기 등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IMF가 최근 은행산업의 건전성 저하에 대해 유달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세계 각국에서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은행들이 域外금융활동(offshore activities) 등 생소한 업무 분야에 참여하는 정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비례하여 외환위험·금리위험 등 여러 가지 거래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도 현저히 높아졌다.

은행의 감독기준에 관한 국제적 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가 95년말에 기존의 자본금 의무비율 규제를 수정

하여 환율변동 등 여러 가지 시장위험까지도 고려한 새로운 규제를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범세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금융혁신과정은 다양한 新금융상품의 출현을 초래함으로써 은행들이 오히려 금융당국의 공식적 감독규제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5년 초반 멕시코 은행들이 당국이 부과한 외환포지션(foreign exchange position)규제를 다양한 파생적 금융상품(예:structured notes)을 통해 대부분 회피함으로써 외환위험에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러시아 등 舊소련국가의 경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행산업의 취약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각국의 거시경제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최근 더욱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시스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된 경우 긴축적 통화정책과 같은 안정화 정책의 수행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부실은행을 규제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경우 정부적자의 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舊소련국가뿐 아니라 상업은행의 정부소유 지분이 높은 開途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은행의 민영화가 훨씬 더 진전된 국가에서도 문제은행의 처리비용 중 상당부분을 중앙은행이 떠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중앙은행이 재정에 넘기는 이윤폭을 그만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에 미치는 효과가 숨어있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각국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IMF가 회원국과의 정책협의시 은행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상기한 국가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향후 자본자유화와 금융 부문의 규제완화가 진전되면서 심각한 은행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IMF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차입이 용이해진 일부 開途國—이를 시장차입자(market borrowers)라고 하며, 약 22개 국가가 있음—에서 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는 급증하는 자본유입에 따라 은행시스템 내부의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거시경제적 정책대응이 마련되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감독체계도 적절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자산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과도한 부채 부담에 따라 부실화의 위험이 급속히 높아진다.

사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국제자본시장 참여로 새롭게 늘어난 대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興信審査기법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거시경제의 안정이 수반되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자유화에 따라 자산가격의 투기적 상승현상—소위 버블(bubbles)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은행의 경영활동은 자칫 상승하는 자산가격만 의존하여 방만해지기 쉽다.

예방적 금융감독규제 강화

건전한 은행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예방적 금융감독규제(prudential regulation)를 강화하는 데에는 국제결제은행(BIS)과 같은 국제기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G10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자로 구성된 바알 위원회는 국제적인 은행들에 대한 통합된 감독기준과 최소자본금의 준비의무 그리고 기타 파생적 금융상품에 관한 규제기준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은행들이 경기침체 등 주기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이길 수 있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금의 비율을 은행의 危險加重자산에 대비 8% 이상 책정할 것을 규정한 자본비율 규약이나, 은행의 외환위험노출을 계산하는 표준방식 등은 그 대표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IMF는 BIS에 의한 이러한 일률적 감독규제에 대해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일부 규정

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최근 일본의 은행부실화 사례에서와 같이 심각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현행의 최소자본금과 같은 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G10이 아닌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의 변동성이 선진국보다 훨씬 심할 뿐 아니라 은행회계나 자산평가의 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미달한 상태에 있으므로 보다 높은 자기자본 비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체계는 각국의 금융시장의 성숙정도에 비례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동 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IMF의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91년의 BCCI은행 부도 사건, 95년의 Meredian은행 부실화 등은 금융감독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조화가 부족해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금융 분야에서의 IMF 역할 한층 커질 듯

향후 금융 분야의 국제적 규제자로서 IMF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특정한 감독적 문제점에 대해 정책권고만 할 수 있는 BIS와는 달리, IMF는 각 회원국과의 조건부 대출과정을 통해 유효한 감독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체계나 회계기준과 같은 제도적 기반까지 갖추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많은 감시·감독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문제시될

가능성이 큰 국가는 조기에 포착하여 잘못된 경제정책을 교정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경우 IMF가 최종적 대출자로 역할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IMF가 금융감독제도의 발전에 계속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많은 회원국에게 통화정책의 기본틀을 이룬바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를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간 통화관리의 간접규제방식 전환을 금융자유화의 핵심요소로 보고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완전 자유화,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이 부실자산 부담 때문에 취약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리 자유화의 조기추진 자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은행이 금리 등 정책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자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부실화 예방 위해 금융감독 규제체계 마련 시급

이러한 논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향후 금융 부문의 규제완화와 자본자유화의 추진과정에 서 국내금융산업의 건전성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다. 물론 금융자유화 이후 은행의 경영목표가 보다 이윤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 부문의 규제완화나 민영화 자체가 은행의 건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험한 활동의 수행 이외에도 은행의 소유주나 그 관련인사에 대한 내부자 대출이 성행될 소지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도 은행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이 증권회사 등과 경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금융 부문의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만,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적절한 감독규제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기관과의 거래자체가 은행의 자산구조까지 부실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부실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 감독 규제체계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원**

경제상식

· 매칭펀드

매칭펀드(Matching Fund)란 말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재정 부문에서의 매칭펀드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이들의 자구노력과 연계시켜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무조건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매칭펀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를 강화할 수 있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난 93년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금융 부문에서는 혼합기금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투신사에서는 내·외국인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투자기금으로 국내외 증권에 동시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매칭펀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되 일정 기간 동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단위형으로 국내증권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증권투자를 병행함으로써 국내 통화증발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90년 3월부터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매칭펀드의 결정 및 운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경영학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기업이 공동출자할 때 즉, 공동자금출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세계화의 허상

이 훈

매일경제TV 기자/통상산업부

요

즘 영어학원이 제철을 만났다. 신문지상에 학습용 영어테이프 광고가 매일 한귀 통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어테이프도 장사가 되긴 되는 모양이다.

시내 영어학원이나 영어 학습교재 사는 물론이고 동네 영세 영어학원도 꽤 돈벌이가 되는 것 같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초등학생을 실어나르는 어린이 영어교실 차들로 북새통이다.

젊은 대학생들의 휴학은 요즘 흔한 일이 됐다고 한다. 과거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쉬어야만 했던 가슴 아픈 기억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요즘은 돈 있는 대학생이 외국어 연수를 가기 위해 학교를 쏜다고 하니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쉽게 취직을 하지 못한 일부 대학생들은 해외연수를 보내주지 못한 능력 없는(?) 부모를 탓하기도 한다.

이런 정도라면 온 나라가 '영어교육병'에 걸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세계화의 열병이라고나 할까.

국내 기업들은 세계화를 외치면서 저마다 영어 점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영어를 못하

는 간부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업포도 놓고 있다.

나이 든 간부는 마치 기업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취직시험에서 아예 공인된 기관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고민이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영어가 포함될 예정이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3학년 담임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선생들이 모여 스터디그룹을 결성하고 학원에도 다닌다는 소식이다. 나이 든 교사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발음교정이 안돼 아예 담임을 맡지도 못할 형편이다.

외국어 구사능력은 이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적인 잣대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가 곧 영어구사 능력의 배양이란 등식 아래서는 이 같은 열병이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잘못 전파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일부 기업이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가 세계

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그래서 그 기업은 다른 국내 기업들과는 달리 입사 시험에 한문과목을 채택했다. 우리의 문화적 기반을 무시하고는 세계화도 있을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여서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됐다.

정부가 지난해 '무역의 날'에 내건 표어도 '세계로 문화로 기술로'였다. 수출 1천억달러를 기념하는 '무역의 날' 행사에서 정부가 이 같은 표어를 내걸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양적 팽창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와 기술적 기반 없이는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표어였다.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문화도 기술도 없는 국가를 세계 속에서 아무리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봐야 세계화된 나라라고 이해해 줄 리 없다. 외국어는 세계화의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영어교육 열풍은 경쟁사회에서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이 '세계화'라는 허울을 쓰고 있을 뿐이다. **남원**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과제

이희상

CBS 기자/정보통신부

정

부는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사업허가 신청서 접수를 마쳤다.

접수 마감 결과 모두 7개 사업 분야에 53개 컨소시엄이 허가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중심이 된 '그린텔' 컨소시엄의 경우 1만4,29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하는 등 이번 신규통신사업허가 신청에 참여한 업체가 3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그야말로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체는 거의 모두가 출사표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통신사업 분야에 대한 재계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재계가 통신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2000년대초가 되면 국내 통신시장만도 20조원이 예상되는 등 엄청난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통신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시장의 발전은 국내보다도 국제적인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고 그 바람이 국내로 불어닥치고 있는 형상이다. 때문에 통신은 이제 과거와 같이 국가가 독점하거나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 그래 가지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우리의 통신주권마저도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줄이고 민간의 활력을 통신 분야에 끌어들여 업체간에 경쟁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 분야의 산업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이 같은 상황변화로 그동안 국가의 보호 아래 태평성대를 구가해 온 한국통신이나 거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일부 통신사업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하루바삐 국제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사업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통신사업자와 함께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될 신규통신사업자들이 얼마나 국제경쟁력을 갖추느냐 하는 문제는 곧바로 우리의 통신주권 수호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세계 53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오는 98년 1월부터 각국의 통신시장을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에도 외국사업자의 진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서둘러 95년 연말 안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치고 나서, 정치권의 압력과 업체들의 치열한 로비 때문에 사업

자 선정계획을 연기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허가 신청서 접수 시기를 15대총선이 끝나는 시점인 4월 15일로 연기했다. 이것은 통신사업자 선정 문제가 정치권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의 고민이 어떠한지를 한눈에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이 국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상황과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에 휘말려 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다.

앞으로 1년 6개월 후면 우리의 통신시장을 노리는 외국통신사업자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된다. 통신시장 개방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통신주권을 지키느냐 외국업체에게 빼앗기느냐 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신규통신사업자를 올바르게 선정토록 하기 위해 정치권과 기업체는 이권을 노린 압력과 로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국익과 통신주권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남광재**

‘아전인수’와 ‘동상이몽’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기자/노동부

지난 4월 24일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新노사관계 구상」에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불신과 갈등의 얼룩이 곳곳에 묻어 있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및 제도와 관행, 의식과 문화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현행 집단적·대립적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계, 개별적 노사관계는 경영계의 향후 운신과 이해관계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로 요약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현행 노동운동의 양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기업의 고용구조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화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작업에 21세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력운용시스템과 노동운

동, 정부의 고용 및 노동정책의 방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앞으로 노사관계를 최소한 20년 이상 지배하는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新노사관계 구상」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는 벌써부터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개혁의 대상은 ‘우리 쪽’이 아니라는 ‘아전인수’와 이번 기회에 ‘상대편’을 무력화시켜야겠다는 ‘동상이몽’이 배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는 그동안 노동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던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의 공식화, 정리해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챙겨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근로조건악화를 초래하는 일체의 제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과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계 양대산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근로조건악화를 가져오

는 노동법 개정은 ‘改惡’에 지나지 않는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개혁작업은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안들이 대부분인 만큼 ‘대타협’은 지난한 경로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개혁작업의 전망을 상당히 비관하는 의견들도 있다. 진실로 개혁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이전 투구의 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노사관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처음으로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상호불신과 대립적 마인드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그 또한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합직하다.

결국 이번 개혁작업의 성패는 21세기 한국사회를 위한 共同善이 무엇이나에 대해 각계 각층을 망라한 범국민적인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필**

엔貨 약세 이후 日本 수출 동향

정은미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지난해 日本의 貿易黒字가 5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작년에 1,071억달러를 기록, 재작년에 비해 11.4%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대폭적인 무역흑자 감소는 엔高에 따른 순수입 증가 및 해외진출 일본 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역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수입규모는 3,359억달러로 90년과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수입증가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수출 역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은 4,430억달러로 재작년에 비해 12% 증가했는데, 수출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한 것은 90년대 들어 처음이다. 이러한 수출증가는 지난해 상반기에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엔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및 해외생산 진전에 따른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엔高가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일본의 수출이 여전히 건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물량지수는 재작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엔화의 가치변동이 수출금액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수출물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엔高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경쟁력을 배경으로 일본의 수출시장이 별로 위축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출구조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지난해 이루어진 일본의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저부가가치 제품 및 완제품의 수출이 줄어드는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 및 자본재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구조 고도화 추세는 비단 작년뿐만 아니라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일본의 산업구조 조정 및 해외생산거점 이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석유화학 제품 및 종이제품, 반도체 및 관련부품 등이 물량기준으로 재작년에 비해 20~40%가 증가하였으며, 뒤를 이어 자동차부품·사무용기기·공작기계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및 전자부품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이루어진 수출이 금액기준으로는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엔화가 약세로 반전된 이후 수출 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전기제품은 저제품 및 완제품의 해외생산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고급제품·첨단기술 제품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엔화약세 후 수출채산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산업용 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및 일반기계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밀기계·공작기계 등은 해외진출 일본기업들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특히 자본재 및 생산설비 등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 일본이 자본재 무역에서 얻은 흑자만도 2천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재 흑자 규모는 지난 90년에 비해 60%나 증가한 것으로, 일본은 자본재 공급기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가공조립제품으로 해외생산에 의한 수입이 본격화된 통신기기·영상기기 등의 수출물량은 재작년과 비교할 때 30~40%나 감소하였다. 또한 해외생산이 완성차 수출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자동차의 수출도 물량기준으로 볼 때 재작년에 비해 15%나 줄어드는 등 이전에는 주력 수출산업이었던 자동차·가전 등 내구소비재의 수출 감소 추세는 계속 진행되었다.

한편 超엔고가 진행되던 지난해 상반기 수주량이 전년동기 대비 43%나 감소했던 일본의 조선 부문은 4/4분기에 다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총 수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엔화 환율이 1달러당 85엔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선박수출 가격경쟁력 격차가 20%에 이르지만 105엔대에 이르면 거의 없다고 분석되고 있고, 올해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치고 수주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듯이 조선수출도 국제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對아시아 수출이 對선진국 수출을 상회

일본의 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80년대초부터 지속되어 온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권에 대한 수출 증가 및 선진국에 대한 수출 감소 내지 정체 추세가 최근에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개도권 중에서도 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지난 5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을 합한 금액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의 對아시아 수출은 1,841억 달러로 EU와 미국에 대한 수출 합계액 1,759억달러보다 82억달러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의 비중도 41.6%로 늘어났다.

이러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흑자는 재작년과 비교하여 14.9% 증가한 707억5천만달러를 기록, 역시 미국과 EU에 대한 무역흑자 합계액 670억달러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엔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은 이미 수출가격 인하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2/4분기 수출 환율도 105~106엔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엔화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세계수출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수출증가는 일본기업들이 경쟁력 향상 및 수출시장 현지전략에 따라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지역으로 생산거점을 대거 이전하면서 금속가공기계, 반도체 전자부품 등의 자본재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EU지역에 대한 지난해 일본의 수출은 재작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對美 수출은 최근 수년간의 수출부진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전년비 6.7% 감소한 데 영

향을 받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말부터 엔화약세에 의한 수출증가 효과 가시화

일본의 수출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던 '超엔高'가 지난해 4월 중반 이후 약세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수출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엔화약세로의 반전에도 불구하고 작년 3/4분기까지 일본의 수출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지 못했다.

엔화약세가 일본의 수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시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수출환율 결정방식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지난 9월 당시 엔화가치는 104엔대까지 떨어졌으나 수출기업들의 환율은 이미 85~90엔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라는, 엔화약세로의 반전에 따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의 수출은 2개월 연속 늘어났으며, 올 1월의 수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엔화약세에 의한 수출증가 효과가 다소나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에는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엔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은 이미 수출가격 인하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수출기업들은 엔화약세를 배경으로 엔고시기에 인상했던 수출가격을 다시 낮춘 바 있으며, 올해 2/4분기 수출 환율도 105~106엔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엔화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세계수출시장에서 일본상품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일본기업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기업이익을 배경으로 수출가격을 인하한다면 수출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일본수출상품의 높은 비가격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80년대 후반부터 엔고 진행 및 국제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거나 저급한 품목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 및 고급품 개발을 위해 노력, 환율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만이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개발해 왔다. 또한 수출품목에서도 가격에 민감한 섬유·금속과 같은 단순소비재 대신 첨단·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비중을 늘리는 등 제품차별화를 추진해 왔다.

해외생산 증가가 수출 증가를 제약

반면, 일본의 수출이 엔화약세라는 요인만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올해에는

해외시장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일본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해외생산 확대에 의한 수출감소 효과가 이미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계속 진행된 엔고로 일본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추진해 왔다. 자동차·가전제품·전기기계 등의 수출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단순히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 근접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표하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국 입장에서 수출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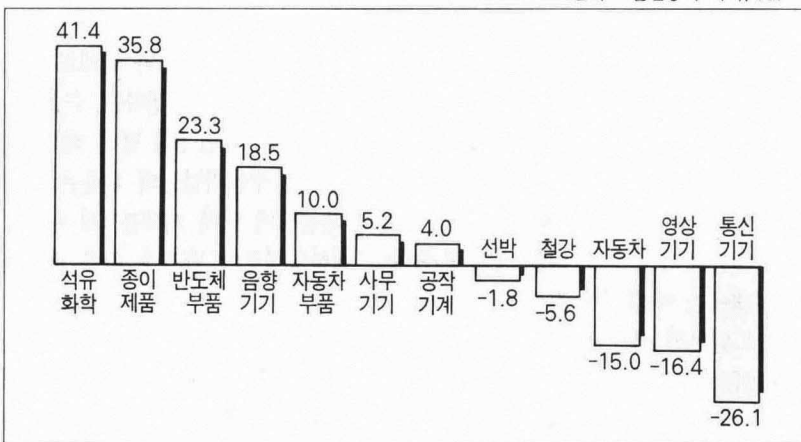
이를 반영하여 지난해 일본기업들에 의한 해외생산액이 일본의 수출액을 처음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일본기업들의 매출액은 엔고경향이 뚜렷해진 93년부터 급속히 늘어났는데,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생산액은 불과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은 이전의 조립·가공단계를 넘어 최근에는 해외에서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온 반도체 제조장치 등 기술집약적 부문까지 이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핵심적인 경영 및 기획업무의 이전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작년 3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업종의 해외 생산비율은 자동차가 33.5%, 기계30%, 전기 26%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가전업계 중 소니의 해외생산비율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이미 바꿀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엔화약세 후 다소 주춤하기는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엔화 가치의 변동과는 관련없이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생산을 계속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해외진출 확대 움직임을 반영하듯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재작년의 14%에서 작년에 33%로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한경**

〈그림〉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95년 1~11월)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註 : 물량 기준임.

자료 : 외국무역개황, 일본관세협회

WTO체제하의 농업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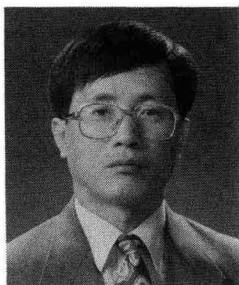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을 중심으로

농업도 경제의 한 분야이고 그런 면에서 농업정책도 경제정책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경제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있고, 한편으로는 투자와 저축이 있다. 또한 해외 부문이 있으며 시장경제에 완전히 맡겨 놓을 수 없는 분야에는 정부가 간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은 물론 해외 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농업은 다른 경제 분야와는 달리 모든 활동의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찾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고려가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정책대안의 선택이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환경에 관계없이 국민총생산·통화량·물가·수출입 등을 표적변수로 총수요와 총공급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농업정책을 보면 각국별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통적인 요소보다는 서로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 EU의 정책, 일본의 정책이 다 다르고 우리의 정책은 우리나라대로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농업은 경제의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경제외적인 요소도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역에 있어서도, 농업은 GATT체제하에서는 예외로 취급되어 관세의 인하나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논의할 때



배종하/ 농림수산부 통상협력과장

에도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교역자유화의 대상이 되고, 새로 만들어진 농업협정에 따르면 무역왜곡의 원인이 되는 국내의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감축해 나가는 원칙이 만들어져 각국의 농업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줄여 나가도록 하여 당장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쌀 수매량을 늘리거나 수매가격을 높

일 수 없는 벽에 부딪치고 있다.

농업이 국제화되어 가는 경향에 따라 주요 국가들도 농업정책의 방향을 WTO체제에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EU는 이미 UR협상이 진행중인 92년에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추가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도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운 「농업법」에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정책변화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여기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개관해 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미국은 새 「농업법」 제정으로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

미국의 「농업법」은 대개 4.5년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데 여기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정책이 망라되어 있다. 법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농업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의 정책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미국의 농무부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농업법」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농업법」에 다 있어 농무부가 해야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정책 분야마다 상황에 따라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것이 사실이다.

90년에 만들어진 「농업법」이 95년말로 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농업법」이 작년말부터 논의되었으며 지난 4월 4

일 클린턴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적용될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이 통과되었다.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96년부터 적용될 「농업법」이라면 95년말에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번 「농업법」은 2002년까지 재정적자를 없앤다는 균형예산안과 연계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입법이 늦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된 「농업법」은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향후 다른 국가의 농업정책이나 농산물의 국제교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95년까지 직접 지원방식인 가격지지제도를 유지

지금까지 미국의 농업정책의 특징은 한마디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농업정책은 쌀 수매와 같이 농민의 소득에 직접 보탬이 되는 정책도 있으나 나머지 정책은 가격을 지지해 주기보다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에 투하되는 자본을 지원하며,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간접지

원 방식을 택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생산시설·투입재·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거의 全無하고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안정 장치가 농민에 대한 지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격지지정책은 1930년대 초반부터 해온 정책으로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인데, 주요 작물에 대해서 지지가격인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때에는 정부가 시장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액을 보조하여 농민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가격지지는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목표가격과 용자가격이라는

두 가지 가격을 설정하여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는 낮으나 용자가격보다 높을 때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장가격이 아주 낮아져 용자가격보다도 낮아질 때는 농민은 목표가격과 용자가격의 차이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생산물을 담보로 용자가격만큼의 용자를 받는다. 만약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시장가격이 다시 용자가격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농민은 현물을 시장에 팔아 용자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도 시장가격이 용자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용자대신 현물로 상환하면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농민들은 최소한 목표가격만큼은 가격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농민은 가격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재배면적이 정해지고 지정된 작목만 심어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일부면적 휴경 등 정부가 내세우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지지 방식은 농민의 위험부담을 없애주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80년대 초·중반 국제곡물시장의 과잉공급과 달러화의 강세 등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가격지지만으로 지출한 보조금이 연간 200억달러 이상이었으며 이는 농가당 1만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

미국은 새로운 「농업법」 제정으로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가격지지 대신 올해부터 농민들에게 생산과 관계없이 일정한 고정보조금을 매년 직접 지불하게 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국제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지지제도가 새로운 「농업법」에서는 전면 개편되어 목표가격제도가 없어지고 그 대신 농민들에게 심고 싶은 작목을 마음대로 심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가격지지 대신 농민들에게는 생산과 관계없이 일정한 고정보조금을 매년 직접 지불한다. 이는 60년 동안 지속해 온 가격지지제도의 틀을 고친 것으로 획기적인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국제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보조금의 규모는 앞으로 7년간 360억달러로 매년 농가당 평균 약 2,500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과거 가격지지를 해줄 때보다는 줄어든 규모이고 보조금의 규모도 연차적으로 줄여가도록 하였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농민들에게 진정한 영농의 자유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제 농민은 더 이상 정부를 위해 농사짓지 않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농사를 짓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처럼 국제곡물가격이 높으면 문제가 없으나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가격지지 없이는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떨어져 소득안정장치가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클린턴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내년에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전례로 보아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클린턴대통령은 법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영농철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 또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



당인 점을 감안 법안에 서명하였다.

농업환경의 변화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배경

당초 새로운 「농업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처럼 가격지지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혁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생산과 관련 없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이다. 94년경부터 국제곡물가격은 전 세계적인 가뭄과 일부 국가의 휴경을 통한 생산조정 등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 결과 목표가격보다 낮은 시장가격이 최근에는 목표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농민들은 가격지지 보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의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가격에 관계 없이 줄 수 있는 고정보조금을 만든 것이며, 농민들도 보조금을 한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보조금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여 새로운 법안을 찬성하고 있다.

둘째, WTO협정의 의무이행이다. 가격지지제도를 없애고 고정액을 보조할 경우 이는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어 WTO협정상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임으로 미국은 사실상 감축대상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지게 됨으로써 향후 차기 다자간협상에서 다른 국가에게 감축대상 보조금을 과감하게 철폐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셋째,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행정부의 예산감축 노력과도 일치한다.

가격지지제도하에서는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액이 변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그 규모도 컸으나, 고정보조금제도는 재정지출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줄여 나감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예산 달성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생산에 정부의 간섭을 없앴으로써 농민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 가격지지제도는 소득안정효과에 있으나 재배면적을 제한하고 작목을 지정하며 이를 관리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특히, 가격지지제도하에서는 농민들이 정부의 지지정책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생산결정을 농민들이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이 있었다.

미국의 보조금감축 요구에 대비한 정책대안 마련 시급

이처럼 생산이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질 경우, 농민들은 가격변화에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므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생산은 늘어날 것이다. 물론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가격변화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휴경면적이 줄

어들어 생산이 늘어날 것이며 곡물가격의 상승추세도 다소 누그러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감축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WTO 이행 계획 이상으로 감축하게 되며, 이를 빌미로 다른 국가들에게도 보조금을 앞당겨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음 다자간협상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우리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때 우리도 정책 전환을 할 필요는 없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거론되는 것이 쌀 수매제도로 이미 WTO 이행 계획에 2004년까지 쌀 수매에 대한 정부보조를 일정 비율만큼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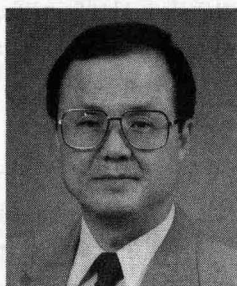
쌀은 우리의 주식인 만큼 절대로 수입에 의존할 수 없는 품목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매가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쌀 생산의 타산성이 떨어져 생산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여러 가지 정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현행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이나 현대적 도정시설과 같이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해 주는 간접지원방식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U·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이미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번 새로운 「농업법」에서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아직 우리와 같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농업인에게 과연 흡족한 수준의 소득안정을 가져다 줄 만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하겠다. **농림부**

新수도권정책에 대한 오해와 이기주의



박상우

국토개발연구원 지역분석연구실장

국토개발연구원 박상우 지역분석연구실장이
本誌 5월호 이 난에 게재된 손재영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수도권정책, 바뀌어야 한다'는
글에 대한 반박문을 기고해 왔다.〈편집자〉

우리는 지난 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대도시와 공
업지역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수
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
었다. 양호한 지역여건을 선호하는 노동력은 지방중
소도시와 농촌을 떠나 수도권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급속한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반시설의 공
급부족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
택부족과 교통난을 겪고 있다. 주택이 부족하여 판자
집과 천막촌이 산기슭에 들어서게 되고, 교통난은 당
초의 차량 부족에 따른 차내 혼잡으로부터 차량이 넘
치고 도로가 부족한 차량지체현상으로 변화되어 왔
다. 이제는 혼잡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도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스모그현
상으로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물드는 것이 일상화되
었고 수도물도 마음놓고 먹지 못한다.

심각해지는 수도권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
정책이 6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
다.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집중 억제에 위하여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
다. 집중유발시설의 규제
를 통하여 수도권에서의
인구와 시설의 집중을 억
제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서 지방분산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정책에 대
한 찬반 시비도 수도권정
비계획이 시행된 80년대
이래 지속되어 왔다. 수도
권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

는 주장과 더 나아가 수도권정책 자체의 필요성에 회
의를 느끼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다. 근래에는 수도
권규제 폐기론까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
라경제』 5월호에 게재된 손재영교수의 '수도권정책
바뀌어야 한다'는 글을 읽고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손교수의 주장처럼 과거의 수도권정책은 성과가
미흡하였으며 이들 시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또한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여 충분한 시설의 공
급이 불가능했다는 점도 본인이 수행했던 과거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90년대초에 수도권정책의 방향전환 이루어져

80년대말부터 추진되어온 수도권정책의 방향전환
이 90년대초에 이루어졌다. 90년대 초반 이래 논의
되던 수도권정책의 방향전환에 관한 내용이 94년의
개정법안에 반영된 것이다. 수도권정책의 성과 미흡
과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 발생 등이 감안되었다. 아
울러 국제화와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등 국내외의 여

건변화에 대응하는 수도기능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수도권정책의 대폭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새로운 수도권정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과거 수도권정책의 경직성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법규정에 의한 집중유발시설의 규제를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허가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 입지를 허용하였다. 수도권입지가 필수적인 본사기능이나 고급업무, 판매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설밀도가 서울보다 낮은 인천시와 경기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또한 허가금지의 대상이었던 공장·대학의 경우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시설을 총량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분된 시도별 총량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선택으로 공업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수도권에 필요한 시설은 신·증설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수도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필요한 고급업무 및 판매시설 등은 법 개정으로 이미 규모의 제한 없이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한 첨단정보, 국제기능 등 수도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첨단정보기능의 입지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또한 수도권에서 부족한 관광여가기능의 확충을 위해서도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중소규모의 여가·관광개발은 규제를 없애고 대규모개발의 경우만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수도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교통·통신·주택·상하수도의 건설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입지가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공해유발시설이나 비도시형 업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지방입지가 가능한 시설도 분산을 유도한다. 재래형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산업, 물류기능의 분산도 바람직하다.

셋째, 시책의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 규제사항을 상당 부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

으로 전환하였다. 과거의 법규정으로는 불가능했던 시설 중 수도권에 입지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입지가 가능토록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심의 대상이며, 법이나 규정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심의 후에 허용된다.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시설을 양적으로 감소시키고 수도권 생활의 질적인 개선을 추구한다는 차원의 배려가 이루어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큰 장애 없이 활동이 가능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여건이 필수적이거나 수도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적극적인 육성도 불사한다는 취지이다.

넷째, 환경을 중시하는 수도권정책으로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내에서도 낙후지역화되던 북부와 남부 지역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고, 수도권 주민의 용수원인 한강유역권의 수질보전대책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시가지에서의 도시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녹지·여가공간 확보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도권 일대의 문화적 유산을 발굴 복원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수도권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기주의가 문제

수도권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진 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다. 공간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5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정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폐지한다거나 다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편된 수도권정책의 내용이 당초에 의도했던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은 여러 과정의 조정을 거치면서 수렴되고 조정된 각계 각층의 의견이 결집된 것이다. 그리고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특정집단이나 개인 또는 지역에 편파적일 소지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우선 수도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 업

계 등 이해당사자와도 반복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인 것이다.

현재 수도권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데는 다음 두 가지의 원인이 결부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첫째, 정책전환의 내용에 대한 일부 전문가나 업무 당사자의 이해부족 문제이다. 새로운 수도권정책이 수도권기능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되는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하였다. 손교수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 대규모 본사기능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능에 대해서는 94년의 법 개정으로 이미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에서만 2만5천㎡ 이상의 대형 본사건물과 1만5천㎡ 이상의 판매 시설에 한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도 이제는 집중억제나 분산 위주가 아니다. 수도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차원의 집중억제는 지속하고 있지만 수도권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입지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둘째, 개인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가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 수도권정책의 추진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부 시설이나 지역당사자가 자기만의 불편문제를 모든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개편된 정책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일 뿐이고 대부분의 정책지지자는 조용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새로이 허용된 활동의 당사자들은 조용하다. 기존의 정책을 지지하는 절대다수의 계층도 아무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허용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체는 기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대규모공장의 신설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정책이 우리나라 발전을 막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대기업체가 전자산업의 생산공장이 첨단고급정보 기능인 것처럼 일반 시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대기업의 고급기능에 속하는 업무는 정책결정이나 연구개발, 물품구입·판매, 정보취득 등이다. 이들 고급기능은 기업체의 본사나 지사 및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대기업체의 고급기능을 수행

하는 시설은 수도권 입지가 이미 모두 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다.

기업체의 공장들은 기업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최하급기능에 속한다. 특히 대기업체의 공장들은 중소기업보다 더욱 표준화되어 지방에서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도시기능 중에서도 공업기능은 최하급기능에 속한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기능인 상업·주거·공업기능 중 공업기능이 가장 먼저 외곽으로 이전한다. 이들 공업기능은 도시의 3개 기능 중 도시입지에 가장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곽으로 이전하는 하급기능인 기업체의 생산공장이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기업체는 공장이 마치 본사기능인 양 애기하고 있지만 많은 용지를 이용하는 하급기능을 수도권의 임야를 용도변경하여 신설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규제완화로 인한 亂開發 우려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편한 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다. 법 개정으로 따른 새로운 수도권정비계획은 이제 막 시행하려는 단계에 있다. 수도권정책의 시행 때문에 수도권 주민과 일부 기업체가 느끼는 불편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여건 아래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개정된 법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은 다수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이루어졌으니 또 한번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법 개정당시에 이미 단체장 선출을 예상했었다. 예상 밖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일단 개정된 법의 시행결과를 지켜보자. 규제가 너무 완화되어 수도권의 亂開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기존의 시책이 미흡하다면 나타나는 결과를 보아서 얼마든지 다시 손질할 수 있을 것이다. 성급하게 자꾸 뜯어고쳐 보아야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공동사회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다. 새로운 수도권정책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원해 보자. **문정원**

전철운임의 현실화 시급하다



손길신

철도청 운수계획과 사무관

고 도로 발달된 문명사회는 필연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교통·물류·정보의 유통이 복잡해지며,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들이 복잡해진다. 때문에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첫번째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두번째는 교통문제의 해결이라 하겠다.

특히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이제 대도시만의 문제를 벗어나 농촌에까지 그 심각함이 더해가고 있다. 서울시 버스조합은, 시내버스 한 대당 부채가 7,600여 만원으로 총 6,600여 억원의 부채가 누적되어 한국생산성본부가 원가계산했다는 운임 수준(도시형:500원, 좌석버스:1,100원)으로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동경은 16%, 런던은 33%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채무의 누적이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경우 하루 필요한 경비가 23억원인데 수입은 12억원이니 하루에 11억원, 1년이면 4천억원 이상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다는 계산이다. 현재 2기 지하철(도시철도공사) 건설비는 약 8조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운임구조상 지하철을 운영하여 그 수입으로 건설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가

까운 예로 최근에 개통된 일산선의 경우, 건설비 5,600억원에다가 차량비 434억원(추가구입비 약 630억원 소요)은 제외하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 검수비만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지만 연간 예상 수입은 약 90억원으로 투자비의 회수는 고사하고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

**1년에 4천억원 이상이
채무로 누적돼**

1974년 8월 15일 경인선 인천-구로간 및 1호선 수원-청량리간 81.9km, 29개역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전철은 경원·안산·과천·분당·일산선 및 2·3·4호선과 최근 개통된 5호선 일부 구간까지 확대된 317km, 220개 역의 수도권 전철망과 32.5km, 34개 역의 부산 지하철 등 현재 350km, 250여개 역이 운용되고 있다. 또한 현재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전철망의 확장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를 보면, 기본운임은 모두 400원이며 철도청의 경우 이동거리제로 10km까지 기본 운임, 여기에 5km를 더할 때마다 66원을 추가로 받으며 최종 계산시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까지는 50원,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하여 운임단위를 50원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구역제를 적용하여 수도권을 7개 구역으로 나누고 2개 구역까지 400원, 3개 구역 이상은 500원을 받고 있다. 부산의 경우 2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은 400원, 2구간은 450원을 받고 있다. 97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대구시 지하철이나 98년 하반기 개통을 앞둔 인천시 지하철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정기관제도 대신 정액권제를 채택 1만원권 이상을 구입하면 일반에게는 10%를 보너스로 하여 1만1천원 또는 2만2천원 상당의 승차권을 지급하고 학생의 경우 2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정액권의 최종금액에 대하여는 운임에 미치지 못해도 거리에 관계없이 1회 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은 정기관에 대해 높은 할인혜택 부여

일본(동경)의 경우, 동경교통국에서 운영하는 都営 지하철은 4km까지 170엔, 국가에서 운영하는 営團 지하철의 경우 5km까지 160엔, JR은 3km까지 120엔, 동경급행은 3km까지 110엔으로 우리나라 철도청의 경우와 같이 거리비례제를 채택하는 한편 운영 주체별로 별도의 운임을 받는다. 1개월 정기관에 대하여 47%를 할인해 주며, 노인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영지하철은 無賃이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단지하철은 有賃이다.

프랑스(파리)의 경우 구역제를 적용하며 RATP에서 운영하는 Metro는 1.2구간내를 운행하게 되어 모두 균일운임이 된다. 정기관의 경우 1주일권은 36% 할인, 1개월권은 48% 할인, 1년권은 54%를 할인해 주며, 특이한 것은 1일권도 승차권에 사용자의 신분을 기록하여 사용하며 1개월 이상의 것은 사진을 첨부하여 발행하고 있다.

영국(런던)은 지하철(LUL)의 경우 동심원형 6개 구역으로 나눈 구역제를 적용한다. 한 구간(zone)의 범위는 동서간 8km, 남북간 5km에 이르고, 정기관제를 채택하여 1주일권 21%, 1개월권 30%, 1년권 40%를 할인한다.

독일(베를린)의 경우 시내 약 70km 전구간에 균일요금(3.7DM)을 적용하고, 세 정거장 이내의 단구간에 대하여는 약 33%를 할인하여 2.5DM을 받으며 1주일권은 23%, 1개월권은 60%, 1년권은 72%를 할인한다. 그 밖에 미국(뉴욕)은 뉴욕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로 균일운임(1.25달러)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긴 노선은 50km, 최장거리 구간은 61km이다.

전철운임은 거리비례제로의 통합이 바람직

현재 철도청의 경우 거리비례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거리에 따라 운임을 징수하나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포함)의 경우는 구역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거리 이용객이 장거리 이용객보다 운임이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한다. 전철노선이 단순했던 과거와는 달리 노선의 확장은 물론 거리도 계속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용 거리에 따른 공평한 운임의 지불 및 정당한 수송의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리비례제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 나라마다 각기 특성이 있어 평면적인 비교는 별 의미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기본 운임에 원가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 운임이 너무 저렴하다. 최소한 투자비의 회수는 고려치 않아도 운송수입으로 정상적인 운영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예로, 인천지하철의 경우 철도청 경인선과 연락운송시 현재의 수도권 전철 운임제도를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재정 부실기업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경의 경우처럼 별도의 料率에 의한 별도의 운임징수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후손에게 갖가지 유산을 넘겨주고 있는데, 그중에는 막대한 빚도 포함된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22년전 만들어진 전철로 건설초기부터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여 발생한 누적채무를 22년이 지난 오늘날의 후손에게까지 물려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 매년 당년의 적자폭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교통세 재원 등으로 메워 주어 적자의 누적이 발생되지 않는 예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형편이 그것을 허락치 않을 것이다. 이용자 모두가 다 함께 작은 희생을 한다면 후손에게 넘겨줄 빚을 줄이는 한편 희생한 만큼의 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나은 교통환경을 위하여 이용자 모두가 작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철운임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박원**



통계로 본 베트남의 경제사회상

최봉호

통계청 국제통계과장

올해는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수교한 지 4년이 되고 베트남이 '도이모이' 개혁정책을 실시한 지 10년이 되며, 또한 베트남이 통일이 된 지 2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통계청에서는 지난 4월 30일 베트남 통일 21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사회상을 정리하여 「베트남 주요 경제사회 지표」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는 남북한 전체보다 약간 많아

94년도 베트남총인구는 7,251만명으로서 남북한 전체인구 6,740만6천명에 비하여 7.6%, 남한인구 4,445만3천명에 비해서는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베트남의 인구규모는 세계13위로서 인구대국 중의 하나이다.

인구밀도는 베트남이 219인/km², 남북한 전체가 304인/km²로서 남북한 전체대비 72%에 달하고 있으며, 남한의 447인/km²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홍하델타지역이 1,124인/km², 메콩델타

지역이 401인/km²를 나타냄으로써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4년간(1961~94년) 베트남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지난 34년간 베트남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61%로서 한국의 지난 46년간(1950~95년) 인구증가율 1.75%보다 0.8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자 100명당 남자인구수인 성비는 지난 60년에 95.9, 70년 94.7, 80년 93.9, 94년에는 95.3을 나타내어 女超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랜 전쟁 때문인 것

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의 노동력은 85년 2,602만명에서 연평균 2.9%씩 늘어나 93년 3,271만8천명이 되었으며, 총인구 대비 노동력비율은 85년 43.5%에서 93년 46.1%로 2.6%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를 한국과 비교해 보면 베트남이 한국보다 85년에는 6.8%포인트, 93년에는 2.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노동력비중이 70%가 넘는 등 산업구조의 후진성 보여

베트남의 산업별 노동력구성비는 85년에 농림어업이 72.9%, 광공업

〈표 1〉 노동력 및 총인구 대비 노동력비율

(단위 : 천명, %)

	85년	90년	93년
베트남			
총인구	59,872	66,233	71,026
노동력	26,020	30,295	32,718
총인구 대비 노동력비율	43.5	45.7	46.1
한국			
총인구	40,806	42,869	44,056
노동력	14,970	18,085	19,253
총인구 대비 노동력비율	36.7	42.2	43.7



이 10.8%, 사회간접자본(SOC) 및 기타가 16.3%를, 93년도에 농림어업이 73%, 광공업이 10.8%, SOC 및 기타가 16.2%를 차지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산업별 노동력구성비가 85년도에 농림어업이 24.9%, 광공업이 24.4%, SOC 및 기타가 50.6%를, 93년도에 농림어업이 14.7%,

광공업이 24.4%, SOC 및 기타가 60.9%를 차지한 것을 비교해 볼 때 베트남 산업구조의 후진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88년부터 95년까지 베트남의 외자도입 승인건수는 1,589건에 달하고 투자규모인 총자본금은 185억6천만달러로 건당평균은 1,170만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

리나라의 외자도입 승인건수는 2,736건으로 베트남보다 거의 2배나 되나 총투자액은 97억7천만달러로서 건당투자액은 360만달러로 규모가 적게 나타났다.

베트남의 연도별 외자도입은 91년에 151건 13억2천만달러, 92년에 197건 21억7천만달러, 93년에 267건 31억7천만달러, 95년도에는 394건 66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88년부터 96년 1월 10일까지 외자도입액이 큰 5대 국가를 분석해 보면, 1위는 대만으로 투자액이 36억달러로 총외자도입액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홍콩으로 투자액이 22억달러(11.8%), 3위는 일본이며 투자액이 21억달러(11.3%), 4위는 싱가포르로 투자액이 15억2천만달러(8.2%), 5위는 한국으로 투자액이 15억달러(8.1%)이며 이들 5대 투자국의 투자액은 총외자도입액의 58.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외자도입기업체의 이윤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93년말 현재 활동중인 외자도입기업체의 93년도 경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판매액은 12억2,580만달러, 이윤액은 2억9,300만달러로 판매액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세액은 4억4,790만달러로 판매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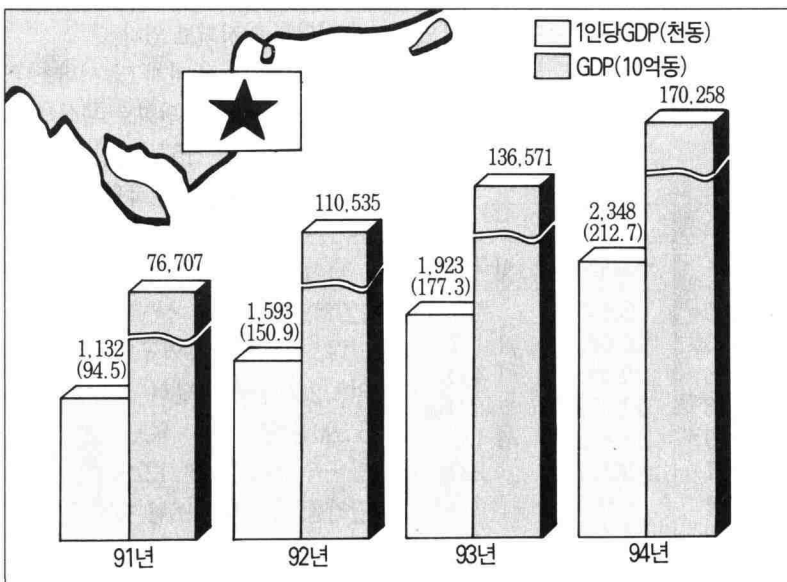
출자총액 26억5,300만달러에 대한 이윤율은 11%이며 조세까지 포함한다면 이윤율은 27.9%에 달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부문이 판매액 11억200만달러, 이윤액 2억8,130만달러로서 판매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세액은 4조3,560만

〈표 2〉 곡물생산량

(단위 : 천t)			
	쌀	기타 곡물	계
80년	11,647	2,759	14,406
85년	15,875	2,325	18,200
90년	19,225	2,263	21,489
94년	23,528	2,670	26,199
한국(94년)	5,060	684	5,744
북한(94년)	1,502	2,623	4,125

註:북한자료는 통일원의 남북한 경제지표(1995) 자료임.

〈그림 1〉 국내총생산(경상가적)



註:1)베트남의 對美환율(동/US달러)은 91년 11,975, 92년 10,555, 93년 10,845, 94년 11,040임.

2)괄호 안 숫자는 미달러 환산수치임.



달러로서 판매액의 39.5%를 차지하고 있고, 출자총액 19조7,520만달러에 대한 이윤율은 14.2%로서 조세까지 포함한다면 36.3%에 달하고 있다.

94년 기준 1인당 GDP는 213달러 수준

베트남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은 제5차 5개년 계획연도의 첫해인 91년 76조7,070억동에서 94년 170조2,580억동으로 2.2배 증가하였다. 참고로 베트남의 對美환율(동/US달러)은 91년 11,975, 92년 10,555, 93년 10,845, 94년 11,040이었다.

〈표 3〉 수출입액

(단위 : 백만루블-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80년	338.6	1,314.2	-975.6
85년	698.5	1,857.4	-1,158.9
90년	2,404.0	2,752.4	-348.4
91년	2,087.1	2,338.1	-301.0
95년	5,220.0	7,510.0	-2,290.0

〈표 4〉 주요 소비재 및 서비스 평균소매가격

(단위 : kg, l, 1회)

	91년	92년	93년	94년	
				베트남동	한국원
햄살	2,028	1,742	1,865	2,195	157
돼지고기	10,519	15,265	15,443	15,639	1,117
쇠고기	11,893	17,910	18,208	20,726	1,480
잉어	5,974	10,667	11,028	12,463	890
고등어	5,608	9,019	12,359	15,856	1,133
두부	2,071	2,820	3,047	3,117	223
백설탕	4,378	4,627	5,124	6,091	435
맥주	2,956	3,719	4,102	4,446	318
등유	2,287	2,534	2,558	2,552	182
휘발유	2,628	2,416	2,637	2,745	196
이발(남자)	1,523	2,219	2,920	3,152	225

註: 한국 1원당 베트남 14동으로 환산하였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1년 113만2천동에서 94년 234만8천동으로 2.1배 증가하였으며, 94년도 1인당 국내총생산을 미달러로 환산하면 212.7달러에 해당된다.

베트남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를 분석해 보면, 통일 후인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기간중인 79~80년도에는 연평균 0.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81년부터 '도이모이' 개혁 이전인 86년까지는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도이모이' 개혁 이후 87년은 3.9%, 88년 5.1%, 89년 8%, 90년 5.1%, 91년 6%를 기록하다가 최근 92년 8.6%, 93년 8.1%, 94년 8.8% 및 95년에는 9.5%를 기록함으로써 개혁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및 건설업 부문은 91년 9%에서 94년 14%로 5%포인트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부문도 91년

8.3%에서 94년 10.2%로 1.9%포인트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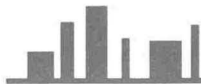
한편 94년 베트남 쌀생산량은 한국의 4.6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의 곡물생산량은 80년 1,440만6천t에서 94년 2,619만9천t으로 80년 대비 81.9% 증가하였는데, 이 중 쌀생산량은 80년 1,164만7천t에서 94년 2,352만8천t으로 80년 대비 2배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92년 이후 물가 수준은 안정세로 전환

베트남의 소비재 및 서비스 소매가격 상승률을 전년 말월 대비로 분석해 보면, 90년이 67.1%, 91년이 67.5%로서 과거 수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높은 상승률을 시현한 반면, 최근에는 92년 17.5%, 93년 5.2%, 94년 14.4%, 95년 12.7%로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

94년도 주요 소비재 및 서비스 평균소매가격을 한국원화로 환산해 보면 햄살 1kg은 157한국원, 돼지고기 1kg은 1,117한국원, 쇠고기 1kg은 1,480한국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트남의 무역규모는 95년 127억달러로 크게 신장된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의 무역규모는 80년 16억5,280만루블-달러, 85년 25억5,590만루블-달러, 90년 51억5,640만루블-달러, 95년 127억3천만루블-달러를 기록하여 80년 대비 7.7배로 무역규모가 확대되었다(루블-달러는 舊소련 루블화와 美달러화를 단순합계한 수치이나 구소련 1루블의 가치는 미화 1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며



구소련 붕괴 후에는 주로 달러화로 무역결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루블-달러 단위로 분석해도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수출은 80년 3억3,860만루블-달러에서 95년도에는 52억2천만루블-달러를 나타내어 80년 대비 15.4배로써 개방노선 채택 이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입은 80년 13억

1,420만루블-달러에서 95년도에는 75억1천만루블-달러를 기록함으로써 80년 대비 5.7배 확대되었다.

베트남의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80년에는 -9억7,560만루블-달러, 85년 -11억5,890만루블-달러, 90년 -3억4,840만루블-달러, 95년도에는 -22억9천만루블-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85년 이후 무역적자 폭이 감소하다가 91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은 과거 구소련 및 동구권에서 서방진영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93년 베트남 제1위의 교역국은 싱가포르로 교역액은

85년 6천만루블-달러에서 93년 14억3,860만루블-달러로 교역규모가 24배 확대되었으며, 일본은 베트남의 제2위의 교역국으로 85년 1억7,440만루블-달러에서 93년 13억8,920만루블-달러로 규모가 8배나 확대되었다. 한국의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93년 8억1,890만루블-달러로 제3위를 차지하였다.

〈표 5〉 한국의 베트남 수출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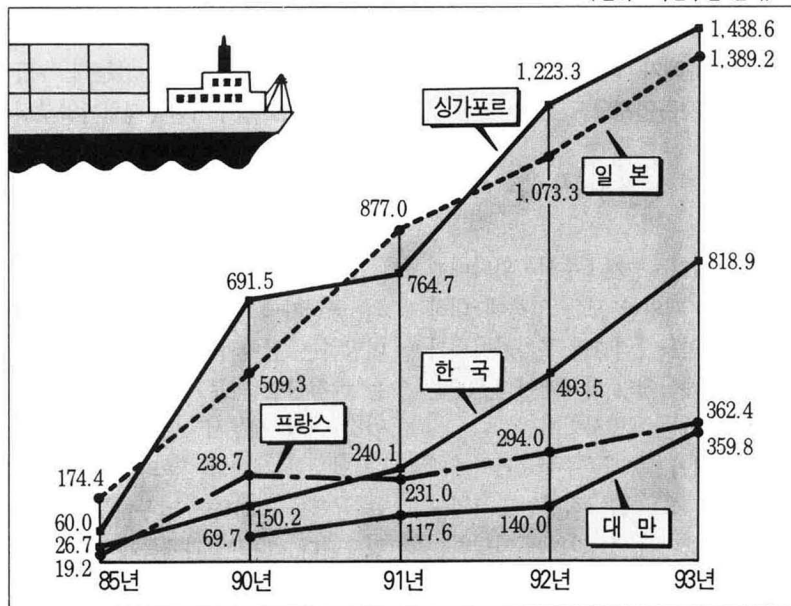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83년	12,544	10,265	2,279
90년	116,825	33,380	83,445
92년	436,182	57,333	378,849
93년	728,268	90,629	637,639
94년	1,027,359	113,775	913,584
95년	1,351,014	193,598	1,157,416
83~95년	4,090,401	657,718	3,432,683

註: 83~94년은 한국무역협회자료이며 95년 자료는 관세청자료임.

〈그림 2〉 93년 5대 교역국에 대한 연도별 무역규모

(단위: 백만루블-달러)



註: 한국자료는 한국무역협회자료임.

95년 현재 한·베트남 무역규모는 83년 대비 약 68배로 급증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대외거래를 시작한 93년도의 무역규모는 2,280만9천달러이며 95년도에는 15억4,461만2천달러로 83년 대비 67.7배나 크게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83년 1,254만4천달러에서 95년도에는 13억5,101만4천달러로 107.7배 확대되었고, 수입은 83년 1,026만5천달러에서 95년 1억9,359만8천달러로 18.9배 확대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는 83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여 95년까지 흑자누계액은 34억3,268만3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한·베트남 인적 교류도 수교 이후 급증하고 있다. 즉, 베트남인의 한국 방문은 90년에는 359명에 불과하였으나 95년중에는 1만1,193명으로 늘어났으며, 베트남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람도 90년 96명에서 95년 3만255명으로 급증하여 양국간의 교류가 활발하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가가치세

김연근
국세청 민원봉사실장

■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은 매출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한 매출세액에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합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직전 1曆年の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직전 1曆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라 할지라도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업종인 제조, 광업, 도매, 도소매 겸 영업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자 및 간이과세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함으로써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업자들인지요.

— 과세특례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는 직전연도 1曆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매상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둘째,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曆년의 총매상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셋째, 대리 및 도급 등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대리 및 도급 등의 총매상액에 4를 곱한 금액에 기타사업의 매상액을 합하여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다만, 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제조업, 광업, 도매업, 도소매업, 시 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호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중에서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양복점·양장점·양화점 등과 국제청장이 정하는 제조업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부가가치세제는 1년 2기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과세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각 과세기간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기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기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과세특례자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단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특례자는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 사업자만 고지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셋째,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특례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 전원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제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고,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기타 신고절차는 예정신고와 동일합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1매,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적용사업자는 관련 영세율첨부 서류이며, 기타 세액공제 해당 사업자는 관련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후 당초 신고한 사항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사업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후에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누락하였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

고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임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 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朱書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黑書로 기재하면 됩니다. 추가 자진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세액란 옆에 부기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첫째,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정기간의 총매출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 가산세를 더하고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세액으로는 신용카드 발행 공제제도가 있으며, 공제대상은 영수증 교부 대상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출 등의 경우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매입세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둘째, 과세특례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대리 및 도급을 제외한 기타업종은 2%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공제,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세액 계산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는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셋째, 간이과세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세액의 종류로는 과세특례자와 동일하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제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 이하인 업종은 매입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 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96년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30%를, 97년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2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발행공제는 과세특례자와 동일합니다. **별첨**

다음 호(7월호)에는 상속·증여세를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

‘네티즌’(Netizen)記

남광수

미국 위스콘신대 유학/재정경제원 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발전정책 및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의 현직 공무원입니다. 94년 7월 이곳에 오기 전에는 경제기획원(現 재정경제원)에서 약 15년간 근무했었고, 곧 졸업하여 모국으로 돌아가 공직생활을 계속할 사람입니다.

마흔 살도 훨씬 넘은 사람이 미국의 젊은이들 틈바구니에 끼어 서투른 영어로 뒤흔든 학창생활을 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지칠 줄 모르는 그들의 개척정신에 있음을 실감했고 사회·경제적으로 잘 정비된 그들의 하부구조의 일단을 몇 차례의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것은 2년간의 미국생활 중 얻은 소득이라면 소득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마냥 부럽기만한 이 거대한 땅덩어리에 무언가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

학을 와서 미국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지? 여러 날 밤을 생각해도 섣뭇 머리에 떠오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학교공부보다 더 열중했던 한 가지 일 이외에는.

정신없이 첫 학기를 보낸 작년초, 거금을 들여 펜티엄급 PC를 장만하고는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학교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 호기심에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지요. 지금은 세계 웹브라우저(web browser)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넷스케이프(Netscape)가 세상에 나온 지 석 달이 채 안된 시점이었지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손가락 하나로 마우스를 눌러 백악관·의회 도서관·CIA·NASA·루브르박물관·만리장성 그리고 청와대로 전세계 방방곡곡을 순식간에 제집 드나들 듯이 넘나들 수 있다니! 글로, 그림으로, 소리로 더구나 動畫像까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자료를 다 볼 수 있다니!” 나는 말로만 듣던 ‘멀티미디어의 세계’, ‘무한한 정보의 바다’

에 톱당 빠져 허우적댔지요.

시시각각 전송되어 오는 기사 덕분에 한국소식을 한국에 있는 동료보다 더 먼저 제 책상 앞에서 알았고, 또 이메일(email)로 대덕단지에 계신 큰 형님은 물론 서울의 몇몇 친구들과 순식간에 아주 저렴하게 소식을 나누며(요즘은 영어로는 불편하여 아예 한글로 교신하니 미국인도 놀랍니다) 글자 그대로 ‘지구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여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급기야는 ‘인터넷 폰’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마이크를 꽂고는 시내전화 한 통화 요금(이곳은 한국과는 달리 도수제이며 한 통화에 약 6센트 정도 됨)으로 전세계의 PC매니아를 상대로 CQ 대신 “Do you hear me?”를 외쳐댔으니 소년시절부터 간직했던 햄(Ham)에의 꿈까지 달성한 셈이었지요. 더구나 PC화면에 나타나는 상대방 신상정보를 보면서 골라서 대화하니 햄보다 훨씬 첨단형 교신(?)을 한 셈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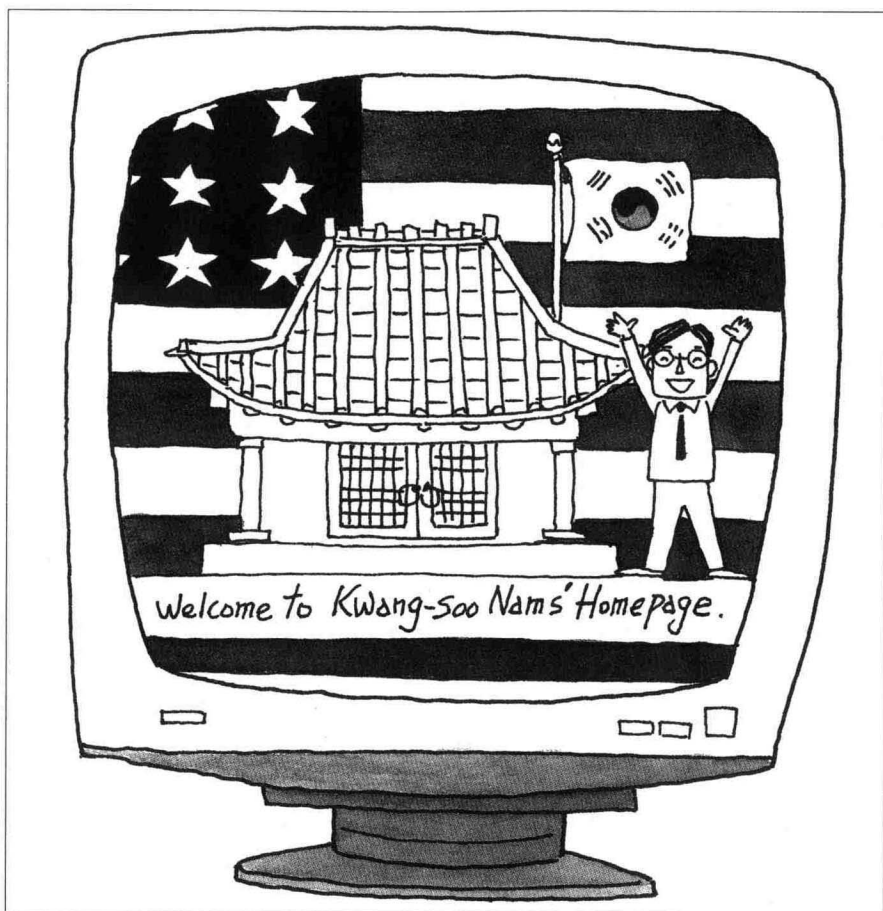
요즘에 와서는 리얼 오디오(Real

Audio)로 한국의 가요 튜브를 듣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Shockwave, VODLive, WebFX 등 Inline Plugins라는 최첨단 인터랙티브 프로그램까지 무리없이 소화하여 새로운 차원의 인터넷여행을 즐기고 있으니 컴맹이 미국 와서 자칭 '인터넷 일등 항해사'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혹적이기도 한 웹사이트와 홈페이지를 무시로 들락거려도 막상 내 집은 없었지요. “그래, 맞아! 미국에서 살다 가는 기념으로 사이버 스페이스(가상공간)에 내 집 한 채 짓고 가자. 네그로폰테교수가 말했듯이 이것도 ‘Being Digital’이 아닌가. 더구나 요즘은 한국에서도 키드넷(KidNet)운동이 한창이라는데...”

학교에서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특강을 몇차례 듣고 난 터라 은근히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길로 두세 권의 책을 사서 읽으며 키보드를 두들겨 보았지요. 어렵פות이 각종 태그(tag)며 하이퍼링크스(hyperlinks) 등 HTML이 이해가 될 무렵 집터장만을 위해 단돈 5달러를 들고 학교 컴퓨터센터에 갔더니 웬걸, 홈페이지 작성용으로는 컴퓨터 스페이스를 줄 수 없다는 대답이였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컴퓨터 배운 기념으로 작품 하나 남기려는데 1메가바



이트(MB) 정도 빌립시다.”

“방침상 안됩니다. 정 필요하면 과(dept)에 배정된 스페이스를 할애받으시오.”

“내가 소속된 Center for Development에서 구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소. CFD는 그 흔한 홈페이지도 아직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계좌 삽시다. 학생이 공부하겠다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일도 컴퓨터공부 아니오.”

“맞는 말이지만 용량부족으로 방침상 컴퓨터센터에서는 안됩니다.”

(아니, 어떤 대학은 매뉴얼까지 가져 나누어 주며 권장하는데 외국학생

한테 세 배나 비싼 등록금을 받았으면 컴퓨터용량 좀 키울 일이지...) 낙심천만하여 뒤돌아 나오는 노랑 얼굴의老학생이 측은했던지 히피차림의 앳된 학생하나가 살며시 따라나오며 무료로 3MB까지 빌려주는 회사를 소개해 주니, 이곳이 현재 제미국집이 앉아있는 입실란티(미시간州)의 네더넷(NetherNet)社입니다. 간단한 접속요령과 생전 처음 듣는 유닉스명령어를 몇마디 메모하고는 용기백배하여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예산실 시절부터 이끌어 난 밤샘작업을 시작했지요.

텔넷(TelNet)으로 무난히 네더넷

의 호스트 컴퓨터(서버)에 접속, 몇가지 질문에 답하여 일단 내 계좌(account)를 여는 데까지는 잘 나갔으나 유닉스명령어를 전혀 모르니 유닉스환경에서 디렉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야지요. 도스명령어도 몇개밖에 모르니 응용도 못하고 미국학생이 일러준 대로 'pico' 치고 'chmod' 치면 'invalid commands'만 뜨고, 네더넷 접속은 또 왜 그리 자주 끊어지는지. 열만 받다가는 밤을 흘랑 새웠지요. 책에 보니 유닉스의 pico에서 일일이 HTML로 타자하여 만드는 것 보다는 HTML편집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화일을 만들고 FTP를 이용, 서버로 전송(uploading)하면 이미지 화일도 실을 수 있고 편리하다기에 이름도 이상한 'Sausage' 사에 접속하여 HotDog Pro 등 HTML편집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Welcome to Nam's Homepage!"라는 제목 아래 대강 초안까지 잡아 놓았는데, 봄방학이라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김과장이 귀국하며 자기 홈페이지 인수받아 운영하라고 할 때 대강 몇자라도 적어 놓는 건데(하긴 작년 이맘 때 제 수준은 겨우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열어보는 정도였으니 받아 적을 수도 없었겠지요). 때마침 봄방학에 날씨가 화창하니 겨우내 움츠렸던 매디슨악마들은 자꾸 'Fore Seasons'로 유혹을 하고, 집짓기는 초장부터 벽에 부딪치고. "아냐, 그래도 봄에 짓는 집이 튼튼하다는데, 지금 마쳐야지."

'지성이면 감천'이요, "궁하면 통한다"더니 3~4일 속만 태우다가 우연히 덴버의 오과장과 통화중, 오래곤대의 문사무관이 괜찮은 홈페이지

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여 유진으로 SOS를 쳤지요. 국회정책질의 일문일답식으로 유닉스명령어와 파일 업로딩 등에 관한 상세한 팁(요령해설)을 이메일로 받은 끝에 96년 3월 14일 밤 11시 마침내 사이버 스페이스에 태극기도 선명한 "Welcome to Kwang-Soo Nam's Homepage!"를 띄우는 데 성공했지요. 그날 밤 명실공히 '네티즌'(Netizen: internet Citizen)이 된 기쁨에 겨워 혼자 한 잔 걸치고는 한국 등의 친구들에게 밤새워 이메일을 쳤습니다.

"Dear friend!

At last, I succeeded in making my homepage on the Internet.

Watch our national flag, Taegukki, displayed proudly at my website!"

며칠후 문사무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홈페이지에서 태극기가 안 보여 도큐먼트 소스(source)를 확인해 보니 태극기 그림화일이 제 PC에서만 볼 수 있도록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혼자 한 호작약, 의기양양하여 誤報를 날렸으니 무슨 망신이란. 다행히도 문사무관 외에는 열어 본 친구가 없었기에 즉시 수정하였지요.

혼자 흥에 겨워 늘어놓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군요. 비록 초라한 한 장짜리 시험용 페이지였지만 띄우고 나니 동료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습니다.

"남과장! 컴맹이 매디슨에 와서 인터넷도사가 되었구려."

이제 머지않아 귀국할 사람의 입장에서 이곳에서 조금 더 지내실 후배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운동·학교공부·영어공부·여행·컴퓨터 등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에 계신 동안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음껏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돌아갑시다. 그것이 미국생활중 얻는 알짜배기 소득이요, 귀국후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보잘것없는 제 홈페이지가 매디슨 한국공무원회(KGOSA)의 각종 게시판 역할도 하고 더러는 제 나름대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인터넷 정보도 제공코자 하오니 제가 이삿짐을 싸는 그날까지 열심히 열어보시고 공지사항이나 혹시 넷스케이프 항해중 혼자 보고 지나쳐 버리키에는 가까운 웹사이트를 발견하시면 주저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홈페이지가 한국과 한국정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모든 분께 다 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큰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끝으로, 저로 하여금 컴퓨터에 눈을 뜨게 해주신 반장식과장(재정경제원), 김명식과장(총무처), 도스문제를 풀어주신 최항도과장(서울시), 제 PC의 성능향상(upgrade)을 위해 수고해 주신 남기만사무관(통산부), 그리고 홈페이지를 띄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오레곤大의 문선목사무관(통산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web address는 'http://www.nether.net/~ksnam/index.htm' 이오니 인터넷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